

월간  
**재정포럼** 6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7년 6월호 제132호

- 현안분석**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안종석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정재호
- 정책연구**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외
- 정책흐름**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조세문화의 창달 · 李萬雨
<b>현안분석</b>	06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 안종석 27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 우석진 46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 정재호
<b>정책연구</b>	64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69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종석 · 홍범교 73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 김승래 7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김완석 · 한상국 · 박 훈
<b>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b>	80 중국, 이전자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
<b>정책흐름</b>	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9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102 한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110 OECD, 경제전망 발표
<b>재정통계</b>	114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b>이런의견 저런생각</b>	135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외

# 조세문화의 창달



**李萬雨**  
고려대 교수 · 경제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이란 단어에 거부감이나 회피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 사람들에게 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대면하기 싫어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경찰관이나 稅吏로 나타났으며 해외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세관원이라는 사실에서도 그 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한 때 감옥을 방불케 하는 조그마한 창문이 몇 개 있는 주택이나 건물이 유행했는데, 이는 그 당시 프랑스의 재산세가 창문의 수에 따라 부과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세금당국에서는 창문이 많은 건물이나 주택은 고소득층의 것으로 간주,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는 의도에서 납세자들은 감옥 형태의 주택을 지었다고 한다. 아직도 파리의 뒷골목에는 당시의 가옥이 몇몇 남아 있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상황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미국에서 맥주의 생산지로 유명한 밀워키를 방문한 사람이면 禁酒令이 내렸을 당시나 과도한 주세의 부과로 술의 소비를 억제했을 당시의 酒店이 오늘날의 관광명소로 소개되어 발길을 옮기게 된

다. 과도한 세금을 피해서 애주가들은 서점으로 가장한 술집을 드나들었으며 주인은 단골손님에 한해서 술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이처럼 조세는 어떠한 가옥에서 주거하며,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는 물론 지하경제를 만연케 하기도 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조세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여파는 크고 넓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이 국가의 번영·쇠퇴를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세제를 개편할 때는 그 정책적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함은 물론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이전에 그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로마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줄리어스 시저는 국민들의 충성을 유도하여 로마를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이끄는 길은 투명한 세정과 가벼운 과세라고 믿었으며 이를 차질없이 실천함으로써 선군으로 추앙받았다.

로마를 쇠락과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네로 황제는 불타버린 로마 재건과 새로운 궁전 건립을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세금이 감당할 수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이 국가의 번영·쇠퇴를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세제를 개편할 때는 그 정책적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함은 물론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이전에 그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없을 정도로 치솟아 경작지를 버리고 도망치는 농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칩락자에게 편승하는 농부들까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조세반란이 야기되었고 이것이 제국의 붕괴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보면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연상하는 납세자가 필자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과세의 기능 중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형평과세의 수단으로 보유과세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보유세 강화는 용인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점진적이고 납세자의 호응과 함께 할 때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가 처음 등장한 2005년과 비교하여 세부담이 수십 배 늘어난 곳도 있다.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우 2005년에 10억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17억 1,6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년전 30만원이던 종부세는 올해 848만원으로 28배나 늘어난 셈이다. 아무리 과세 대상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세부담이 수십 배씩 늘어나는 부작용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달 30일에 전국 공동주택 903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작년보다 평균 23% 올랐고 과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50%까지 뛰어올랐다. 공시가격이란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1년 사이에 부동산 세금폭탄의 강도는 훨씬 세지고 대상지역은 크게 늘어났다.

종부세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배경에는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보다 높게 책정했거나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조급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월 1일 집값을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1월 초는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다. 그 후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공급추진 대책 등이 쏟아짐으로써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부 지역 집값은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종부세가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거래가 등기부 제도 도입(2006년 실시) 등과 함께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 과표적용시기를 2009년에서 4~5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보유세 강화 수준이나 속도를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할 경우 양도세 부분에 대한 완화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정부의 근본적인 의도는 보유부담 증가를 통해 시장의 집값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거래세 기반구축으로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

건전한 조세문화의 창달은 합리적인 세제와 과학적 세정이 함께 할 때 달성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납세자의 협력과 호응이 함께 할 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

.....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등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2주택자(50%) 및 3주택자 이상 초과(60%) 부분은 다소 완화하여 당분간이나마 현행 양도세(9~36%) 수준을 유지하여 원활한 공급 물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룬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가격안정 중심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아니 된다. 공급의 확대로 만성적인 초과수요 해결과 유동성 및 가격대출 심의기준의 강화로 과수요 억제, 교육평준화 개선으로 강남 쏠림 현상의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해야 함은 자명하다.

종부세가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은퇴자, 장기보유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실효 보유세율 목표치를 0.8%(현재 1%)로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기간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그 과세대상 인원이 소수일지라도 세금이 폭탄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조속히 타개하는 일대 용단을 내려야만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신성한 납세의무 이행을 떳떳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조세문화의 창달은 합리적인 세제와 과학적 세정이 함께 할 때 달성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납세자의 협력과 호응이 함께 할 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 KIF

# | 현안분석 |

##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san@kjpf.re.kr)

우리나라에도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임의조합에  
적용하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있는데,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규정이 단순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I. 서론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크게 개인업체(이하 ‘개인기업’)와 법인(이하 ‘법인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사업체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양분체제는 법인의 실체성이 약한 공동사업 형태의 사업체를 적절히 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 대해 적용하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임의조합에 적용하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있는데,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규정이 단순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04년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 11)조항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파트너십의 성격이 강한 인적회사에 한해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제도이다. 2006년에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개편하여 익명조합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 동시에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전격적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많다.

최근에는 상법개정안에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인 합자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개인기업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고 법인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형태의 사업체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 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가 임박한 문제가 된 것이다.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적절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2000년 이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필요성,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창희(2001), 손윤환(2001), 최용선(2001), 이준규·이은상(2001), 김진수·김재진(2001), 윤현석(2004), 김재진(200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06), 강철승(2007), 안경봉(2007), 박훈·이은미(2007) 등이 대표적인 문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헌들은 대부분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소개한 후 국내 과세제도의 개편 방안 또는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해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아쉬운 점 한 가지는 제도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도입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요약한 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 형태의 차이에 따른 과세체계의 차이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아쉬운 점 한 가지는 제도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장점을 보면 첫째,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고 둘째, 기업 형태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며 셋째, 설립 및 청산 절차가 단순하고 넷째, 외국인과의 공동투자 등 국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II.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문헌 조사

국내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연구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절에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간략하게 검토한다. (1)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문제점, (2)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장·단점 분석, (3)미국 등 주요 국가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소개, 그리고 (4)향후 정책방향.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이 단순하여 복잡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소득세법에 나타난 공동사업장 소득계산 규정은 제43조 한 조항뿐이며, 이 조항은 단지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금액을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개별사업자에게 약정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기 곤란하다. 둘째, 적용범위가 좁다. 현재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외에 인적회사로서 ‘회사’ 보다는 사업자의 인적 요소가 강조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셋째,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해 출자 당시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기업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므로 실체론과 도관론이 혼용되고 있다. 넷째, 현물출자에 대해 출자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이러한 문제점과 비교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장점을 보면 첫째,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고 둘째, 기업 형태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며 셋째, 설립 및 청산 절차가 단순하고 넷째, 외국인과의 공동투자 등 국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갑작스런 제도의 도입이 조세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제도가 복잡해 행정비용이 높아지며, 조세회피가 용이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높다는 점, 조세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단점으로 꼽힌다<sup>2)</sup>.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 V 장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자세하게 검토한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제 III 장에서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향후 정책방향을

1) 이창희(2001), 손윤환(2001), 김진수·김재진(2001), 이준규·이은상(2004).

2) 손윤환(2001), 최용선(2001), 김진수·김재진(2001), 이창희(2001), 김재진(200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06), 강철승(2007).

보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 제도의 개선으로 양분할 수 있다. 손윤환(2001), 최용선(2001), 김재진(2004), 강철승(2007)은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되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행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준규·이은상(2001),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06), 박훈·이은미(2007)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제안했는데,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단순화하여 도입하자고 주장한 논문들에 제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창희(2001)도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긴 하지만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을 폈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역점을 두어 제도를 단순화하고 적용대상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인기업이란 1인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를 지칭한다. 이때 사업체는 사업 운영을 위한 수단일 뿐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는 출자자가 개인 차원에서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적·실질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 Ⅲ. 기업 형태에 따른 과세제도의 차이: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과세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중 양쪽 극단에 있는 기업으로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성을 비교하고, 각각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알아본다.

개인기업이란 1인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를 지칭한다. 이때 사업체는 사업 운영을 위한 수단일 뿐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는 출자자가 개인 차원에서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적·실질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어떤 형태의 자산이든지 출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설립 및 청산시 특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는다. 사업체의 설립 또는 청산과 관계 없이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된 소득은 그 즉시 사업주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나중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출자자와 제3자 간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자자에 대한 급여 즉, 근로소득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표 1〉 참조).



다수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법인을  
형성하면 법인이 기업  
차원에서 세부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실질적 책임을  
지게 된다. 출자자(주주)는  
투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출자자가  
바뀌어도 사업체는 존속된다.

〈표 1〉 개인기업, 법인기업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비교

	개인기업	법인기업
출자자 수	1인	다수(7인 이상)
출자자산	제한 없음(비과세)	현금출자
사업의 주체	출자자	법인
법률적·실질적 책임	출자자	법인
출자자 책임의 범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체계(소득세 제외)	개인에 대한 과세	법인에 대한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소득의 사내유보	불가능	가능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음	발생, 부분적 조정
소득배분비율	투자자(1인) 소득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투자지분의 양도	불가	자유로움(양도소득세)
사업의 청산	사업용 자산양도 (양도차익 과세), 별도의 청산소득 과세 없음	청산소득 과세

다수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법인을 형성하면 법인이 기업 차원에서 세부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실질적 책임을 지게 된다. 출자자(주주)는 투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출자자가 바뀌어도 사업체는 존속된다. 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가 법인기업에 출자할 때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현물을 출자한다면 그 현물을 기업에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받은 현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 시점에 양도소득을 인식 과세한다.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며, 법인세 납부후 소득은 사내에 유보하거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출자자들에게 배분한다. 출자자에게 배분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단계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는 배당세액공제제도(개인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를 통해 출자자 단계의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진다. 사내에 유보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나 소득의 사내유보가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 출자자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자와 법인 간의 제3자 거래가 허용되므로 출자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인정된다. 따라서 출자자가 취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단계에서는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출자자가 법인에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도시 양도차익이 인식된다.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기업은 사업체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소수의 투자자가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파트너십은 개인기업의 성격도 있으며 법인기업의 성격도 있는 중간적인 형태의 사업체로서 어느 한쪽이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과세의 관점에서 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곤란하며, 그렇다고 사업체의 독립된 실체성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이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인적회사도 법인기업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공동경영과 손익배분을 요건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에 국한한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출자자 단계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비율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업체를 도관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물출자에 대해 출자시점에서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소수의 투자자가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파트너십은  
개인기업의 성격도 있으며  
법인기업의 성격도 있는  
중간적인 형태의 사업체로서  
어느 한쪽이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 IV. 파트너십의 정의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특징

### 1. 파트너십의 정의 및 특징

미국의 UPA(United Partnership Act) § 6(1)에 의하면 파트너십은 둘 이상의 人(person)에 의해 공동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人(person)은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괄한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소유권을登記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당사자로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트너십은 파트너와 구분된 별개의 실체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UPA § 201(1)).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무한책임파트너가 존재하는 경우에 독립된 실체로서 파트너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경우든지 파트너십이 독립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궁

3) 이준규(2001).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있어  
파트너십이 법률적 대표권을  
가지나 실질적인 책임은  
파트너가 부담한다.**

극적으로 무한책임파트너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인기업의 주주와 달리 파트너십의 사업활동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에게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sup>4)</sup>.

파트너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립·지배·의사결정 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인기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파트너십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적인 약정에 의존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투자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거의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설립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내부적인 약정조차 작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한책임파트너는 기업 경영에 동일한 비중으로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그 밖에도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면 파트너십이 해산되므로 사업에 영속성이 없다는 점, 소득세 과세시 도관으로 간주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경우에는 실체로 인정된다는 점 등도 파트너십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있어 파트너십이 법률적 대표권을 가지나 실질적인 책임은 파트너가 부담한다. 사업체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운영의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므로 정부는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의사에 맡긴다.

## 2.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특징

본 소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소절에서는 이를 다른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 본다.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갖는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도관으로 간주

4) 미국에서 유한책임회사에게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이 개인 납세자의 수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 고전적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폐해가 크므로 중소기업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형태와 그에 따른 조건 등이 주(State)마다 달라서 어떤 형태의 사업체가 '파트너십이다'라고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파트너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파트너십의 운영 소득(operating income)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계산, 신고가 이루어지나 이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최종 납세의무는 파트너에게 있다. 한편 사업체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자, 배당 등 특정 소득이나 비용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따로 계산한 후 관련 파트너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기 자본이득 및 손실, 장기 자본이득 및 손실, 사업용 자산의 처분손익, 배당수입, 외국 납부세액공제, 비과세이자소득 등은 파트너십을 거치지 않고 원래의 성격을 유지한 채 그대로 파트너에게 이전되어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된다. 이들 소득을 따로 구분하여 본래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트너에게 귀속시키는 이유는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사업소득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미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동적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수동적 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과의 상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동적 소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파트너십 소득에 포함시켜 파트너에게 사업소득으로 배분한다면 서로 다른 성격의 소득과 비용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피해서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둘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에서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고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인정해 준다. 주식회사는 현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차익을 인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은 파트너십이 누리는 중요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무출자가 가능하다.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인 이익지분 외에 사업체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본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파트너가 노무출자의 대가로 자본지분을 받았을 때 그 지분은 파트너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인식된다.

넷째,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이 인정된다. 파트너십의 소득, 이익, 손실, 공제 또는 기타 세법에 규정된 다른 항목들과 관련하여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특별배분(special allocations)이라고 한다. 계약이 없는 경우 파트너의 지분에 비례하여 정상배분이 실시되며, 특별배분이 상당한 경제적 효과 테스트(SEET: Substantial Economic Effect Test)를

파트너십 과세제도에서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고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인정해 준다.



파트너 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거래에 대한 대가가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결정된 확정 지급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3자 거래로 취급된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따라 손익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 SEET는 경제적 효과 테스트와 상당성 테스트로 구성되는데, 경제적 효과 테스트(EET: Economic Effect Test)란 손익배분이 파트너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여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파트너가 배분된 손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거나 자본보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자본계정은 파트너십의 청산시 파트너가 잔여재산에 대한 배분 청구를 통해 파트너십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자본계정이 0 미만이 되면 무한책임파트너는 파트너십을 청산할 때 미달된 자본만큼 파트너십에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유한책임파트너의 경우 이미 출자한 자금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자본계정이 0 미만이 되어도 자금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EET는 유한책임 파트너의 자본계정이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장치를 파트너십 계약에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당성 테스트(ST: Substantiality Test)는 파트너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서 금전이나 자산을 분배받을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고 파트너십의 손익배분비율이 각 파트너의 세부담과 상관없이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상당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특별배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정상배분과 비교해 볼 때 배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연도에 파트너의 세부담이 감소되는 특별배분(shifting allocation), (2) 여러 과세연도(5년)에 걸친 배분 결과가 정상배분의 경우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부담하는 세부담은 적은 특별배분(transitory allocation), (3) 특별배분이 실제 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받을 금전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정도로 충분히 커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배분(offsetting tax effect rule).

다섯째,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제3자 거래를 인정한다. 파트너 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거래에 대한 대가가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결정된 확정 지급액(guaranteed payments)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3자 거래로 취급된다. 그러나 파트너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일정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이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표 2〉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비교한 앞의 〈표 1〉에 파트너십을 추가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갖는 특징을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의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파트너십은 전통적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도관으로 간주되어 출자자산의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출자 시 세부담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타 세목에서는 파트너십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사적 계약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의 결정이 허용되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손익배분비율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상업적·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SEET라는 복잡한 점검장치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파트너십은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과 파트너 간의 제3자 거래가 인정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손익배분비율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상업적·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표 2〉 개인기업, 법인기업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비교

	개인기업	법인기업	파트너십
출자자 수	1인	다수(7인 이상)	소수(2인 이상)
출자자산	제한 없음(비과세)	현금출자	현물출자(비과세), 노무출자
사업의 주체	출자자	법인	파트너십
법률적·실질적 책임	출자자	법인	파트너십, 출자자
출자자 책임의 범위	무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유한책임 공존
과세체계(소득세 제외)	개인에 대한 과세	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에 대한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의 사내유보	불가능	가능	불가능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음	발생, 부분적 조정	발생하지 않음
소득배분비율	투자자(1인) 소득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사적 계약, 투자지분
투자지분의 양도	불가	자유로움(양도소득세)	자유롭지 못함
사업의 청산	사업용 자산양도(양도차익 과세), 별도의 청산소득 과세 없음	청산소득 과세	사업용 자산양도(양도차익 과세), 별도의 청산소득 과세 없음

### 3.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제도가 적용범위도 가장 넓고 세제상의 혜택도 가장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다른 국가들은 인적회사에 대해서만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데 비해 미국은 인적회사뿐만 아니라 물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손익배분비율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익과 손실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조합에 대해서만, 프랑스는 인적회사인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광범위하게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미국의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 폐해가 크다는 점과 주(州)별로 사업체의 형태에 대한 규정이 달라 일관된 방법으로 간단하게 파트너십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표 3〉 주요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특징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적용대상의 특징	LLC 선택적 적용	인적회사	인적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조합(LLP 포함)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과세이연	과세(자기지분 제외)	비과세	과세(자기지분 제외)
손익배분비율	약정 비율 인정 (SEET)	약정 비율 인정 (순이익)	지분비율	약정 비율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제3자 거래	인정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합산	인정	(규정없음)

자료: 안경봉(2001), 이은미(2006), 이창희(2001), 김진수·김재진(200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도 국가마다 차이가 큰 편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모든 형태의 기업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반면, 독일과 일본은 자기지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에 서는 과세이연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손익배분비율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익과 손실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은 '순이익'의 배분비율에 대한 사적 계약만을 인정하며, 프랑스에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배분을 하고 있다. 미국은 손익배분비율 설정에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는 한편 SEET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파트너십과 파트너 간의 거래를 제3자 거래로 인정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경우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V.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조세정책은 세수입의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존하는 조세 중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조세는 없다. 그러므로 최적과세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조세체계가 국가 경영에 필요한 세수입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조세체계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개편을 도모할 때에는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세수입이 조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라면, 부정적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세는 거의 예외없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나타난 자원배분의 왜곡은 경제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활동의 왜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인, 파트너십, 법인과 같은 기업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를 택하든지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조세가 기업의 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라고 부른다.

조세는 또한 소득 및 부의 재분배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 재정이라는 동일한 용도의 자금 풀에 자금을 기여하는 데 있어 소득 또는 재산이 많은 자와 적은 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및 부의 재분배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므로 조세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분배를 하는지도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조세회피의 가능성 및 납세·징세비용 역시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조세회피 및 납세·징세비용이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할 때 당연히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usgrave가 주장하는 조세정책 평가요소 중 조세체계의 단순성(simplicity)은 조세회피 및 납세·징수비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평가요소들을 적용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평가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평적 형평성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

세수입이 조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라면, 부정적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세는 거의 예외 없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나타난 자원배분의 왜곡은 경제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 형태별 과세상의 차이를 합리화시켜주는 논리적인 근거는 기업의 실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과세체계는 법인기업을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고 개인기업은 실체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된 것이다.

세회피 및 납세·장세비용,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수직적 형평성의 순으로 살펴본다.

### 1. 수평적 형평성 및 자원배분효과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수평적 형평성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규모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형평성이 성립될 때 조세가 자원배분에 대해 중립적이 되며 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과세의 경우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 세부담 격차가 오래 전부터 중요한 관심사였다. 세부담이 기업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Habberger(1965)의 비법인부문과 법인부문을 고려한 법인세 귀착 연구가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정반대라 할 만큼 기업 형태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한 과세제도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들 과세제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현물출자에 대해 출자시 과세한다는 점,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은 법인기업이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법인 이익의 사내 유보를 통해 세부담의 일부분(출자자 단계에서의 배당소득 과세)을 이연할 수 있다는 점, 출자자가 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근로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한 점이다.

이러한 기업 형태별 과세상의 차이를 합리화시켜주는 논리적인 근거는 기업의 실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과세체계는 법인기업을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고 개인기업은 실체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된 것이다. 즉, 법인은 그 자체가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므로 투자자와 법인이 별개의 주체이며,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행위와 기업의 사업활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사업체가 분리되지 않으며, 사업체는 경제주체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에 대해 '투자-생산-판매-수익'으로 이어지는 같은 성격의 경제활동에 대해 중간에 법인의 형태를 띠는 기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법인세 폐지론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실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파트너십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점, 기업의 설립 및 운영 방식

의 결정에 있어 법률이나 규율보다는 파트너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 파트너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로이 계승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보면 기업의 실체성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파트너십 명의로 사업이 운영되며 법률적으로 파트너십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실체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이러한 기업 형태가 갖는 특성을 이용하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장점만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이 가능하고 이중과세를 배제할 뿐더러 법인기업과 같이 출자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 제공 외에도 파트너와 기업간 제3자 입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손익배분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파트너십에만 적용되는 특혜로서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에 비해 매우 유리한 장점이다. 사내유보된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하게 법인기업에 비해 불리한 단점이다.

전체적으로 세부담 관점에서 파트너십과 개인기업을 비교해 보면 파트너십이 단연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기업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과 이중과세 배제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법인기업의 장점인 근로소득 공제와 제3자 거래 인정이라는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특유의 손익배분비율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법인기업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파트너십이 유리하지만 사내유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기업이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진수(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의 평균 배당률은 20% 수준에 불과한데, 이렇게 사내유보가 많은 경우 현재와 같은 이중과세의 부분조정제도하에서 동일한 규모의 소득을 가진 법인기업에 비해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이익의 사내 유보율이 높고 이중과세 조정도 비교적 많이 해 주는 편이어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중요한 특징인 '이중과세 배제-사내유보 불허' 조합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파트너십의 경우 사내유보된 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인해 세부담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파트너십은 기업의 실체성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파트너십 명의로 사업이 운영되며

법률적으로 파트너십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실체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파트너십에 대해  
특별한 과세체계를  
도입하게 된 데는  
파트너십이 무한책임  
기반으로 하는 인적회사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기업에 대한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평가

	개인	파트너십	법인	특성
출자시 과세	+	+	-	개인, 파트너십 과세이연
이중과세	+	+	-	법인 이중과세
사내유보	-	-	+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세액 비과세
손익배분비율 조정	-	+	-	파트너십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비율 조정
제3자 거래 인정	-	+	+	법인, 파트너십 근로소득 공제 등 혜택
출자자의 책임	무한	무한·유한	유한	

이와 같이 파트너십에 대해 특별한 과세체계를 도입하게 된 데는 파트너십이 무한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회사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중과세 배제 등 개인기업의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실제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법인기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도입하다 보니 세부담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체계가 탄생한 것이다.

파트너십은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하므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개인기업에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기업도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내유보가 많지 않은 경우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시 한계세부담 인하로 인해 투자가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소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다양한 절세(tax planning)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이중과세의 완전 조정, 손익배분비율의 자율적인 결정 등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지식과 자본을 결합하여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에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여 투자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지식과 자본의 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시장의 실패를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기술과 국내자본, 국내기술과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을 촉진하여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논문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

기도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특별히 차별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가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이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세부담 감소로 다소나마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조세회피 및 납세·징세비용

사업체를 도관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손익배분에 있어 사적 계약을 중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파트너들 간의 약정에 의해서 손익배분 등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과세당국이 인정한다는 점에서 세법 규정은 오히려 간단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 계약에만 의존할 경우 파트너십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세회피를 최소화하려면 사적 계약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한 손익배분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SEET를 거쳐야 한다. SEET를 통과하려면 사적 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이 파트너들이 실제로 분배받는 내용과 파트너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책임을 잘 대변해야 한다. 지분비율에 따른 배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분배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부담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질적인 분배액을 변화시키더라도 개별 파트너의 입장에서 조세절감액이 분배액의 감소분보다 큰 경우에는 사적 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손익배분비율 결정에 계약을 가함으로써 조세체계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조세회피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구분하여 별도의 배분비율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약정에 의한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이 과세당국에서 경제적 실질, 사적 계약의 진실성, 조세회피 의도 등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이 과세당국에서 경제적 실질, 사적 계약의 진실성, 조세회피 의도 등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 과세체계를 도입할 경우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징세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납세자가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 형태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는 과세체계를 도입할 경우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징세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 납세자의 납세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납세비용이 크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면 되므로 납세비용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으나, 납세비용과 징세비용 모두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세제상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파트너십으로 기업 형태를 전환하는 사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납세자가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 형태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이후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면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는 징세비용이 대폭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편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한계세부담이 인하되면 투자증대에 따른 세수입 증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 4. 수직적 형평성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 형태의 전환이 일어나면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거나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계층이 세부담 절감에 따른 혜택을 누리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는 점에서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이중과세의 완전한 배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 또는 배제하고 있는바 이중과세 조정의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이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기업과 달리 파트너십은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중요도가 더 큰 특징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사적 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 결정, 파트너십과 파트너 간의 제3자 거래 인정 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세부담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며, 법인기업과 비교해도 대체로 유리한 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폭 넓은 세제상의 우대는 인적회사라는 파트너십의 특성만으로 합리화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유한책임사원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요약컨대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이중과세의 배제라는 측면보다는 위험성, 자본조달문제 등으로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기업,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한계세부담 인하를 통한 투자 촉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배제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거나 손익배분비율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제도를 단순화하고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한적인 성격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현 상황에 유의미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만들려면 오히려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가장 중요한 조세회피 수단인 동시에 가장 복잡한 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복잡해지는 주원인은 자율적으로 결정된 손익분배비율이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 형식을 존중하는 현행 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이중과세의 배제라는  
측면보다는 위험성,  
자본조달문제 등으로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기업,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한계세부담 인하를  
통한 투자 촉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하며, 둘째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조세회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계계에서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체계를 요구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격적 조세회피(ATP: Aggressive Tax Planning)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과세 원칙의 강화가 요구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 구체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5)</sup>.

기존 문헌들을 보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한계세 부담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보완만 하자는 주장은 세제의 복잡성, 조세회피 증가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든지 현재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로 외국의 파트너십이나 새로 도입되는 기업의 형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단지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여러 가지 특징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어떤 측면을 무시 또는 약화하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 단지,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파트너십 과세제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든지, 어느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하며, 둘째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조세회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면을 갖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조세행정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후자에 중점을 두고 이후 점진적으로 전자를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성격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큰 편이며 그동안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과세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파트너십 외에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가 가능한 데다 최근 들어 공격적 조세회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질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므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또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개편과 함께 실질과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KIP

5) ATP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안중석(2006) 참조.

**<참고문헌>**

- 강철승, 「한국의 파트너십제도에 관한 연구」,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4.
- 김재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 김진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재정포럼』, 2007년 4월호, 통권 제130호, 한국조세연구원, 2007. 4.
- 김진수·김재진,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보완방안』, 2006. 9.
- 박 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 - 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4.
- 손윤환,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필요성』, 『공인회계사』, 2001년 8월호, 통권 99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01.
- 송상우, 「파트너간 손익분배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도입가능성 도입」,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4.
- 안경봉, 「합자조합(LP),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 안중석,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개소 기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6. 3.
- 윤병철, 「조합과세에 관한 판례연구 - 출자, 지분양도 및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 『조세법연구』, 제 8-1호, pp. 84~117, 한국세법연구회, 2002.
- 이기화,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국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4.
- 이은미,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
- 이정수, 「미국 LLC, LLP 도입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 『기업형태와 과세』, 2006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5회 정기학술세미나, 한국세법학회, 2006.
- 이준규·이은상, 「조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1. 8.
- 이창희, 『파트너십에 대한 적정과세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1
- 최용선, 「조합 과세제도 도입방안」, 『도시과학논총』, 제27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2001. 12.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간보고, 2007. 4.

Harberger, A. 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1962, pp. 215~240.



#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swo@kipf.re.kr)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sup>1)</sup>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에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성적(qualitatively)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효과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quantitatively) 실증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정부와 사회가 재정정책을 통해 출산친화적(birth friendly)인 환경을 만들어 주면, 가임기의 여성이 출산을 늘릴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효과가 얼마나 유효하며 출산친화정책으로 인해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이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반응의 크기에 관해서 실증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최근, 조운영(2006)의 연구가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통해 여성의 반응의 크기를 계산하고는 있지만, 사용된 모수들이 모형 내에서 추정된 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에서 계산된 결과물을 실제 데이터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 한국조세연구원의 기본과제의 일부로 진행된 것입니다. 연구를 도와주고 많은 조언을 준 김현숙 박사, 민희철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익명의 레프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있는 오류는 모두 저자의 것입니다. (필자 주)

1) 2007년 현재 7개 부처에서 42개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부 16개, 여성가족부 6개, 재정경제부 6개, 건설교통부 5개, 교육인적자원부 4개, 노동부 3개, 농림부 1개 등 임신 준비, 임신, 출산, 출산 후 모성보호, 보육 및 육아, 주택, 세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여성의 노동공급 감소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재정정책이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양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려고 한다. 출산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서, 출산 이외에도 노동공급과 결혼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의 부작용으로 여성노동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여성이 가정에 머무르는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여성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노동공급 감소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결혼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처럼 기혼자만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란, 여성에게 임의적으로(randomly)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포함한 여성의 생애주기 결정(life-time decisions)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결혼을 한 여성은 가정에 대한 가치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녀에 대해 좀 더 높은 가치를 둔 여성일 확률이 높다. 그 결과, 분석대상을 분석자의 편의에 따라 기혼자에 대해서만 한정할 경우, 자녀에 대한 가치를 과대추정(over-estimation)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Francesconi, 2002)과는 다르게 미혼자들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미혼자들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당연히 미혼여성들의 결혼 결정도 고려되어야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표본선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축약형모형추정(reduced-form estimation) 대신 구조모형추정(structural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에서 출산장려정책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variations)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축약형모형추정을 이용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여성의 출산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식별(identification)하기가 용의하지 않았다. 둘째, 앞으로 시행될 출산정책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일 것인지 알고 싶을 때, 축약형모형추정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루카스 비판). 자료에서 관측되지 않은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수행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구조모형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였다. 첫째, 기혼자에 국한한 기존의 연구들은 심각한 표본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

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둘째, 보육비지원을 통한 정책은 출산장려 면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노동공급 면에서는 일하는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여성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셋째, 탄력근무제는 노동공급과 결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여성의 출산을 제고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여성의 결혼, 노동공급, 출산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소개하고 추정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추정결과를, 제5장에서는 반사실적 실험의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탄력근무제는 노동공급과 결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여성의 출산을 제고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모형

### 가. 가정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자. ① 결혼한 여성만이 출산을 할 수 있다.<sup>2)</sup> ② 출산에 대해서는 완전한 통제(perfect control)가 가능하다.<sup>3)</sup>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여성은 자신의 효용함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매기 결혼, 노동공급, 그리고 출산의 결정을 하게 된다.

### 나. 모형

편의를 위해서, <표 1>과 같이 기호를 정의하자.

<표 1> 기호의 정의

기 호	정 의	기 호	정 의
$p_t$	시간제 더미	$YN_t$	어린 자녀수
$f_t$	전일제 더미	$ON_t$	나이든 자녀수
$n_t$	출산 더미	$\tau_t$	조세정책
$ms_t$	결혼상태	$g_t$	재정정책
$N_t$	자녀수	$a_t$	나이
$X_t^p, X_t^f$	각 노동부문에서의 인적자본		

2) 즉, 혼외출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혼여성에게 출산 결정은 없다.  
3)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 매기 임신·출산이 가능하다.



소비는 예산제약에 따라 결정되고, 여가는 노동공급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의 horizon은, 관측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0기로 하고, 그 때의 상태변수들을 초기치로 가정하자( $\Omega_0$ ). 이 문제에서의 상태변수(state variables)는 다음과 같다.

$$\Omega_t = \{X_{t-1}^p, X_{t-1}^f, N_{t-1}, ms_{t-1}, a_t, \tau_t, g_t\} \quad (1)$$

이 문제에서 선택변수(choice variables)는 다음과 같다.

- 시간제 선택:  $p_t = \begin{cases} 1 & \text{1 시간제일 경우} \\ 0 & \text{다른 경우} \end{cases}$
- 전일제 선택:  $f_t = \begin{cases} 1 & \text{1 전일제인 경우} \\ 0 & \text{다른 경우} \end{cases}$
- 출산 선택:  $n_t = \begin{cases} 1 & \text{1 출산했을 경우} \\ 0 & \text{다른 경우} \end{cases}$
- 결혼 선택:  $ms_t = \begin{cases} 1 & \text{1 결혼했을 경우} \\ 0 & \text{다른 경우} \end{cases}$

1기 효용함수(one-period utility function)는 식 (2)와 같이 가정하자.

$$u(\cdot) = \alpha_c c_t + \alpha_L L_t + \alpha_N N_t + \alpha_{N^2} N_t^2 + \alpha_p p_t + \alpha_f f_t + \alpha_m ms_t + \epsilon_t \quad (2)$$

여기서  $c_t$ 는 소비이고,  $L_t$ 는 여가이다. 소비는 예산제약에 따라 결정되고, 여가는 노동공급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2차함수로 가정하였다. 즉,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세 번째 자녀가 주는 한계효용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노동공급 상태와 결혼 상태에 따른 고정비용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alpha_p, \alpha_f, \alpha_m$ ).  $\epsilon_t$ 는 각 선택에 따른 보이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다.

다음에는 예산제약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_t = y^w(p_t, f_t, \tau_t) + y^h(m_t, \tau_t) + g_t - \beta_{YN} YN_t - \beta_{ON} ON_t - \beta_p p_t - \beta_f f_t \quad (3)$$

예산제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첫 두 항은 소득에 대한 항이다. 첫 번째 항은 여성의 소득,  $y^w$ 으로 여성의 노동공급 상태에 따라 결

정된다. 두 번째 항은 남편의 소득이고 여성의 결혼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g_t$ 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transfer)에 해당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은, 자녀의 양육비용에 해당된다. 7세 이상의 자녀(초등학생 이상)와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모형화했다. 마지막 두 항은, 노동시장 참가에 따른 고정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각 부문 선택에 따른 여성의 임금은 다음의 임금방정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여성이 전일제 부문에서 노동공급을 했을 경우 식 (4)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전일제 부문의 인적자본과 나이, 그리고 학력에 따라 여성의 전일제 임금이 결정된다.

$$\log y_t^{wf} = \gamma_1^f + \gamma_2^f X_t^f + \gamma_3^f (X_t^f)^2 + \gamma_4^f a_t + \gamma_5^f (a_t)^2 + \gamma_6^f S \quad (4)$$

여성 이 시간제 부문에 노동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여성의 특성에 관계없이 시간제 부문의 평균임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자.<sup>4)</sup>

$$y^p = \bar{y}^p \quad (5)$$

남편의 소득 역시 다음의 소득방정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log y_t^h = z_t' \gamma_h \quad (6)$$

여기서  $z_t$ 는 여성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이다. 위와 같이 남편의 소득방정식을 가정하는 것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여성은 비슷한 소득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Francesconi 참조)를 반영한 결과이다.

현재의 모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인적공제를 통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남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부분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부분이다. 한국에서는 대개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 여성의 소득보다 많아 좀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서 받는다는 가정이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모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인적공제를 통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남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부분이다.

4) 시간제 부문의 임금결정에도, 시간제 부문 또는 전일제 부문의 인적자본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시간제 부문의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이들의 역할이 미미하여 식 (5)처럼 가정하였다.



인적자본은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따라 축적되며, 미래의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여부는 미래의 임금에 동적 함의를 갖게 된다.

#### 다. Law of motion

상태변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법칙을 따라 진화하는지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해서 살펴보자.

$$X_t^f = X_{t-1}^f + f_t \quad (7)$$

인적자본은 식 (7)처럼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따라 축적되며, 미래의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여부는 미래의 임금에 동적 함의(dynamic implications)를 갖게 된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자녀수가 자녀의 유지비용(maintenance cost)을 결정하므로, 역시 동적 함의를 갖게 된다. 자녀수는 식 (8)에 따라 같이 축적된다.

$$N_t = N_{t-1} + n_t \quad (8)$$

#### 라. 여성의 최적 결정

가임기 여성의 선택집합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임기 여성에게는 결혼여부, 출산여부, 노동공급(전일제노동, 시간제노동, 가사노동)이라는 총 12개의 가능한 선택의 조합이 있다. 미혼 여성의 출산은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가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택집합은 총 9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표 2〉 참조).

상태변수에 의해 정의된 선택집합이 주어졌을 때, 가임기 여성은 노동공급, 출산 및 결혼의 결정이 미래의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생애주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표 2〉 여성의 선택집합

결혼상태	출산	노동공급	선택번호
1: 미혼, 2: 기혼	0:비출산, 1:출산	(1:전일제, 2:시간제, 3:가사노동)	
2	0	1	1
2	0	2	2
2	0	3	3
2	1	1	4
2	1	2	5
2	1	3	6
1	0	1	7
1	0	2	8
1	0	3	9

### 3. 자료 및 추정

#### 가. 자료

구조모수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KLIPS)이 사용되었다. KLIPS는 1998년 이후로 5,000가구의 노동시장 선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는 2004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총 7개의 웨이브를 사용하였다. 노동패널로부터 가임기 여성의 결혼, 출산, 노동공급을 패널로 관측함으로써 여성의 구조모수들을 추정해낼 수 있었다.

결혼과 노동공급은 응답자의 자기보고(self-report)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결혼은 크게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었고, 이혼이나 사별 등은 미혼으로 간주하였다. 여성의 노동 상태는 설문 응답자가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에 대해 답한 설문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에 따라 노동 상태에 대한 자기보고 대신에 노동시간을 사용하여 분류하기도 하는데, 노동패널의 노동시간 보고에 대한 응답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사용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출산에 대한 변수를 구성하는 부분이었다. 노동패널에서 출산에 정보는 wave1(1998)의 개인자료와 wave7(2004)의 가구자료에 잘 나와 있다. 구조모수추정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되는 여성의 출산 결정의 패턴이므로, wave1의 자료로부터의 자녀수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대신, wave7의 가구자료로부터 자녀들의 나이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각 wave의 자녀수와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였다. 이런 방식은 구성상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가구자료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기록되므로, 자녀 중에 인터뷰시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둘째, wave1에서는 있다가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wave7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계산된 자녀수는 실제 자녀수보다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ave1에서 wave7까지 빠짐없이 조사된 여성 중에서 1998년도에 19세에서 45세까지의 가임여성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총 1,773명의 여성이 샘플에 남았으므로, 총 12,411개(1773×7)의 관측치가 있다. 표본에 포함된 여성에 대한 묘사적 통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wave7의 가구자료로부터  
자녀들의 나이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각 wave의  
자녀수와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였다.



비용부분과 효용부분  
 둘 중에 하나는 정규화하고,  
 나머지 추정된 모수들은  
 그 정규화에 상대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 나. 실증모형과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

앞 절에서 제시된 모형의 구조모수들을 실증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을 모형에 가해야 한다. 먼저,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에 대한 가정이 다. 각 주어진 선택에 대해서 선호충동(preference shock)을 받게 되는데, 이 확률변수의 분포에 따라서 해당 여성이 관측된 선택을 할 확률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은 선택 간에 그리고 시간 간에 IID type-I extreme value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다. type-I extreme value 분포의 장점은 선택확률이 닫힌 형태(closed-form)로 주어지기 때문에 계산상의 이익이 다른 분포에 비해 상당히 크다.

다음은 식별을 위해서 모수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에 대한 비용과 효용,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비용과 효용에 대한 모수들은 효용함수의 선형성 때문에 동시에 식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용부분과 효용부분 둘 중에 하나는 정규화(normalize)하고, 나머지 추정된 모수들은 그 정규화에 상대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부분을 정규화하였다. 자녀 양육 비용은 선행연구(김현숙, 2004)에서 추계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노동공급 상태에 따른 비용은 0으로 정규화하였다.

### 다. 추정방법

앞 절에서 가정했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이용해서, 해당 여성이 관측된 선택을 할 확률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해 우도함수를 구성한다.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left[ \left\{ \Omega_t, d_{t-1}, d_t \right\}_{t=1999}^{2004} \right]_{i=1}^N \tag{9}$$

이때, 개인의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r(d_t = k | d_{t-1} = j, \Omega_t) = \frac{\exp(u_i(k; d_{t-1} = j, \Omega_t))}{\sum_{l=1}^9 \exp(u_i(l; d_{t-1} = j, \Omega_t))} \tag{10}$$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위의 식 (10)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

해 볼 수 있다.

$$l\left(\theta; [d_{i,t}, d_{i,t-1}, \Omega_{t=1999}^{2004}]_{i=1}^N\right) = \prod_{i=1}^N \prod_{t=1999}^{2004} \Pr(d_{i,t} = k | d_{i,t-1}, \Omega_t) \quad (11)$$

모형의 구조모수들은 위의 우도함수를 극대화 시키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해서 추정되었다.

4년 동안 전일제 부문에서 일한 고졸여성의 임금과 갓 졸업하고 전일제 부문에 직장을 가진 여성이 받는 임금은 비슷하다는 결과여서 매우 흥미롭다.

## 4. 추정결과

### 가. 임금방정식의 추정

본 연구에서 추정되어야 할 임금방정식은 두 개이다. 여성노동자가 인적자본 및 특성이 주어졌을 때, 전일제 부문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결정해주는 임금방정식(식 (4))이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의 남편의 소득을 결정해주는 소득방정식(식 (6))이다.

임금방정식 추정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여성의 임금방정식을 살펴보면, 인적자본과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고 그 크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특히, 인적자본의 임금에 대한 한계공헌(marginal contribution)은 인적자본이 쌓일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이 1년 더 전일제 부문에서 일하면, 약 8% 정도의 연간 임금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나이에 따른 증가분은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학력에 의한 임금의 공헌도와 경력에 의한 공헌도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4년 동안 전일제 부문에서 일한 고졸여성의 임금과 갓 졸업하고 전일제 부문에 직장을 가진 여성이 받는 임금은 비슷하다는 결과여서 매우 흥미롭다.



소비에 관한 한계효용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첫 자녀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해 보면, 전체 샘플의 경우에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식 (4)			식 (6)		
	계수	표준편차	t-값	계수	표준편차	t-값
ln(wage)						
인적자본	0.0817***	0.006237	13.1	-	-	-
인적자본제곱	-0.0053***	0.000563	-9.47	-	-	-
나이	0.006449	0.008907	0.72	0.197059***	0.025491	7.73
나이제곱	0.000096	0.000128	0.75	-0.00283***	0.000335	-8.45
학력	0.081527***	0.002991	27.25	0.053052***	0.005433	9.77
상수	5.449639***	0.155272	35.1	3.315666***	0.482527	6.87
관측치	3,545			8,242		

### 나. 구조모수의 추정

최우추정법을 통해 추정된 구조모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모형에 대해서 추정된 구조모수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1)~(3)은 전체 샘플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고, 모형(4)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1)은 여가를 제외하고 전일제와 시간제 더미를 포함시켰고, 모형(2)~(3)은 여가를 포함시킨 대신, 각각 시간제와 전일제 더미를 제외시켰다.

모든 모형에 걸쳐, 각 변수의 한계효용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호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와 여가는 양(+)의 부호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통계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다. 자녀수의 경우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지만, 한계효용은 자녀수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소비에 관한 한계효용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첫 자녀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해 보면, 전체 샘플의 경우에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의 경우는 효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가 전체 표본의 경우보다는 작았다. 출산으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1억 3천만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4〉 구조모수 추정결과

모형	전체 샘플		기혼자 샘플	
	w/o leisure (1)	w/ leisure, full-time (2)	w/leisure, Part-time (3)	w/ leisure, full-time (4)
소비	0.001942*** (0.000088)	0.001942*** (0.000088)	0.001942*** (0.000088)	0.001785*** (0.0000945)
여가		0.565109*** (0.009285)	0.298653*** (0.011343)	0.539665*** (0.0096472)
자녀수	23.46696 (469.4046)	23.46696 (469.4047)	23.46696 (469.4046)	17.74689 (502.0237)
자녀수 제곱	-0.15147*** (0.050923)	-0.15147*** (0.050923)	-0.15147*** (0.050923)	-0.15195*** (0.0509384)
출산	-26.2035 (469.4047)	-26.2035 (469.4047)	-26.2035 (469.4046)	-20.4922 (502.0237)
전일제	-2.38922*** (0.09074)	2.131647*** (0.083339)		1.92491*** (0.0872872)
시간제	-2.26043*** (0.037139)		-1.06582*** (0.041669)	
결혼	-3.19081*** (0.11243)	-3.19081*** (0.11243)	-3.19081*** (0.11243)	17.22625 (618.0147)
Log likelihood	-12444.4	-12444.433	-12444.433	-10419.308
No	12,411	12,411	12,411	10,483

실제로 많은 여성이 결혼하는 이유는, 추정결과 대로라면, 결혼을 통해서 받는 추가적인 이득, 즉 남편의 소득이 결혼을 통해서 생기는 효용의 증가가 결혼의 직접적인 비효율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노동공급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가의 모형 포함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구조모수추정에 사용된 여가는, 관측된 것이 아니라 노동공급 상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값을 계산하여 넣은 것이다. 어떤 값이 여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노동공급이 효용에 미치는 추정된 효과는 매우 다른 값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공급 상태가 효용에 미치는 효과는, 여가가 제외된 모형(1)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공급은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효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크기로는 전일제가 미치는 효과가 시간제에 비해서 약간 더 크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해석해보면, 전일제나 시간제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혼은 여성의 효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일정하다면, 미혼여성은 강한 선호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이 결혼하는 이유는, 추정결과 대로라면, 결혼을 통해서 받는 추가적인 이득, 즉 남편의 소득이 결혼을 통해서 생기는 효용의 증가가 결혼의 직접적인 비효율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하에서 성립했던 정책과 경제주체들의 행동의 관계가 다른 정책하에서 안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루카스 비판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결혼 상태 변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전체 표본을 이용했을 경우와 기혼자만 이용했을 경우의 결혼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전체 샘플을 이용했을 때 결혼의 한계효용은 음(-)인 반면에,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양(+)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결혼에 대해서 강한 선호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과다추출(over-sampling)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의 한계효용뿐만 아니라, 다른 모수들도 통계적·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편향된 연구결과를 생산했을 수도 있다.

### 5.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을 임의적으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통제군(control group)으로 나눈다. 실험군에는 정책을 시행하고, 실험군에 속한 사람들과 통제군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해서 차이를 구하면, 그 차이가 정책의 순수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험적인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면, D-in-D추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이 가장 이상적인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용이하지 않다. 자연적인 실험환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실험적 환경(quasi-experiment setup)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해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더군다나, 미래에 시행될 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 논할 필요도 없다.

보통의 정책효과 분석은, 사용가능한 자료로부터 다른 정책과 경제주체들의 행동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sup>5)</sup> 이를 시행하려는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정책하에서 성립했던 정책과 경제주체들의 행동의 관계가 다른 정책하에서 안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루카스 비판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 대신 구조모수를 추정하였고, 그 구조모수를 가진 경제주체가 새로운 환경하에서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즉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사실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

5) 보통 탄력성을 추정하게 된다.

부가 육아정책 중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을 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 다른 영유아 육아비 보조정책이 여성의 경제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보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여성이 전일제 부문에 노동을 공급할 때만 영유아 육아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성의 노동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반사실적 실험은 탄력근무제에 대한 정책이다. 최근, 출산 및 가족 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을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탄력근무제 도입이 여성의 경제적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사실적 정책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간략하게 반사실적 실험을 위한 모의 실험(simulation)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관측치를 type-I extreme value 분포에서 임의 추출한 보이지 않는 이질성과 함께 50번 복사한다. 그 다음 추정된 구조모수(모형(2))를 이용해서 각 선택에 대한 효용수준을 계산하면, 주어진 정책하에서 개별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선택별, 연도별로 총합(aggregation)하여 기존의 정책하에서의 선택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평균적인 효과를 계산하였다.

### 가. 양육비 보조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실험하고 있는 정책이 현실의 정책과 정확히 일대일 대응되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형이 현실의 간단한 묘사이기 때문에 정책 역시 실제 정책의 근사(approximation)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현실에서의 영유아 양육비 보조 정책은, 소득별 차등지원, 만 5세아 지원, 두 자녀 이상 지원, 장애아·입양아동 지원 정책 등 아주 구체적이다. 하지만 추정된 모형 안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의미 있게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책을 고려했다.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용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두 가지 다른 방식을 고려했는데, 첫 번째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엄마가 전일제 부문에서 노동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모의실험에 대한 결과는 <표 6>~<표 7>과 [그림 1]~[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이 현실의 간단한 묘사이기 때문에 정책 역시 실제 정책의 근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책을  
 고려하였다.

〈표 5〉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	1773	33.421	7.269	19	45
결혼상태	1773	1.82	0.381	1	2
전일제 노동	453	0.801	0.399	0	1
자녀수	1773	1.510	0.901	0	3
연간임금	451	941.561	542.689	60	3600
학력	1773	11.824	2.769	0	23
남편의 연간임금	1773	1128.704	1358.871	0	2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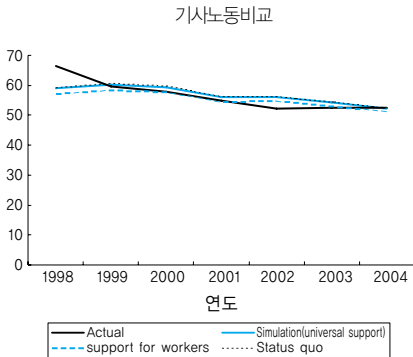
〈표 6〉 보육지원 정책하의 여성의 출산 변화

	실제	모두 지원	노동자만 지원	기존정책
1998	0	2.83	2.54	2.29
1999	4.34	2.87	2.49	2.21
2000	3.44	2.93	2.78	2.56
2001	2.94	2.15	1.96	1.83
2002	2.03	2.7	2.48	2.3
2003	2.09	2.89	2.71	2.35
2004	0.85	2.69	2.59	2.34
평균	2.24	2.72	2.51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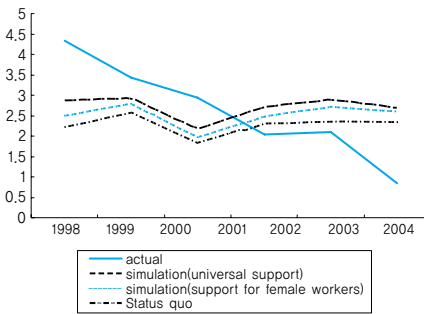
〈표 7〉 보육지원 정책하의 여성의 결혼결정 변화

연도	실제		모두 지원		노동자만 지원		기존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1998	17.65	82.35	18.35	81.65	18.36	81.64	18.36	81.64
1999	16.75	83.25	16.81	83.19	16.81	83.19	16.81	83.19
2000	16.47	83.53	16.36	83.64	16.36	83.64	16.36	83.64
2001	15.45	84.55	15.42	84.58	15.42	84.58	15.42	84.58
2002	14.66	85.34	14.61	85.39	14.61	85.39	14.61	85.39
2003	13.93	86.07	13.55	86.45	13.55	86.45	13.55	86.45
2004	13.82	86.18	13.05	86.95	13.05	86.95	13.05	86.95
합계	15.53	84.47	15.45	84.55	15.45	84.55	15.45	84.55

[그림 1] 보육지원 정책하의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가사 부문의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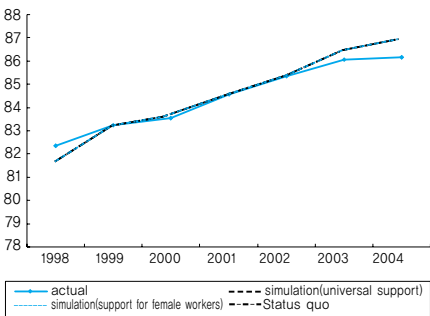


[그림 2] 보육지원 정책하의 여성의 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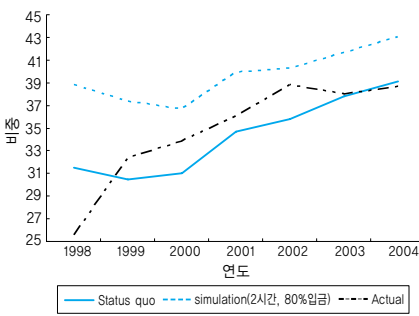


전일제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만 지원을 해주면, 여성의 노동공급이 작게나마 35.6%로 약 1.3%포인트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보육지원 정책하의 여성의 결혼 결정 변화(기혼율)



[그림 4] 탄력근무제하에서 여성의 전일제 노동공급(2시간의 추가여가와 80%임금)



먼저, 새로운 보육지원 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정책(status quo)과 비교해 살펴보자([그림 1], [그림 2]). 여성의 노동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여성의 노동공급의 유인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 기존 정책하에서 34.3%가 전일제 부문에서 일했었는데, 새로운 정책하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34.4%가 전일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에, 전일제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만 지원을 해주면, 여성의 노동공급이 작게나마 35.6%로 약 1.3%포인트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직관은 다음과 같다.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원했을 때, 모형의 선형성 때문에



보육비 지원 정책은  
출산정책의 측면에서는  
모든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지원대상을 일하는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각 부문 선택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차이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노동공급의 패턴은 변하지 않지만, 혜택을 일하는 여성에게 한정되었을 때에는, 일하는 것이 임금 외에도 아이의 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의 가치가 증가한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혜택이 노동공급의 고정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는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표 6〉, [그림 3] 참조). 보육지원 정책은 자녀의 유지비용(maintenance cost)를 낮춰주므로 자녀를 가질 때의 효용을 높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의 정책하에서는 2.27%의 출산율이고 새로운 정책하에서는 모두 지원하면 2.72%, 노동공급하는 여성에게만 제한할 경우 2.51%로,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결혼의 경우는 새로운 정책이 어떤 경우에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림 4]). 즉, 보육비 보조로 인하여 증가하는 효용의 증가분이 결혼으로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보육비 지원 정책은 출산정책의 측면에서는 모든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지원대상을 일하는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보육지원정책이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탄력근무제의 효과

탄력근무제는 여성 노동자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현된다.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이 전일제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 여가의 소비가 증가하고 대신 임금은 전일제 부문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사실적 실험의 효과는 〈표 8〉~〈표 10〉과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탄력근무제는 기존의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동공급을 34.4%에서 39.7%로 5.3%포인트 증가시킨다. 하지만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양(+)이긴 하지만 그 크기는 작아서 경제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탄력근무제의 혜택이 결혼에 드는 고정비용을 능가할 만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 8〉 탄력근무제하의 여성의 노동공급(2시간의 추가여가와 80%의 임금)

year	실제자료			추정된 모형			모의실험 (2시간 여가, 80% 임금)		
	전일제	시간제	가사노동	전일제	시간제	가사노동	전일제	시간제	가사노동
1998	25.55	8.07	66.38	31.51	9.38	59.11	38.81	8.44	52.75
1999	32.43	8.01	59.56	30.49	9.04	60.47	37.4	8.17	54.43
2000	33.84	8.35	57.81	31.04	9.41	59.55	36.68	8.5	54.82
2001	36.1	9.02	54.88	34.66	9.36	55.97	39.93	8.6	51.47
2002	38.86	9.08	52.06	35.83	7.99	56.18	40.29	7.41	52.3
2003	38.01	9.53	52.45	37.83	7.91	54.26	41.69	7.13	51.18
2004	38.69	8.8	52.51	39.11	8.55	52.34	43.03	8.08	48.89
Total	34.78	8.69	56.52	34.35	8.81	56.84	39.69	8.05	52.26

탄력근무제가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양(+)이긴 하지만 그 크기는 작아서 경제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9〉 탄력근무제하의 여성의 출산을 변화(2시간의 추가여가와 80%임금)

	실제	추정된 모형	모의실험 (2시간 여가, 80% 임금)
1999	4.34	2.21	2.77
2000	3.44	2.56	3.03
2001	2.93	1.83	2.32
2002	2.03	2.3	2.78
2003	2.09	2.35	2.97
2004	0.85	2.34	2.84
Total	2.24	2.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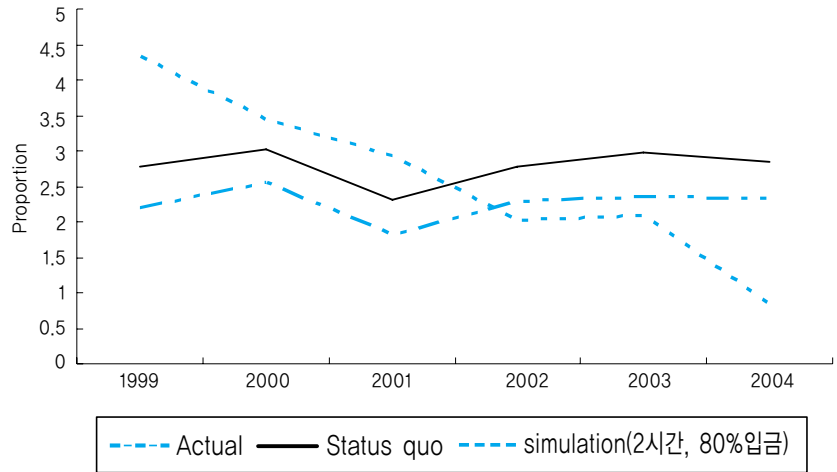
〈표 10〉 탄력근무제하의 여성의 결혼결정(2시간의 추가여가와 80%의 임금)

year	자료		추정된 모형		모의실험 (2시간 여가, 80% 임금)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1998	17.65	82.35	18.36	81.64	18.35	81.65
1999	16.75	83.25	16.81	83.19	16.81	83.19
2000	16.47	83.53	16.36	83.64	16.36	83.64
2001	15.45	84.55	15.42	84.58	15.37	84.63
2002	14.66	85.34	14.61	85.39	14.59	85.41
2003	13.93	86.07	13.55	86.45	13.55	86.45
2004	13.82	86.18	13.05	86.95	13.04	86.96
Total	15.53	84.47	15.45	84.55	15.44	84.56



탄력근무제는  
결혼의 선택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여성노동공급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탄력근무제하의 여성의 결혼결정(2시간의 추가여가와 80%의 임금)



이에 비해 출산에 미치는 상당히 크다. 하루에 여가 2시간 증가에 80%의 전일제 임금을 받을 때, 출산은 약 2.2%에서 2.8%로 거의 27% 증가한다. 물론, 이 크기는 여가의 증가분이 줄어들거나 전일제 임금의 얼마 정도를 보상해주는냐에 따라 그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출산을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탄력근무제는 결혼의 선택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여성노동공급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추정 방법과 반사실적 실험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 여성의 결혼, 노동공급,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노동패널 7년간(1998~2004)의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들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기존의 문헌들처럼 기혼자에 한정하여 분석했을 경우, 표본선택의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출산장려정책 중에서는 보육비지원 정책과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반사실적 실험을 해보았다. 보육비지원 정책은 출산정책의 측면에서는 모든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지원대상을 일하는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제는 여성노동공급과 결혼의 선택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KIF**

### <참고문헌>

-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 제1차연도 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5집 6호, 2001.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5-30(2), 200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조운영,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모형』, 한국개발연구원, 2006
- Francesconi, M., “A Joint Dynamic Model of Fertility and Work of Married Wo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20(2), 2002, pp. 336~379,
- Ueda, A., “A Dynamic Decision Model of Marriage, Childbearing,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in Japan,” mimeo, 2004.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cheung@kipf.re.kr)

국제적으로 최빈개도국의  
절대빈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UN 산하기관인 UNCTAD를  
중심으로 1971년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한 국가에  
대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여 회원국들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 I. 서론

특혜관세제도는 개념적으로 한 국가가 상대국가에 일방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추어 줌으로써 관세상 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칭한다. 즉, 상대국가가 관세장벽을 낮추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이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이란지 혹은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양자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은 참여 국가들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의 절대빈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UN 산하기관인 UNCTAD를 중심으로 1971년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한 국가에 대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여 회원국들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절대빈곤 국가인 최빈개도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 속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최빈개도국의 절대적인 빈곤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OECD, WTO, 그리고 UN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EU는 적극적으로 무기 이외의 모든 최빈개도국 물품(Everything But Arms)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고, 의회 반대를 구실로 섬유제품 특혜관세 확대를 미루던 미국도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일본도 대부분의 섬유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2003년부터는 농수산물

1) 1996년 OECD에서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제시하면서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빈곤 퇴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UN도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확대하였다.

WTO DDA 협상에서도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으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에는 큰 이견이 없다.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개도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선진국과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도국은 2008년까지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경우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 수출품의 97%까지 시장접근을 허용하지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WTO 회원국이고 또한 OECD 회원국인면서 최빈개도국에 대해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이에 대한 대비책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 부족은 특혜관세관련 정책입안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어떤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전반적인 특혜관세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UN 개발정책위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빈개도국 선정 기준은 1인당 GNI,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민감성 지수 등 세 가지이다.

## I.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 1. 최빈개도국 현황

최빈개도국 선정은 UN 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the Committee of Development Policy)에서 결정한다. UN 개발정책위원회가 최빈개도국 가입 혹은 졸업의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를 추천하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UN 총회에서 최빈개도국에의 가입 혹은 졸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UN 개발정책위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빈개도국 선정 기준은 크게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인적자산지수(the Human Assets Index), 경제적 민감성 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등 세 가지이다<sup>2)</sup>.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 최빈개도국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최빈개도국 졸업 기준에 가까우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신속적으로 졸업 여부를 정하고 있다.

2) 1인당 GNI는 3년 평균 750달러 미만인 경우 최빈개도국에 포함되며, 900달러 이상이면 제외(졸업)된다. 인적자산지수(HAI)는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 1인당 하루 필요 열량 섭취량, 1차 및 2차 교육기관 등록률, 성인 문맹률 등으로 계산된다. 경제적 민감성 지수(EVI)는 GDP 대비 제조업 및 현대서비스의 비중, UNCTAD의 수출상품 집중도, 농업생산의 불안정성,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도, 인구 등으로 계산된다.



UN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전체 최빈개도국에 사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하루에 1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국민들은 하루에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1971년 UN에서 처음으로 24개 국가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였다. 최빈개도국 지위는 매 3년마다 갱신되며, 이후 최빈개도국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2003년부터 50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다. 지역별로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 34개국, 그리고 중남미 1개국이다.

〈표 1〉 최빈개도국의 지역별 분포

지역	국가
아시아 (15)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몰디브,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키리바시, 투발루, 솔로몬군도,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 (34)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보베르데, 코모로, 탄자니아, 토고, 콩고민주공화국(자이레),
중남미 (1)	아이티

자료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대통령령, 2006년 12월 30일

UN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전체 최빈개도국에 사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하루에 1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국민들은 하루에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빈개도국에서의 절대적 빈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02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의 평균 1인당 GDP는 281달러로 개도국 전체의 1인당 GDP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시장경제 국가들에 비해 1/100 수준으로 매우 가난하다.

2004년 최빈개도국의 총수출액은 578억달러로 전 세계 총수출액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의 총수입액은 644억달러로서 66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빈개도국 중 산유국인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가 121억달러에 달해 비산유국들만의 무역수지 적자는 187억달러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무역적자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확대되는 등으로 최빈개도국들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인구가 전 세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 최빈개도국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

(단위 : 백만달러)

	2001	2002	2003	2004
총수출	36,056	39,397	45,929	57,839
산유국	13,075	15,625	18,727	25,345
비산유국	22,981	23,772	27,202	32,494
총수입	46,308	47,867	56,474	64,435
산유국	8,564	9,290	11,068	13,267
비산유국	37,744	38,577	45,406	51,168
무역수지	-10,252	-8,470	-10,545	-6,596
산유국	4,511	6,335	7,659	12,078
비산유국	-14,763	-14,805	-18,204	-18,674

자료: UNCTAD(2006)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 상황을 살펴보면, 30개국이 WTO 회원국이고, 12개국이 WTO 옵저버 국가이다. 옵저버 국가들 중 상투메프린시페와 적도기니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 상황을 살펴보면, 30개국이 WTO 회원국이고, 12개국이 WTO 옵저버 국가이다. 옵저버 국가들 중 10개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표 3〉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 현황

WTO 참여 수준	국가명
WTO 회원국 (32)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네팔,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솔로몬제도,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우간다,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WTO 옵저버 국가(10)	라오스,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수단, 상투메프린시페, 에티오피아, 예멘,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WTO 비가입 국가(8)	아프가니스탄, 코모로, 에리트리아, 키리바티,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투발루, 동티모르

주 : WTO 옵저버 국가들 중 상투메프린시페와 적도기니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WTO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자료: WTO, www.wto.org.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개도국의 93개 품목에 대해 무세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관세법 제76조 제3항에 근거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서 대상 품목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

### 가.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개도국의 93개 품목에 대해 무세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sup>3)</sup>. 관세법 제76조 제3항에 근거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서 대상 품목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WTO에서 권고하는 116개 품목 중에서는 8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커피·담배 등 농산물이 22개 품목이며, 관광용 활어, 닭새우류 등 수산물이 3개 품목이고, 원목과 제재목 등 임산물이 13개 품목이고, 원면·천연고무·천연인산칼슘·의류 등 나머지 공산품이 42개 품목이다.

WTO에서 권고하고 있는 116개 품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지 않은 29개 품목은 농산물이 13개 품목, 수산물이 8개 품목, 임산물이 1개 품목, 그리고 공산품이 7개 품목이다.

〈표 4〉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제외 품목(29개)

구 분	품 목
농산물(13)	뼈없는 쇠고기, 콩, 기타 채소, 기타 채두류, 바나나, 망고, 건포도, 홍차류, 쌀, 참깨, 낙화생, 발포성 포도주, 오일케이크
수산물(8)	냉동황다랭이, 냉동가다랭이, 기타 냉동어류, 기타 건조한 어류, 냉동새우와 보리새우, 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통조림 다랭이
임산물(1)	합판
공산품(7)	원유, 석유제품, 티셔츠 등, 인조섬유제의 가디건 등, 남자용 자켓 등, 면제 남자용 셔츠, 인조섬유제의 남자용 셔츠

우리나라는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서는 또한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UNCTAD에서 정한 특혜관세 공여 관련 원산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을 원

3) HS 6단위 기준으로 2007년 1월 1일 현재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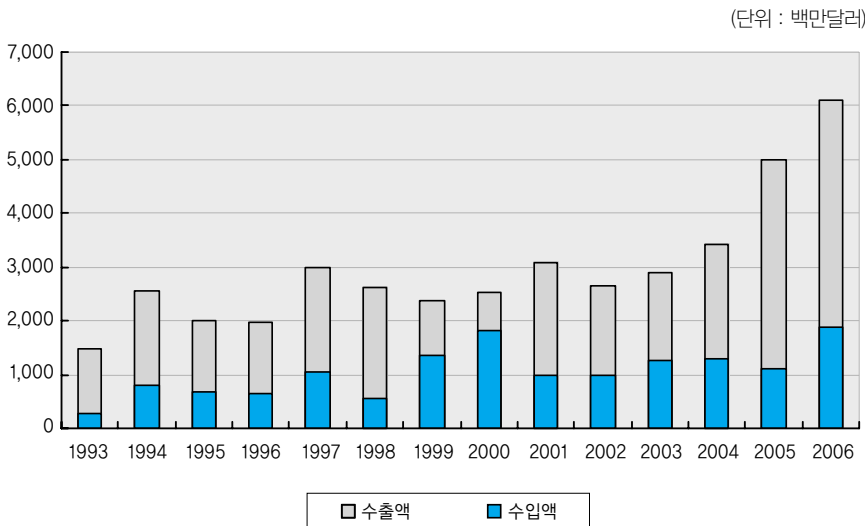
### 나. 전반적인 교역현황

2006년 우리나라와 최빈개도국과의 교역 규모는 약 80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에 약 61억달러를 수출하였고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약 19억달러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최빈개도국에 대해 4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을 통해 연평균 약 30억달러를 수출하고 약 10억달러 정도를 수입해서 평균 약 2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평균 수입액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2006년 우리나라와 최빈개도국과의 교역 규모는 약 80억달러로, 최빈개도국에 약 61억달러를 수출하였고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약 19억달러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최빈개도국에 대해 4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1] 최빈개도국과의 교역 규모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약 1.9%로, 최근 10여년간 1.8%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아시아 지역이다. 2004년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개도국에 약 49억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다. 근래 들어 아시아 지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액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0.61%이고, 최근 10여년간 평균도 약 0.66%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표 5〉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

(단위: 백만달러, %)

	총수출액 (A)	총계(B)	최빈개도국 수출액			비율 (B/A)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2000	172,268	2,520	1,186(47%)	1,334(53%)	12	1.47
2001	150,439	3,098	1,166(38%)	1,932(62%)	9	2.06
2002	162,471	2,657	993(37%)	1,664(62%)	16	1.65
2003	193,817	2,898	1,066(37%)	1,814(63%)	18	1.35
2004	253,845	3,420	1,137(33%)	2,261(66%)	22	1.50
2005	284,419	5,004	1,095(22%)	3,894(78%)	15	1.76
2006	325,465	6,104	1,198(20%)	4,892(80%)	14	1.88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0.61%이고, 최근 10여년간 평균도 약 0.66%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12억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져서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7억달러로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 비중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에는 예멘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멘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아시아 지역 국가의 수입 비중은 10% 미만이다.

〈표 6〉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단위: 백만달러, %)

	총수입액 (C)	총계(D)	최빈개도국 수입액		비율 (D/C)
			아시아	아프리카	
2000	160,481	1,828	682(37%)	1,147(63%)	1.14
2001	141,098	996	539(54%)	457(46%)	0.71
2002	152,126	989	537(54%)	451(46%)	0.65
2003	178,827	1,266	325(26%)	941(74%)	0.71
2004	224,463	1,300	341(26%)	959(74%)	0.58
2005	261,238	1,121	468(42%)	652(58%)	0.43
2006	309,383	1,880	717(38%)	1,163(62%)	0.61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지난 10여년간의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산유국인 예멘을 제외하면 수입 비중이 미미하듯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것도 원유 수입에 기인한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원유이다. 원유는 앙골라, 예멘, 수단, 미얀마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이 가장 많아 16.6억달러로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액의 약 91%를 차지하였다. 그 후 원유 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그 비중이 58.4%로 감소하였다. 원유는 수입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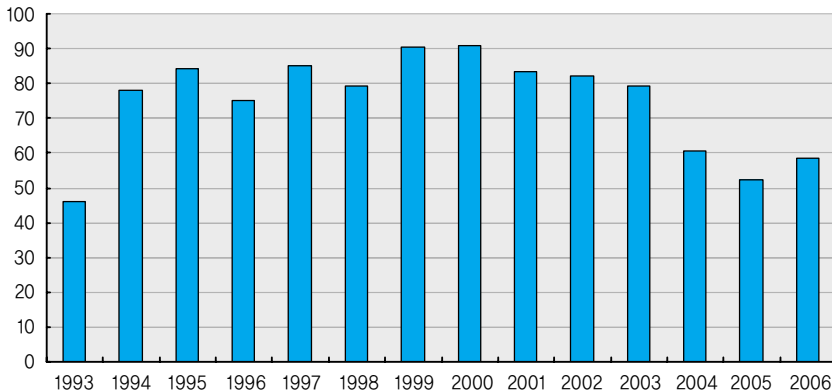
우리나라 총수입액 중 원유를 포함한 최빈개도국의 수입 비중은 지난 10여년간 평균적으로 약 0.66%이지만, 원유를 제외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0.15%에 불과하다. 원유를 제외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3년에 처음으로 2억달러를 넘어서서 2006년에는 약 8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원유를 제외한 수입액이 약 8억달러로 증가한 2006년에도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에 수출한 금액은 총 61억달러로 약 53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근래 들어 원유 수입이 가장 적었던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에 수출한 금액은 총 50억달러이고, 원유를 제외한 수입액은 약 5억달러로 약 4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 흑자 규모가 원유를 제외한 수입액의 약 9배에 달한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원유이다. 원유는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최빈개도국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최빈개도국 총수입액 중 원유수입액 비중

(단위: %)





우리나라는 EU를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최빈개도국과 상대적으로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 최빈개도국 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표 7〉 최빈개도국부터의 원유수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총수입액 (A)	총계(B)	원유(C)	최빈개도국 수입액		원유 포함 비중 (B/A)	원유 제외 비중 (D/A)
				그 외(D)	원유비중 (C/B)		
2000	160,481	1,828	1,660	168	90.8	1.14	0.10
2001	141,098	996	829	167	83.2	0.71	0.12
2002	152,126	989	811	178	82.0	0.65	0.12
2003	178,827	1,266	1,001	265	79.1	0.71	0.15
2004	224,463	1,300	787	513	60.5	0.58	0.23
2005	261,238	1,121	584	537	52.1	0.43	0.21
2006	309,383	1,880	1,097	783	58.4	0.61	0.33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 다. 주요국들과의 수출입 비교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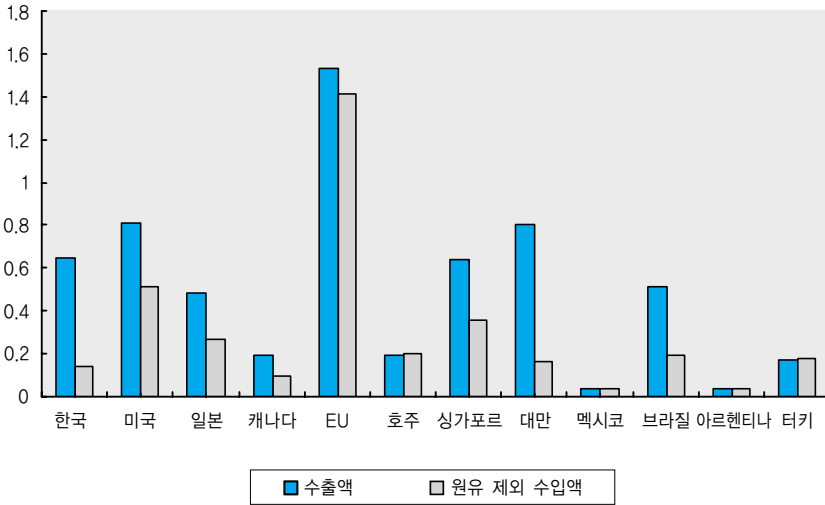
2002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입시장 점유율은 0.65%로, EU 1.53%, 미국과 대만 각각 0.81%와 0.80%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일본 0.48%, 호주 0.19%, 캐나다 0.19%, 멕시코 0.04%에 비해서는 높았다.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0.64%였다. 우리나라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입시장 점유율이 1.13%로 매우 높았던 1999년의 경우 미국은 0.66%, 일본은 0.33%, 대만과 싱가포르는 0.5% 내외였다.

그러나 원유를 제외하면, 최빈개도국 제품이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14%였지만, EU는 1.41%로 가장 높았고, 미국 0.51%, 일본 0.27%, 호주 0.20% 그리고 싱가포르 0.36%였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0.16%였고, 산유국인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0.0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EU를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최빈개도국과 상대적으로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수입시장에서 최빈개도국 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하지만 전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원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주요국들의 최빈개도국 수입 비중 비교

(단위: %)



미국, EU, 일본 등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EU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액 대비 1.4%로 가장 높고, 미국 0.9%, 우리나라 0.5% 그리고 일본 0.4%로,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EU, 일본 등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EU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액 대비 1.4%로 가장 높고, 미국 0.9%, 우리나라 0.5% 그리고 일본 0.4%로,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이다.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비중을 보면, EU가 3.3%로 가장 높다. 일본도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0.4%인 데 비해 농산물은 그 2배인 0.9%로 나타났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비중과 거의 유사하다. 비중이 높은 EU의 경우 산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식물성 생산품의 비중이 더 높았다.

공산품 비중은 전체 수입액 비중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공산품이 전체 수입액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입 비중을 보면, 목재와 목재제품(2.0%), 광물성 생산품(1.6%), 원피, 모피 및 가죽제품(1.3%)만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기타 품목에서의 수입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즉, 원유를 포함해서 목재, 원피 등의 원재료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U에서는 섬유 및 섬유제품(6.7%), 진주 및 귀금속(5.0%) 등이 두드러지게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진주, 광물성 생산품, 목재 등 원자재의 수입과 그리고 섬유, 가죽 등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최빈개도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섬유 및 섬유제품 5.6%, 광물성 생산품이



미국, 일본, EU 모두 유사하게 광물성 생산품 등 원자재의 수입과 그리고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최빈개도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3.4%였고, 그 나머지 품목은 비중이 미미했다. 일본은 신발, 모자, 인모가 3.5%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 EU 모두 유사하게 광물성 생산품 등 원자재의 수입과 그리고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최빈개도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8〉 주요국의 최빈개도국 수입 비중

(단위: %)

	미국	일본	EU	한국
농산물	0.8	0.9	3.3	0.4
01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8	1.3	5.9	0.3
02 식물성 생산품	2.0	1.0	2.7	0.8
03 동식물성유지 및 분해산물	0.2	0.2	2.3	0.0
04 조제식료품, 음료, 담배	0.2	0.3	2.2	0.2
공산품	0.9	0.3	1.2	0.5
05 광물성 생산품	3.4	0.8	1.6	1.6
06 화학공업/연관공업 생산품	0.2	0.0	0.2	0.0
07 플라스틱과 고무, 그 제품	0.2	0.0	0.1	0.0
08 원피, 모피, 가죽제품	0.1	0.5	1.6	1.3
09 목재와 목재제품	0.1	0.2	1.5	2.0
10 펄프, 종이	0.0	0.0	0.0	0.0
11 섬유 및 섬유제품	5.6	0.3	6.7	0.4
12 신발, 모자, 인모	0.6	3.5	1.1	0.2
13 석, 시멘트, 유리, 도자제품	0.0	0.0	0.2	0.0
14 진주, 귀금속	0.3	0.2	5.0	0.0
15 비금속과 제품	0.0	0.4	1.1	0.4
16 기계류, 전기기기, 부문품	0.0	0.0	0.0	0.0
17 차량, 항공기, 선박, 관련품	0.0	0.0	0.8	0.5
18 광학기기, 정밀/의료용기기	0.0	0.1	0.1	0.0
19 무기 총포, 그 부속품	0.0	0.0	0.0	0.0
20 잡품	0.0	0.0	0.1	0.0
21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0.4	0.9	0.1	0.1
전 체	0.9	0.4	1.4	0.5

주: 2003년 기준.

자료: WTO IBO.

### Ⅲ. 특혜관세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일반균형계산(CGЕ)모형을 이용하여 최빈개도국에 특혜관세를 확대 시행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한다<sup>4)</sup>. 품목 개방화는 4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

4)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결과는 정재호·이명현(2005) 참고.

였다. 우선 쌀 등을 포함한 곡물을 제외한 전체 품목을 무세화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1)를 설정하고, 이와 함께 공산품만을 무세화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2), 석유, 섬유, 농산물을 제외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3) 그리고 섬유와 농산물의 관세를 50% 감축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4) 등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다.

〈표 9〉 품목 개방화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전품목 무세
시나리오 2	공산품만 무세
시나리오 3	석유, 섬유, 농산물만 제외하고 나머지 무세
시나리오 4	석유 제외, 섬유, 농산물은 50% 감축, 나머지는 무세

주: 모든 시나리오에서 곡물(쌀 등)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하였음.

우선 최빈개도국에 대해서 전 품목(쌀 등 곡물은 제외)을 면세해 주는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할 때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면, 민간의 후생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0.62%, 아시아의 최빈국은 0.06%, 아프리카의 최빈국은 0.2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른 시나리오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시나리오 1)의 후생 증가율이 0.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석유를 무세화에서 제외하고 섬유와 농산물의 관세를 50% 낮추고 나머지 품목을 무세화하는 경우(시나리오 4)에 0.17%의 후생증가가 나타났다. 다른 한편, 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의 경우는 후생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정도이고 아주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세세수의 감소와 교역조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최빈국은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도 후생 증가율이 0.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게 미미하였다. 한편, 아프리카 최빈국은 아시아 최빈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후생 증가율을 보여서 전면 무세화(시나리오 1)의 경우 0.22%였고, 그 나머지 시나리오의 후생 증가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상의 후생측면에서의 효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통한 후생 증대는 우리나라, 아프리카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둘째, 농산물을 제외할 경우의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의 후생 증가율이 0.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통한 후생 증대는 우리나라, 아프리카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농산물을 제외할 경우의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다른 품목의 경우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미하거나  
무역대체 효과만이 나타나는  
반면, 비곡류 농산물에서  
상당한 무역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표 10〉 시나리오별 민간 후생변화

(단위: %)

품목시나리오	1	2	3	4
우리나라	0.62	-0.01	-0.00	0.17
최빈국(아시아)	0.06	0.03	0.01	0.02
최빈국(아프리카)	0.22	0.03	0.00	0.02

특혜관세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입총량 변화를 보면 비곡류 농산물 무세화가 이루어지는 전 품목 무세화(시나리오 1)에서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28%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밖에 해당 품목의 무세화가 있을 때 수입량이 1~2% 정도 증가하는 품목으로는 음식료품, 수산물, 섬유류 등이 있다. 그 외의 품목들은 수입 증감의 폭이 미세하게 변화하여 해당 품목의 무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수입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망되었다. 요컨대, 다른 품목의 경우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미하거나 무역대체 효과만이 나타나는 반면, 비곡류 농산물에서 상당한 무역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표 11〉 우리나라의 수입총량 변화

(단위: %)

품목시나리오	1	2	3	4
곡류	2.76	-0.01	0.00	0.35
비곡류 농산물	28.22	0.00	0.00	2.03
수산물	1.42	0.00	0.01	0.23
음식료품	1.30	-0.01	0.00	0.23
광산물	-0.12	0.04	0.00	-0.03
석유	0.39	0.27	0.00	0.00
섬유 및 가죽	1.40	0.97	0.00	0.50
목재, 종이, 인쇄	-0.10	0.00	0.00	0.01
화학	0.49	0.03	0.01	0.01
기타비금속제품	-0.22	0.00	0.01	-0.01
금속제품	-0.45	0.01	0.01	-0.10
전기 및 기계	-0.60	-0.01	0.00	-0.09
수송장비	-0.25	0.00	0.01	0.02
서비스1	-0.23	-0.01	0.00	0.12
서비스2	0.20	0.01	0.00	0.13

주: 색조로 표시한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제외 품목을 나타냄.

#### IV. 정책적 제안 및 결론

본고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제적으로 최빈개도국의 절대빈곤 문제는 1990년대부터 UN, WTO, OECD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논의되어 왔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EU, 일본, 미국 등은 특혜관세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WTO 회원국이며 또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2005년 12월에 개최된 WTO 제6차 각료회의 결과 선진국과 이에 동참하는 개도국은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출품에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비슷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에 약 61억달러를 수출하였고 약 19억달러를 수입하여 약 42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즉, 최빈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액수보다도 2배 이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무역수지 흑자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제외할 경우 그 수입액은 2006년에 약 8억달러에 불과하다. 8억달러도 가장 큰 액수로 2004년 이전 10여년간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최빈개도국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년간 평균 약 0.7%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원유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약 0.15% 수준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흐름, 최빈개도국의 경제적인 상황 및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일부 농산물 등을 제외하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DDA 협상중에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위치하여, 비농산물 협상에서는 선진국으로 농산물 협상에서는 개도국으로 전략적으로 그 지위를 양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확대는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혜관세를 공여할 품목 선정방식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이용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특

국제적인 흐름, 최빈개도국의 경제적인 상황 및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농산물 등을 제외하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에서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 여부만  
심사숙고한다면  
우리나라 수입에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혜관세 공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 국민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하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특히 농산물은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의 특혜를 주기보다는 무세가 아닌 낮은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면서 가급적 특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쟁력에 비추어 포지티브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범위와 특혜관세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모형을 통한 경제적 분석에서도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쌀을 포함한 곡류는 특혜품목에서 제외하였지만, 특혜가 공여되는 비곡류 농산물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산물,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율은 약 1% 수준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비곡류 농산물에서 상당한 무역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다른 품목의 경우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미미하거나 무역대체 효과만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품목의 무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수입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다른 공산품에 대해 무세의 특혜관세를 공여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입 총량 증가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에서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 여부만 심사숙고한다면 우리나라 수입에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적절하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산물과 섬유제품은 최빈개도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품목으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최빈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모형을 통한 경제분석에서도 최빈개도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혜부여 품목의 범위가 넓을수록 우리나라의 후생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최빈국의 입장에서도 농산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후생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번 특혜관세를 공여하면 이를 다시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할 수 있다고 해도

우선 그 대상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후 차차 그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특혜관세 확대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으로 관세법 제77조는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에 대해 이미 언급하고 있다. 관세법 77조에 의하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국가의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국의 소득수준, 해당 물품의 국제경쟁력 정도 등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척도를 통해서도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 조항만으로도 최빈개도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입을지 모르는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준을 통해서도 특혜관세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은 수량 증가 등으로 국내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양여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GATT 제19조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호조항이다. 그러나 특혜관세는 특혜공여국이 물품 및 국가 등을 선택할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9조 이외에 전년도 수입수량 등에 근거하여 주어진 수량 제한을 규정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쿼터 또는 수입액 고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는 수입물품 총액에 제한을 두어 일정연도 수입 총액의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특혜관세가 다음 연도에는 취소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 혹은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확대할 경우에 대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특혜관세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 기존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시화될 때 여러 가지 대안들과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더 발전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IPR**

특혜관세 확대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으로 관세법 제77조는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에 대해 이미 언급하고 있다. 관세법 조항만으로도 최빈개도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입을지 모르는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정재호 · 이명현,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정책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구원, 2005.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http://www.kita.net).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6,” *Developing Productive Capacities*, 2006.

\_\_\_\_\_,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2,” *Escaping the Poverty Trap*, 2002.

\_\_\_\_\_,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4,” *Linking International Trade with Poverty Reduction*, 2004.

\_\_\_\_\_, [www.unctad.org](http://www.unctad.org).

WTO,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 22 December,” 2005.

\_\_\_\_\_, [www.wto.org](http://www.wto.org)



# 정책연구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종석 · 홍범교
-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  
김승래
-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김완석 · 한상국 · 박 훈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현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류덕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희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장기적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의 1차연도 과제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경제학적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남성의 소득, 여성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여성임금의 증가, 여성의 혼인연령의 변화에 맞추어진다. 이미 가치관이나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은 것과 달리 자료의 부재문제나 경제학적 관심도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수행하지 못했던,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분석의제들을 설정하고 자료를 사용한 엄밀한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기존의 출산율에 대한 Becker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count 모형, survival analysis,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구조적 동

학모형 등 선행 실증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제Ⅳ장은 미시분석으로 자녀 수에 대한 count 모형과 결혼 및 출산간격에 대한 survival analysis로 구성되어 있다. 제Ⅴ장은 거시분석으로 거시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과 남성 및 여성의 소득, 임금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제Ⅵ장에서는 제Ⅳ장과 제Ⅴ장의 분석을 연계하여 각 설명변수들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마지막 Ⅷ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핵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2차연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은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명) 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후 약 10여 년간은 1.6~1.7명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변동을 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였고 2005년 1.08

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논의되는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발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출산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영아사망률 급감, 少 자녀 선호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현격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은 출산율을 더욱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하락해 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2.7명에서 2002년 1.6명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과 지연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회적 구조적 원인과 가정에서 여성의 성 역할(gender role)의 변화에 기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교육, 여성의 노동참여로 인한 소득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 변화, 그리고 가족형성패턴을 변화시키는 혼인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기타요인들이 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삼는 것으로는 가족과 성 역할(family and gender role)에 대한 여성의 태도 변화이다.

제Ⅲ장은 출산율 결정을 다루는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을 소개 및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연구의 근간은 Heckman & Willis(1975)의 생애효용모형과 Becker(1960, 1973, 1976)의 Quantity-Quality 모형, Easterlin(1968)의 세대 간 상대소득에 따른

출산율 결정이론으로 대표될 수 있다.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은 Becker(1960)와 Becker(1976)의 발전과정을 거쳐 출산율 결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근간이 된다. Becker(1960)는 Quantity-Quality 모형의 기본적인 틀을 처음 제시한 논문으로 자녀의 질적 수준의 초기 부존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자녀 수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크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명제를 도출한다. 반면 Becker(1973)는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Becker(1976)는 초기 부존자원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의 소득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결론이 사전적인 가정 없이 도출되도록 수정하였다. 출산율 결정이론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Easterlin(1968)은 Becker의 정태적인 아이디어와는 달리 가구나 개인의 선호의 시간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세대 간 소득의 차이나 세대별 인구수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출산율 결정요인을 찾고 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해져 임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높아져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아버지 세대의 소득에 대한 자신 세대의 잠재적 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출산도 많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노동시장의 진입도 용이하고 소득도 높아져 출산율 많이 하게 되면 약 20년 후의 자녀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소득도 낮아져 출산율이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출산결정에 대한 실증 문헌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

는 과정에 대한 것이 주된 연구영역이다. 첫째, 완결출산(completed fertility)결정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출산의 간격 및 출산시기 결정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정책(counterfactual policy)이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등이다.

제IV장에서는 기존의 출산율에 대한 Becker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출산력 자료와 여러 사회경제적 자료들을 사용하여 미시적인 수준에서 출산율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출산과 결혼간격에 대한 survival analysis를 통해서는 2003년 출산력 자료와 1979년 이후 매월노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첫 출산간격과 두 번째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간격에 관한 종전 연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여성임금 및 남성소득의 효과에 대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여성임금의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를 지연시키며 동시에 출산중단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남성의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으로 첫 자녀의 성별이 두 번째 자녀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출산지연보다는 출산중단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임금과 남성소득 외에 첫 자녀의 여아 여부, 남편과 부인의 형제·자매 수, 거주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 역시 출산간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5변형/213면/2006. 12/ 값 9,000원

다음으로 자녀 수를 결정하는 count 모형을 통해서 먼저, 가구소득이 출산자녀 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40세 혹은 45세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추정한 완결출산율 분석에서 나타난 것으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가 자녀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에 따를 경우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존자원의 수준이 가구소득에 크게 연동될수록 소득의 증가는 자녀 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계층 간 이동성이 작은 경우 가구소득이 높으면 이미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존자원이 큰 것이므로 자녀의 질적 수준보다는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데 가구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임금과 학력수준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 수 결정모형에서는 항상소득가설에 입각하여 계산한 부인의 임금수준을 구하기가 어려워 여성의 임금변수에 대한 대리변수로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을 이용하였다.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은 40세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

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자녀 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보다 출산하는 자녀가 더 적다는 것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허들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학력이 자녀출산 여부보다는 자녀 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40세 이상의 가입기가 거의 끝난 기혼여성그룹에서는 경제활동참여 여부가 자녀 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기혼여성이 직장을 가진 경우 출산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40대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고 현재 출산과정에 있으므로 취업자체가 출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기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속적인 취업으로 인해 자녀출산에 장애가 생긴다면 결국 가입기 전체에 걸쳐 자녀를 출산하는 빈도는 낮게 된다. 그 외 남아선호사상 혹은 첫째 자녀가 딸인 경우와 기타 가치관 변수가 자녀 수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제V장은 거시분석으로 거시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과 남성 및 여성의 소득, 임금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영아사망률 급감, 소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산에 대한 결정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 등은 '집단적인 성격(collective property)' 을 띠고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출산율과 여성노동시장 참여 양태, 즉 여성노동공급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

해서는 집계변수를 사용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출산율 결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 중 신가계경제학의 이론적 가설을 실증분석의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임금의 상승효과는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소득은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가 많은 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소득가설의 검증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 상대소득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가 젊은 계층에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VI장에서는 제IV장의 미시적 분석과 제V장의 거시적 분석을 연계하여 각 설명변수들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논점들로는 우선,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출산율의 양적인 감소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학력, 시장임금 및 경제활동참여율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 양(+)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배려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과 분석을 제공한다. 즉, 여성노동시장참여율 제고가 출산율 감소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에 기초하여 정부의 정책적 수단은 결국 중(장)기적 인적자본 층원의 보고인 여성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직장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어머니

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발 가능한 정책수단과 정책수단별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2차연도 과제로 남긴다.

마지막 VII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2차연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03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인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 그 특징과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세조약 남용이란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누리는 조약상의 혜택은 원천지국의 과세권 제한과 거주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약 남용이란 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거주지나 소득의 형태를 바꿔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A국과 B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C국 거주자가 A국에 명목상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 B국에 투자함으로써 A-B국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원천지인 B국에서 조약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A국이 조세피난처이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경우 A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이중적 비과세(double non-taxation)라고 하는데 이중적 비과세는 이중과세와 마찬가지로 투자 등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조약 남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과정이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직후 도입된 외국인자본이 투자자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이유로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드러난 거주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이중적 비과세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약 남용은 원천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조약 남용은 국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의 국민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며, 때로는 '국부 유출'로 표현되기도 한다. 반면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는 조약 남용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남용을 억제하여 소득발생지의 '국부 유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전제로 한 자본수입국 모형을 분석하여 이러한 통상적 인식의 진위여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조약 남용은 그 자체가 외국인투자자의 원천지 실효세부담을 인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인자본의 유입 및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납세자가 지불하는 조세회피 비용은 자본수입국의 국민에게 귀착된다. 이는 조약 남용 방지규정의 정비를 통해 조약 남용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조약 남용 방지제도를 정비하여 남용 비용을 증가시키면 원천지 실효세부담을 인상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조약 남용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조세회피 비용이 증가하면 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조세를 더 많이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약 남용 방지제도가 소득발생지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견해는 남용 방지제도의 정비를 통해 조약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투자의 감소와 원천지 국민에게 귀착되는 조세회피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과 제도의 정비가 남용을 부추켜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약 남용 방지제도의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조약 남용을 묵인하는 편이 낫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

B5변형/214면/2006. 12/  
값 9,000원



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본 분석은 원천지국의 경제적 효과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주지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조세조약 남용은 직접적으로 원천지 과세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도록 촉진하는 부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약 남용이 용이한 경우 투자자들은 국내투자보다는 국제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거주지 투자는 줄어들고 거주지국의 과세기반도 축소된다.

또한 국제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종종 국가경제적인 관점과 세계경제적인 관점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수입국은 조약 남용을 묵인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조약 남용은 궁극적으로 원천지와 거주지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중적 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중적 비과세는 이중과세와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의 왜곡

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가속시킨다.

그 외에도 경제분석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국제조세체계 및 국내 법질서의 안정성, 조약 남용이 조세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본 모형의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분석에 이어 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원천지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약 남용 방지정책이 원천지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약 남용 방지제도는 크게 국내법에 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과 조세조약에 남용 방지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법상의 규정은 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기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3항에서는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기본법 제14조와 동일한 내용인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조약규정과 충돌문제, 경제적 실질의 개념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을 포

함하고 있는바 명확성을 확보하여 실질과세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독일과 같이 혜택의 제한(LOB)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켜 남용의 가능성이 큰 납세자에게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특히 조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미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낮은 세율 적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가입한 비엔나 조약에 따르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제법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아직도 자본수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조약에서 발생하는 남용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OECD에서도 조약은 양 체약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개정보다는 합의에 의한 조약의 개정을 보다 나은 정책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선원천징수 원칙을 도입하더라도 많은 조세조약에 LOB 조항을 도입하여 그것이 보편적인 규정이 되었을 때 도입하는 것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내법 개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제도의 사전승인 조건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5 제2항의 1~8에 열거된 사전승인 요건 중 첫번째인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 법인'은 상장법인 등 다른 조건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6~7에 열거된

조건들이 매우 구체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LOB 조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자체 판단에 의해 조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조세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각 조항별 실질과세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OECD나 미국의 모델 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LOB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과 같은 신법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조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신미-일조약에서 보듯이 상대국에서 조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있을 시에는 우리나라가 조약 개정을 자동적으로 요청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의 각 조항별 실질과세원칙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약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LOB 조항의 경우 이미 국내법에서 다른 조건 없이 조약 적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성격을 밝혀 놓았으므로 조약에서는 그 내용들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단, 능동적 사업활동에 대한 규정과 투자회사에 대한 규정이 유연성이 부족하여 조약에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국내법은 조약 적용의 충분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조약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11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 정부지출 증대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반면 새로운 세원 확보와 세수증대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세·재정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 매년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세제개편의 범위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조세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특정 시점의 경제의 한 단면(snapshots)에만 치우친 주장과 논거는 진정한 세부담의 분포에 대한 잘못된(misleading)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정책의 효과가 일부 산업이나 특정 소득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복잡다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균형적 측면에서 조세의 귀착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서 조세개혁의 방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간소한 세제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향후 우리 경제

의 조세제도를 선진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및 재정정책이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에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다부문·다소득계층·다세대 생애주기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조세관련 정책 변화가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후생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보다 종합적인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그동안 자료 및 기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i) 생산자 및 소비자의 행태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기준경제의 모형 보정에 활용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한 점 (ii) 산업간 거래가 내생화된 다부문 경제모형의 구도하에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연간소득분위별 후생 변화의 측정에서 나아가 제한적이거나 생애소득분위별 후생변화를 측정한 점 (iii) 조세의 효과분석에 있어 원천측면(sources side)뿐만 아니라 사용측면(uses side)에서 야기되는 일반균형 효과를 포함한

접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생산기술 및 소비패턴의 내생화를 보다 일반화된 행태방정식의 추정을 통하여 모형구축에 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세계개편의 귀착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간소득기준의 계층분류에 의존하는 연간 세부담 귀착과 단일세대내의 형평성 평가에서 나아가 단기적·중장기적 후생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애소득기준의 평생 세부담 귀착과 세대간의 형평성 평가도 동시에 시도하였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중장기 조세개혁과 같이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각종 세부담의 동시적 변화가 사회의 각계각층에 미치는 전·후방전가 및 귀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조세관련 CGE모형들이 모형 구축과정에 있어 계량경제학적인 추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적절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부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은 기존 모형 대비 각종 가설이나 가정들을 완화하여 현실경제로의 모형 적합성을 높이고 실제 정책분석에의 적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소득기반 과세에서 소비기반 과세로의 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개편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의 동태적 귀착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자본소득(법인소득) 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의 세부담의 세수중립적 이동과 노동소득 과세의 소비과세로의 세수중립적 전환을 세대별 후생의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의 경우, 즉 자본소득 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부담의 세수중립적 이동은 현재세대(current generations) 중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젊은 층과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의 생애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세계개편의 동태효과는 소비수준 대비 신규 자산형성과 축적에 있어 유리한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보다 유리한 생애귀착효과를 가지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즉 노동소득 과세의 소비과세로의 세수중립적 전환도 비슷한 방향으로 작용하나 생애주기에 있어 중년층 이후 하락하는 노동생산성 추이 및 자본과세 대비 노동과세 완화의 열등한 동태적 효율개선 효과로 인하여 각 세대별 생애후생 증진효과가 자본소득 개편에 의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비중의 현재세대의 후생손실이 예상되어 재분배 측면에서 세대간 상충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인세 인하를 통한 자본소득 과세 10% 인하의 동태적 귀착효과(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수중립 유지)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에 있어 유의미한 동태적 효율개선(dynamic efficiency gains)을 가져오고 또한 세대간 재분배(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효과와 동시에 동일세대내의 계층별 재분배(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에서의 중장기 세계개혁은 경제의 전반적 효율 향상을 통하여 대다수 경제주체들의 생애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인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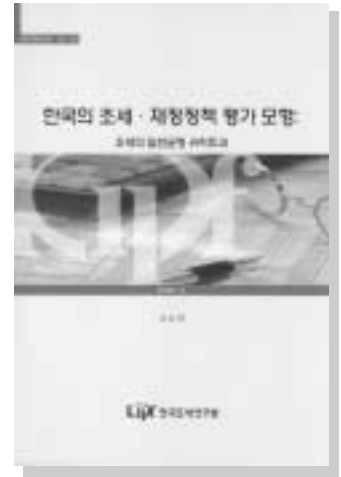
평가할 경우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단기귀착의 그것과는 달리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본과세가 아니라 노동과세의 세부담 인하를 통한 세제개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기적 균형에 이르는 동태적 조정과정에서의 세부담 변화의 전가가 노동요소 공급탄력성에 의존하는 효과가 미약하므로 이러한 방향의 세제개편이 동일세대내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세제개편의 평생소득 계층별 추가부담(자본과세 인하)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계층별 지니계수 변화, 자본과세 인하의 0.01~0.03% 대비 노동과세 인하는 0.01~0.06%).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세제개편의 방향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정책시나리오별로 생애후생의 변화에 미치는 조세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우선 세대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균제상태에서 안정화되기 이전의 이행단계(transition periods)에서 발생하는 세대별 생애후생 변화에 대한 급격한 차이는 조세시스템 전반의 '효율비용 변화'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에 따른 '세대간 재분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 우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종 세제개편 시나리오의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비교할 때 이러한 세대간의 조정 요인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제개편의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에 있어 이처럼 세대간의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재분배효과를 평가할 때 일관된



B5변형/181면/2006. 12/ 값 8,000원

분석틀 내에서 세대간 및 세대내 세부담 귀착효과를 동시에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소득포괄주의에 입각한 소득의 누진과세 정책은 연간소득기준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부담의 귀착을 안겨주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누진소득과세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별로 저축을 위한 소득인지 소비를 위한 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아 개인의 저축을 위한 소득에 더 많은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중국적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동태적 효율비용(dynamic efficiency cost)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와 같은 평률의 일반소비세제는 소득과세 대비 소비-저축간 중립적(saving-consumption neutral) 성격이 강하므로 적어도 생애기준의 세대간 형평성의 조정 측면 및 조세체계의 동태적 효율비용 축소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법인세 등 자본관련 소득세제

의 완화 정책은 자본소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연간소득(annual income)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비록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궁극적 귀착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정책이 가져오는 장단기 효과가 비교기준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은 정부의 세제개편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단기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증진 가능성도 감안하는 정책입안자의 기본적 시각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세의 장기귀착 효과가 단기귀착 효과와 유의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세제개편이 경제의 전반적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정도에 주로 의존하게 되므로, 이에 기준하여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법인세 경감에 따른 저축화될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 인하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계층별 노동의 한계생산성 상승을 유발하여 그 혜택이 결국 노동요소에도 충분히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요소공급이 비탄력적인 비교적 단기에 있어서는 여타 요소로의 세 부담 전가가 용이하지 않은 반면, 보다 장기적인 생애기준적 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 이러한 전가가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세제도의 중장기적 효율성 우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의 동태적 귀착효과(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수중립 유지)는 연간기준의 관점이 아니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 세 부담의 변화에 따른 세대간 재분배 효과와 동일세대내 계층별 재분배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법인세제와 같은 자본과세로부터 소비과세로 세원을 점차로 이동하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경제 전반의 동태적 효율향상을 통하여 대다수 경제주체의 생애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자본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 부담 이동의 방향은 노동과세의 인하를 통한 경우와 대비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애기준적 관점의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세제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적 효율성 향상 및 중장기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향후 조세개혁의 근본방향은 현행 법인세제 등 자본소득과세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제나 외부성 교정의 환경세제와 같은 소비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경제적 세 부담 구조를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16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김완석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한상국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 훈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 요약 및 정책시사점

세법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할 때 납세자가 재산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자의 조세와 관련된 규범이 되는 세법을 통일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 법령의 체계나 구성을 바꾸는 형식적 측면의 개편과 함께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세목 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용적 측면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약 86여개의 조문을 갖고 있는 국세기본법은 다양한 국세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쟁점들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조화를 국세기본법의 개편방향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는 금전적 부담이기는 하지만, 납세의무의 확정을 국민에게 맡기고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는 과세관청과 보다 대등한 관계가 부여되고 있다.

이렇듯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대등하게 보아야 하는 흐름을 인정한다면, 조세채권이 민사채권과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여러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37조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국세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국 본 보고서에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를 재검토하면서 국세기본법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개편방안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기일 중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바꾸어야 한다. 납세증명서 개선을 통해 담보권자가 담보물권 설정시 조세채권의 유무 및

액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둘째, 당해세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해세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셋째, 확정 전 압류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있더라도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개정이 된다면 납부기한)로 보고 그 이전 압류등기 또는 등록은 가압류 정도의 효력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를 개선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된 담보재산의 환가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중에서 그 재산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이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경우 징수순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한도액의 개선, 개별 세법상의 중복적인 규정의 삭제 등을 개편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축소,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B5변형/248면/2006. 12/ 값 10,000원

사업에 관한 국세 세목의 명료화와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여덟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납세의무, 실질소득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압류한 재산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열 번째,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열한 번째, 민법상 연대채무를 준용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탈피하여,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에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열두 번째,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 현재 혼용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세 번째, 연부연납제도로 인해서 상속·증여

세의 연대납세의무가 개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KIPF**

---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17 『국세기본법 개편  
방안』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조세정책 ·

### 중국, 이전가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조세관리 강화 차원에서 일선 세무기관에 탈세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지시

-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선정 · 조사 실시 · 결과 집행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 일상조사 외에 내부자 제보 · 시민 고발 등에 의한 특정사건 조사에 집중
- 중국 세무당국은 06년 납세자 86만명을 조사, 전년 대비 20% 증가한 386억위안을 추징하는 등 매년 조사강도를 강화

#### ① 중점 조사 업종

부동산업 · 건축업 · 요식업 · 금융보험업 · 석유화학업 · 식품의약품산업 · 농산품가공업 · 대형할인점 · 폐기물처리회수업 및 고소득 개인

#### ② 주요 조사 사항

- 세금계산서 · 수입부가가치세 증명서 · 화물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 공제 행위
- 이중장부 작성 등 장외경영 활동을 이용한 탈세 행위
- 허위 · 저가 수출신고, 수출관련 세금 환급 편취 등의 위법 활동

#### - 이전가격 조작 행위 (외자기업)

2년 이상 장기 손실기업, 동종기업 대비 저이윤기업, 수출 · 내수간 마진을 상이 기업, 손실 또는 저이윤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등 조작 의심 기업

→ 이전가격 조작 : 외국 진출기업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현지법인과 본사간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국정원 2007-06-04]

### 日, 서머타임제 조기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서머타임(일광시간절약)제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경제운용 방안에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일조 시간이 긴 여름철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내용을 명기했다. 또한 금융소득세 부과 때 예금이자와 주식양도손익 등을 합산해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경제재정 운영 및 구조개혁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자민당과 조율을 거쳐 오는 19일 공식 발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서머타임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및 관련 기술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되 수익에 따른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문회의는 국민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일체 과세제도' 검토도 제시했다.

[매일경제 2007-06-03]

## 유럽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참

유럽이 '법인세 인하 전쟁'에 돌입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지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타임스는 그동안 아일랜드와 동유럽 국가들의 감세에 대해 비난해 왔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이들 국가의 눈부신 성장에 압도돼 감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런던의 유럽지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에릭 닐슨은 "유럽이 이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며 "덩치가 큰 나라들도 이제 세금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줘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유럽의 잠재성장률이 2%에서 2.5%로 뛴 것이라고 예상했다.

## ■ 아일랜드 · 동유럽의 눈부신 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경제대국들의 성장률이 2%대에서 머문 것과 대조적으로 아일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법인세를 크게 낮춘 유럽의 변방국들은 5%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가 47%에 이르던 8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를 기록했지만 2년 뒤인 88년 법인세를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12.5%로 크게 낮춘 뒤 성장률이 급등했다. 아일랜드의 성장률은 89년 5.8%, 90년 8.5%, 97년에는 11.7%까지 치솟았고 2005년에는 5.5%를 기록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헝가리 4.2%, 슬로바키아 6.1% 등 법인세를 낮춘 국가들이 크게 오른 반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던 영국과 독일이 각각 1.9%, 0.9%, 프랑스는 1.2% 성장에 그쳤다. 유로권의 2005년 성장률은 1.4% 수준이었다.

아일랜드 등의 성장세는 법인세 인하로 촉발됐다. 88년 법인세 인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델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을 대거 아일랜드로 끌어 들였고 덕분에 지난 10년간 아일랜드는 유로회원국 성장률의 3배가 넘는 강한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프랑스 자동차 업체 푸조와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 지멘스는 법인 세율을 25%에서 19%로 낮춘 슬로바키아로 생산시설 일부를 옮기기도 했다.

## ■ 유럽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

아일랜드와 동유럽의 법인세 인하를 '세금 덩핑'이라며 비난하던 유럽 주요국들도 기업을 빼앗기면서 법인세 인하라는 기업유인책을 꺼내두고 있다.

영국이 지난 3월 30%에서 28%로 2%포인트 낮췄고 독일 하원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법인세율 감면안(39%에서 30%)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3년 전 재무장관 시절 유럽연합(EU) 역내 회원국이 법인세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하한선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현재 33% 수준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이상 내린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스페인도 35%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33% 수준인 이탈리아도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 ■ 법인세 인하, 잠재성장률 상승 촉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당근’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즉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한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가 고용 확대, 소비 증가 등으로 상쇄돼 정부재정을 도리어 튼튼히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닐슨 이코노미스트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이는 결국 유로권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더 높은 성장세로 접어들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유로권의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이른바 ‘제한속도(잠재성장률)’가 현재의 2% 수준에서 2.5%로 뛴 것이라고 예상했다.

KPMG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세 효과 분석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기존 기업을 그 나라에 붙잡아 두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고용 증가와 지출 증가가 새 재정수입원이 돼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재정감소분을 대부분 상쇄한다.

KPMG 런던의 세계 조세연구 책임자 로플린 히키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에 주는 공짜선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경제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2007-05-29]

### 유럽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이유

유럽에 법인세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는 동유럽을 거쳐 이제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을 위한 것으로 오랜 경기침체와 성장잠재력 약화의 탓에 걸린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 크다. 그동안 동유럽의 감세정책을 ‘세금 덤핑’이라고 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던 서유럽 국가들까지 입장을 바꿔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차기 총리 내정자와 대통령이 각각 세율을 2%포인트, 5% 이상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독일도 39%에서 30%로 낮추는 감세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세율인하를 추진하거나 검토중이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지나치게 세금을 깎아주는 동유럽 국가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감세정책에 비판적이었다.

이런 나라들이 앞다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감세정책을 실시한 나라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47%에 달하던 세율을 88년 12.5%로 낮춘 아일랜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일랜드는 마이너스였던 성장률이 세율 인하 이듬해에 5.8%로 돌아섰고 97년에는 11.7%까지 치솟는 등 최근 10년간 유로 회원국 평균 성장률의 세 배를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외국 기업들이 대거 몰려왔기 때문이다.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세율 인하는 일시적 세수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줄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는 고용과 소득 증가 및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가 활기를 띠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 있다. 우리 법인세율은 싱가포르·홍콩 등 경쟁국보다 높다.

그러나 감세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는 ‘대기업만 해

택을 본다'며 거의 알레르기예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경제회복과 꺼져가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도 감세정책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유럽 국가의 경쟁적 감세정책이 그 필요성을 말해준다.

[서울경제 2007-05-31]

## 獨 · 日 고급두뇌 해외 유출 비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등 경쟁을 벌이는 세계 각국이 이제는 해외 고급 두뇌 유치와 기술인력 대외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발 국가의 인재 스카우트 시도가 많아지자 주요 선진국마다 전문직과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제 · 사회적 기반시설과 시스템이 뒤떨어진 모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 독일 해외 이민자 15만명 넘어

인근 국가에 비해 전문가와 고급 인력이 많은 것으로 꼽혀온 독일과 일본은 인재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최근 독일연방통계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해외 이민자 수가 15만 5,290명을 기록해 1940년대 이후 60여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상당수는 생계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이주한 것이 아니어서 독일은 충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가운데 상당수가 과학자 의사 등 고급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독일인이 가장 많이 이주한 국가는 스위스(1만

8,000명)였고 미국(1만 3,245명)과 오스트리아(9,309명)가 뒤를 이었다.

독일 에센의 노동경제학자인 토마스 바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독일 세율이 너무 높고 임금수준은 낮은 데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질투심은 팽배해 있다”며 “유럽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독일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이 심화돼 고민중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일본 전자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이 회사 인재들이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지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력뿐 아니라 스스로 해외 구직에 나서는 일본 기술자도 늘고 있다. 해외 취업 전문업체인 파소나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등록한 일본인 수는 올해 3월 현재 4,930명이었다. 5년 전인 2002년 2,637명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다.

### ◆ 中 해외 유학생 70% 안 돌아와

중국은 돌아오지 않는 유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1일 공개한 ‘중국재능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 가운데 70%가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개혁 · 개방을 시작한 1978년 이후 해외 유학생은 모두 106만명에 달하지만 귀국한 학생은 27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 귀국하지 않은 유학생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받아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유학생 유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학생 출신 인재가 귀국하면 연봉, 복지, 주택, 자녀교육 등 항목별로 우대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 고급두뇌 15만~20만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 美·유럽 '아시아 배우기' 열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주목받는 아시아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이나 유럽 경제인들이 MBA 과정에 등록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국 대학의 아시아 소재 MBA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계발과 함께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인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대학과 싱가포르국립대학은 현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UCLA의 경영자 프로그램은 3월 현재 48%가 미국 학생일 정도다. 3년 전에 비하면 29%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시카고대학과 노스웨스턴, 프랑스 인시아드 등 최고 수준 대학이 아시아에 캠퍼스를 열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이런 유행을 불러온 이유다. 이런 명문 경영대학원은 강의의 질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를 아시아로 출장 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매일경제 2007-06-03]

中, 에너지 집중형 산업에 특혜 폐지 방침

중국 정부가 지방 자치성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 정책 폐지를 지시했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지방 정부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 정책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NDRC는 또 지방 정부가 앞으로 세금 감면 등 특혜 정책을 도입시 현존하는 법이나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낙후된 생산설비를 없애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사용 및 대출 규정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것으로, 중국은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20%, 환경오염은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과 철강, 정유, 화학, 전자재, 금속 등 6개 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중국 산업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지난해 에너지 소비는 1.23% 줄어 당국 목표 감소치인 4%에 못 미쳤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경제구조 전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2007-05-28]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 관세율 대대적 조정할 듯

- 1,000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시행 대상 철강제품에 잠정수출관세 부과
- 자원성 제품 수입관세 인하 또는 취소

■ 무역흑자 축소 위해 관세정책 및 증치세 환급률 조정

- 중국정부는 조만간 무역마찰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1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율을 조정할 계획임
- 기존 수출관세가 부과되던 금속,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관세율을 5% 또는 10% 추가인상하고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고 수출허가증 관리에 들어간 일부 열연롤, 비열연롤, 냉연판재, 열연 철근봉 등 총 83개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5% 또는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 이외에도 광산품, 염, 벤젠과 일부 석유화학기공 제품 등 자원성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 또는 취소하고 석탄수입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한 수입확대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 이들 조치는 빠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수출입조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됨

#### ■ 각종 조치 불구 4월에도 철강수출 급증, 추가 관세조치 불가피

- 중국정부는 관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고 주력 수출품인 선재와 이형철근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철강수출기업의 자격표준 제도를 강화해 수출기업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고려중임
- 광저우해관은 올해 1~4월간 광둥성 철강 수출량이 지난해 상반기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발표하고 올해 3월에도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538만톤으로 지난 12월 말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면서 더 강력한 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옴
- 중국은 2004년 이후 최근 4월 조정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철강관련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했으며, 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따른 수출억제효과가 미미하자 이번에는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함

[KOTRA, 경제무역정보 2007-05-18]

#### EU, 獨 재정적자 시정조치 5년 만에 해제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는 독일에 대한 재정적자 시정조치를 해제하도록 이사회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니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독일이 회원국의 재정규율을 정한 안정-성장협정(재정협정) 위반 사항을 확실하게 해소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5년 만에 풀도록 할 계획이다.

EU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온 독일이 시정 조치에서 벗어남으로써 단일통화 유로의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 달러와 엔화에 대한 강세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독일은 2002년 재정적자가 협정이 규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상한선을 넘어서자 유럽위원회가 2003년 이래 적자 감소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올해 말에는 EU의 제재금 부과 우려까지 낳았지만 높은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작년 적자폭이 GNP 대비 1.7%로 급감했다.

[뉴시스 2007-05-20]

#### 美 의회, 조만간 新환율법안 도입 예상

##### ■ 환율조작을 보조금으로 간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조만간 상정될 듯

- 미하원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Sander Levin(D-MI)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중국, 일본 환율 정책과 관련돼 개최된 청문회를 마친 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이후, 이와 같은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언
- 하원의원 Tim Ryan(D-OH)과 Duncan Hunter(R-CA)가 발의한 H.R.782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Levin 의원은 앞으로 도입



될 법안에서는 환율 문제를 포함한 중국과 관계된 다른 광범위한 교역 이슈들을 망라해 다룰 것으로 예견

■ 법안 내용 전망

- Levin 의원이 청문회에서 부시행정부가 4건의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부과 요청 케이스 (Section 42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미뤄보아, Section 421 조사 진행시 환율조작에 의한 미국 기업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Ryan, Hunter 의원은 올해 초 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미 재무부가 반기별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상 환율 조작국으로 판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 포함 가능성
- Levin 의원은 재무부가 “환율 조작이 반드시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 결과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의도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 회피라며 비판
- 이와 관련해 세입위원회 Charles Rangel(D-NY) 위원장은 작년 국회에서 이와 같은 미 재무부 의무규정을 제거함으로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
- USTR가 미통상법 301조(Section 301) 조사 진행시 환율조작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포함 가능
- USTR는 2004년 중국 위안화 정책에 대한 미통상법 301조 조사 요청을 거절
  - \* 미통상법 301조 : 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외국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 가능토록 하는 내용 포함 가능성

- 그러나 Levin 의원은 상기 내용은 H.R.1129와 같은 별도 법안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어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H.R.1129는 비시장경제 무역구제 법안 2007(Nonmarket Economy Trade Remedy Act of 2007)로 명명된 법안으로 현재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특정 국가의 비시장경제 졸업을 허가하는 행정부 결정을 의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

■ 시사점

- 민주당 의회 집권과 2008년 대선을 앞둔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
- 미상무부의 중국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단초가 돼 불거진 미-중 간 통상마찰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
-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상마찰이 비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제 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을 통해 마찰 쟁점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좁혀 나갈 것으로 기대
- 한편, 지속되는 달러 대비 원화 강세로 인해 한국은 이번 타깃 국가에서 제외됐으나, 상황이 역전될 경우 우리나라도 지목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

[KOTRA, 경제무역정보 2007-05-16]

## 재정정책 ·

## 美 주정부, 내년 재정지출 증가세 억제 계획

미국의 주정부들이 내년 재정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전미주지사협회(NGA)와 전미주예산운영협회(NASBO)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시작되는 2008회계연도에 미 주정부들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4.2%로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의 4.2% 증가는 전년도 8.6% 증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 둔화로 주정부의 세입 증가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2008회계연도에 적절한 세입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몇몇 주정부들은 이미 세입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며 “주정부의 재정운영자들은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ASBO의 스코트 패티슨 이사는 “주정부들이 내년 세입이 3% 증가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수개월이 지난 예산보고서에 의존한 수치이므로 향후 세입 전망이 과대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2007-06-06]

## 美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세의 기저에 깔려 있던 금리

인하의 기대가 물 건너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수 등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가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메릴린치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낮추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4일 FRB가 현재 5.25%인 연방 기금금리를 올해 말까지 4% 수준까지 인하할 것이라는 올해 초의 전망을 철회하고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는 수정 전망을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도 당초 9월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을 수정, FRB가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5일 내놓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는 것은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와 5일 나온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 외로 호조를 보이며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경제활동 현황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공급관리협회(ISM)의 5월 서비스업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인 59.7을 기록했다.

이는 4월의 56.0을 상회한 것이고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소폭 감소(예상 중간치 55.3) 전망도 뒤집은 것이다.

미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창출은 15만 7,000명을 기록,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15만명을 넘었고 ISM의 5월 제조업 지수도 55.0을 기록해 전달의 54.7을 상회하며 고용시장



과 제조업 활동이 확장세임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미 경제가 1/4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에서 벗어나 곧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파이낸셜뉴스 2007-06-07]

## 캐나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체결

### - GDP 규모 U\$7,000억 이상의 시장

#### ■ 캐나다 EFTA와 FTA 체결

-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6월 7일(캐나다 현지 시간)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FTA 체결을 발표
- EFTA는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1960년에 유럽 공동체(EC)에 대해 결성된 기구로 초기에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을 포함했으나 이들 국가들이 EC에 가입하면서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 회원으로 구성
- 이번 FTA 체결은 캐나다가 유럽지역국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2002년 코스타리카와의 FTA 체결 이후 6년 만에 체결된 협정임
- 캐나다-EFTA 간 FTA 협상 1998년 10월에 시작 - 그 후 2년간 수차례의 협상 회의를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2000년 캐나다 선박시장을 비롯한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 난항으로 교착상태로 접어들

- 그러나 진행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로 2006년 캐나다-EFTA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됐으며, 2007년 6월 협상을 마무리함

#### ■ 캐나다와 EFTA 간의 교역관계

- 캐나다와 EFTA 지역 간의 교역규모는 2006년 기준 107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2006년 캐나다는 수출 31억캐나다달러, 수입 76억캐나다달러 기록
- 투자규모의 경우 2005년 기준 누적합계 223억 캐나다달러 기록
- 캐나다의 대 EFTA 지역 투자는 74억캐나다달러, EFTA 지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148억캐나다달러에 이룸
- 한편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04년 기준 캐나다-스위스 간은 16억캐나다달러, 캐나다-노르웨이 간은 5억 7,300만캐나다달러를 기록
- EFTA 지역은 전체 회원국과의 교역 합계 캐나다의 8번째 수출시장이며 개별 국가별로는 노르웨이가 13위, 스위스가 19위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요 교역시장

#### ■ 캐나다의 EFTA와의 FTA 체결 기대효과

- 이번 캐나다-EFTA 간 체결은 양 지역간 관세 철폐에 주안점을 둔 '1세대' 협정으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캐나다는 EFTA와의 FTA 체결로 주요 수출 품목인 목재, 펄프, 종이류, 알루미늄, 화장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이 제품의 경쟁력 향상 기대
- 또한, 냉동식품, 음료, durum 밀, 캐놀라유, 꿀, 과일 및 채소 등 농업상품에 대한 EFTA 지역에서의 시장확대 기대
- 한편, EFTA 국가들의 자국내 농업상품 및 관련

식품 수출관련 정부보조를 제거함으로써 캐나다 내 농업부문의 상대적 경쟁력 향상

- 전반적으로 유럽지역 시장공략 확대를 위한 유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미 EFTA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칠레, 한국 및 EU 등과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

■ 시사점

- EFTA 지역은 1인당 GDP가 높고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에 개방적인 국가들로 구성돼 이번 캐나다-EFTA 간 FTA 체결로 양 지역간의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05년 기준 EFTA는 전 세계 기준 상품무역규모 10위, 서비스무역규모 5위의 주요 교역대상
  - 한편, EFTA 지역 합계 GDP 규모 역시 7,000억 달러 이상으로 인도 및 한국과 대등한 규모를 갖춘 거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 캐나다 정부는 이번 EFTA와의 FTA 체결이 2002년 이후 부진했던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
  - 특히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에 지속적인 관심 속에 콜롬비아, 페루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 협상을 새로 개시
- 캐나다의 EFTA 지역과의 FTA 체결 및 중남미 지역과의 지속적인 체결 시도로 NAFTA의 영향력과 더불어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의 캐나다 수입시장 입지 확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역시 이러한 캐나다의 FTA 체결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캐 FTA 체결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경쟁국들과 캐나다 수입시장 경쟁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미국 연방정부 누적적자 59조달러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가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면 59조 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29일 미 일간 USA투데이가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의 누적 재정적자 추정액 8조 8,000억달러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민이 짊어져야 할 누적적자는 가구당 51만 6,348달러(약 4억 8,000만원)로 추산됐다. 미 정부는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가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차량 대출금, 신용카드 등을 모두 포함해 11만 2,043달러 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면 지난해 재정적자액은 정부 발표치 2,480억달러의 5배가 넘는 1조 3,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를 가구당 적자규모로 환산하면 1만 1,434달러로, 지난해 가구당 소득세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면 이처럼 최악의 재정적자 기록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보장과 공무원·군인 퇴직 프로그램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미 정부는 이를 바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거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곧바로 계상하는 기업회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크리스 코콜라 전 하원의원(공화)은 “재정 상황은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분리 계상하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도 정부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예산국은 “사회보장 등의 프로그램 부담은 정부가 취소하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담이 아니다”라며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2007-05-31]



## 유로지역 1/4분기 경제성장 호조

- 유로지역의 금년 1/4분기 실질GDP성장률(속보치)은 전기 대비 0.6%로 전기(0.9%)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예상치(0.5%)를 상회하고 전년동기 대비로도 3.1%의 높은 성장세 기록(5/15)
- 이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지역의 기업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년 초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상 및 최근 유로지역의 전반적인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였기 때문
  - 국별로는 역대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금년 초의 부가세 인상에 따른 성장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전년동기 대비 3.6%(전기 대비 0.5%) 성장한 반면 프랑스는 전년동기 대비 2.0%(전기 대비 0.5%) 성장에 그침
- 전문가들은 유로지역의 1/4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EU집행위는 5월 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금년 중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2007. 2월) 2.4% → 2.6%로,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8% → 2.5% 및 2.2% → 2.4%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

[한국은행, 주간해외정보 2007-05-23]

## 인도 “이젠 금융강국으로” 뭄바이 개조 대역사

- 中 상하이 능가하는 금융 인프라 구축할 것
- 뭄바이市 옆에 23兆 투입 ‘나비 뭄바이’ 건설

인도 뭄바이 도심에서 30km 거리쯤 떨어진 아라비아해 연안. 이곳엔 여의도(2.95km<sup>2</sup>) 면적의 116배(344km<sup>2</sup>)인 세계 최대의 계획도시 ‘나비 뭄바이’가 들어서고 있다. ‘나비(navi)’는 ‘새롭다’는 뜻의 힌두어. ‘IT(정보기술) 인도’의 상징이 뱅갈루루라면 나비 뭄바이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을 꿈꾸는 뉴 인디아의 새 아이콘이다. 총공사비는 23조원 가량. 나비 뭄바이의 해변도로 팜 비치 로드 양쪽에는 완공된 건물보다 공사 중인 건물이 더 많다. 이곳의 부동산 컨설턴트 산지브(Sanjeev)씨는 “공사장이 3,000곳은 족히 넘는다”고 말했다. 수백 동(棟)의 20여층짜리 아파트 콘크리트 골조 옆으로 이미 빨강·노랑으로 치장한 대형 쇼핑몰인 갤러리아, 센터 원, D마트가 자리를 잡았다. 그 옆은 다시 각종 건축재를 쉴 새 없이 옮기는 노란색 초대형 크레인들의 숲…

2012년까지 국제 수준의 학교·병원·호텔만 2,000곳이 들어선다. 또 아라비아해 22.5km를 가로질러 뭄바이의 국제 금융 중심가 ‘나리만 포트’와 ‘나비 뭄바이’를 잇는 해상다리 공사 입찰이 시작됐다. 이게 완공되면 2시간 걸리던 나리만 포트~나비 뭄바이의 시간적 거리는 20분으로 준다. 물론 기존 뭄바이공항·항구보다 훨씬 큰 신공항과 레와스(Rewas)항만 공사도 진행중이다. 나비 뭄바이엔 개별 기업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규모(100km<sup>2</sup>)의 경제특구(SEZ)가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인도 재계 1위인 금융·에너지·통신그룹인 릴라이언스가 주도한다. 5년 뒤 20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나비 뭄바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것은 1970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힌두(Hindu) 스피드’에 걸려 진척을 못 봤다. 그러나 최근의 고속 성장세와 “뭄바이를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만모한 싱(Singh) 총리의 작년 초 발언 이후 힘을 받았다.

뭄바이와 상하이의 인구는 각각 1,800만명으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뭄바이는 면적이 상하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1km<sup>2</sup>당 인구밀도는 2만 9,000여명으로

상하이의 10배다. 뭍바이 일대엔 인도 재계 1~2위인 릴라이언스와 철강·자동차 부문의 타타그룹 등 주요 기업들의 본사와 인도 중앙은행이 있지만 사회 기반 시설 면에서도 상하이와 '아시아 경제의 허브(hub)' 다툼을 하기엔 벅겁다. 대안이 '나비 뭍바이'였다. 모두 800만명이 거주하게 될 이 곳 인구는 이미 110만 명을 넘었다.

뭍바이 시내에 있는 '나비 뭍바이 프로젝트'의 본산인 MIDC의 모토는 "생각의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 하자(Infrastructure@the speed of thinking)". 나비 뭍바이 시청의 집무실에서 만난 마니샤 보아(여) 시장은 "4,500여개 기업을 유치해 재정자립도가 100%이고, 하루 생활비 2달러 미만인 8억명을 넘는다"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빈민촌 없는 도시(no slum city)'를 만들 것"이라며 "국제 금융도시 뭍바이와 최고 인프라를 갖춘 나비 뭍바이가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상하이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05-21]

## 日 기업들, 삼각합병 허용에 과민반응

- 승인 장벽 높아 실현 어려울 것
- 외국기업, 日기업 M&A에 적극적이지 않아
-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

일본에서 5월부터 삼각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민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조언해 주는 일본 ISS(기관주주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래 400~500개 기업들이 독약처방(포이즌 필)을 도입했

거나 올해 내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다른 업체와 주식을 맞교환해서 방어벽을 쌓고 있기도 하다.

삼각합병이란 외국 기업이 일본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현금이 아닌 외국에 있는 모회사의 지분을 주고 일본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자본의 M&A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긴장해 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렉스 칼럼을 통해 "일본 기업들이 초조해 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칼럼은 먼저 이 달 시행되기 시작한 삼각합병 허용 법안이 우호적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각합병이 허용되더라도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하에서는 만약 인수하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 자회사가 있으면 피인수 되는 기업의 주주들에 대한 자본소득세가 유예될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은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유예가 없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삼각합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해 왔다.

이때 모기업의 자회사는 일본에 판매와 마케팅 등 사업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회사 시설과 직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칼럼은 자회사의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 자회사를 세워 직원을 두고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회사로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M&A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이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시장조사기관인 딜로직에 따르면 작년 일본 내 총 M&A 거래 규모 1,820



억달러 중 외국기업들이 거래한 것은 110억달러밖에 안 됐다.

칼럼은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굳게 인수전 밖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각합병 허용이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 기업의 기존 주주들은 삼각합병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 조금 안심해도 될 듯 하다고 칼럼은 전했다.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방어책으로 국내 다른 기업들과 M&A로 덩치를 키울 수 있고, 산업 내 통합이 야기되면서 기업들의 순익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2007-05-18]

## 독일 경제, 거침없는 질주...잘나가는 이유?

“지난해까지 교통체증처럼 마비됐던 독일 내 설비투자가 이제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용 에어 컴프레서 업체인 캐저컴프레서의 토머스 케저 사장 말이다. 그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서 “독일 내 수요가 절정을 향해 치달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레이저와 센서를 만드는 젠옵틱의 알렉산더 폰 비츠레벤 사장이든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강세로 제품가격이 30%나 간접적으로 올랐는데 판매가 전혀 줄지 않았다”며 “이보다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강한 기술력에 힘입어 ‘유럽 경제의 기관차’ 독일 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가히 50여년 만에 ‘라인강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지난해 2.7% 경제성장률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유로존(유로화 가입 13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유로존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미국(2.2%)이나 일본(2.3%)을 앞설 전망이다.

### ◆ 환율 강세 어떻게 이겨내나

독일 경제의 부활은 유로화 강세 행진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유로화는 지난해 달러화에 대해 11% 상승했다. 또 이달 초 한때 1유로는 1.368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독일 재계는 실적 호전이 가격보다는 품질과 기술력, 브랜드로 승부한 성과라는 점에서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강세를 견디기 힘들다며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환율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니콜라스 솅차크 골드만삭스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이 역사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강한 브랜드로 세계 경제를 공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츠레벤 젠옵틱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평판 TV 스크린 기술로 공략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거대 고릴라 국가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는 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보다는 독일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최근 4년 동안 세계 최고 수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일본과 교역 비중이 줄고 있는 것도 유로화

악재를 피해가는 요인이다. 뉴욕타임스는 “독일이 미국보다 러시아와 옛 소비에트연방 위성국가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보다 5배 많다”고 지적했다.

내수가 살아나는 것도 독일 경제의 내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내 투자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이는 최근 독일 경제 회복세가 더욱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환율과 미국 경제 동향을 비롯한 외부 충격에 예전만큼 민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 ◆ 살아나는 제조업

독일은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여지없이 과시하고 있다.

지멘스의 한 임원은 “제조업 기업 상당수 공장이 한계생산인 80~90%까지 가동하고 있다”며 “더 많이 팔고 싶으면 증설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자신감도 유례없이 강하다. 매달 독일 기업 7,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드는 경기체감지수인 ‘이포지수’는 4월 중 108.6을 기록하며 3월의 107.7을 웃돌았다.

이포 의장 한스 베르너 진은 “독일이 이례적으로 전 세계 투자 붐 혜택을 강하게 보고 있다”며 “독일 제조업 기업은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이 아주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실업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져 지난달 9.2%를 기록했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4월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14만명 감소한 396만 7,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08년에는 독일 실업자 수가 35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호전을 바탕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 재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독일 재무부는 2011년 세입이 세출을 초과해 발생하는 세수 흑자 규모가

1,792억유로(2,4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노동시장의 변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독일 경제가 새로운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독일 경제가 장기적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며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낙관했다.

[매일경제 2007-05-14]

#### 세계 허브도시 인재확보 경쟁

자본유치를 놓고 치열했던 세계 허브 도시 간 경쟁이 인재확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중동의 허브로 부상하는 두바이는 최고통치자가 100억달러 규모의 교육재단 설립 계획을 밝혀 인재투자과 양성이 제1 국가발전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 제1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중인 싱가포르와 홍콩도 외국 인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국적을 불문한 인재 확보 지원책을 발표해 주목을 끈다.

#### ◆ 모하메드, 인재양성에 거액 기부

두바이 최고통치자 겸 아랍에미리트(UAE) 총리·부통령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이 교육재단 설립에 100억달러(약 9조 3,000억원)를 기부한다고 19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요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셰이크 모하메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중동과 서방·아시아 선진국 사이에 큰 지식 차이가 있다며 이 교육



재단이 이런 차이를 되도록 빨리 좁히고 젊은 세대에 대한 리더십 교육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중동은 현재 일자리 1,500만개가 필요하고 우리 아랍 국가는 향후 20년간 새로운 일자리를 7,400만~8,500만개 창출해야 한다"며 "우리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목적을 (중동이) 깨닫게 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둔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재단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두바이를 서비스와 물류, 지식산업의 허브로 변모시키려는 정책을 펴왔다.

그가 약속한 기부금 100억달러는 세계 부호들이 기부한 액수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큰 규모다. 세계 최대 규모인 빌 게이츠재단 자산 규모는 300억 달러, 세계 제2위 부호 워런 버핏이 기부한 금액은 310억달러였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21일부터 이틀간 두바이 지도자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 등과 경제 협력을 위해 회담을 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8개국 인재 적극 유치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8일 홍콩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의 17~30세 대학생과 졸업생에게 6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싱가포르정부 관계자는 "젊은 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부터 신청을 받아 2,000명을 정원으로 실시하되 1차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정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싱가포르 생활을 체험해 본 다음 원한다면 졸업 후에도 싱가포르에

서 전문인력으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싱가포르의 세금 등 기업우대 조치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과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 홍콩, 외국인 이탈 방지책 부심

홍콩은 외국인 전문인력 이탈로 경쟁력에 비상에 걸렸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입경처(이민국)는 홍콩 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국적의 외국인이 지난해 7만 1,150명으로 2001년 10만 6,740명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홍콩에서 외국인 탈출이 △대기오염 악화 △생활비용 증가 △국제학교 부족 등 때문에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폴 입 홍콩대 교수는 "고급인력 이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홍콩도 싱가포르처럼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2007-05-20]



## | 정책 흐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 OECD, 경제전망 발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 자료는 2007년 6월 8일 재정경제부 소득세과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2010. 12. 31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의결('07. 4. 30)되고, 공포('07. 6. 1)되었음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시기('07. 9. 1)에 맞추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07. 6. 8~6. 28)

\* 지난 4. 30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6. 1 공포) 중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 입법예고('07. 5. 17~6. 6)하였으며,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중임

## <주요 내용>

### 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 분기별 21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납부기한 연장(최대 6개월) 이용자는 분기별 420만원 이내

\* 매월 불입하는 경우 월 최대 70만원(부금월액)까지 가능

- 공제계약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

출이 없을 것

- 공제부금 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2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할 것

### ②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공제금 수급 사유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정상적인 공제 사유\*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 간주해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운용요강에 규정
- \*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등

### ◎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①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 : 이자소득
- ②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소득 : 기타소득
- ③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 가산세(2%) 부과

### ③ 아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자산세 면제

-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4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 청장에게 제출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공제부금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4 적용시기 : '07. 9. 1(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관리·운영\*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07. 3 시행)
  -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	소기업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재원조성 : 공제부금, 출연금, 차입금, 수익금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자(1년 이상

사업 영위)

- 공제종류 : 폐업 또는 해산, 사망, 퇴임, 노령공제(10년 경과, 60세 이상)

**<2층 구조의 공제금 지급방식>**

공제금	폐업·사망·퇴임·노령공제
(1) 기본공제	납입부금원금 + 납입부금원금×급부율
(2) 부가공제	매년 공제금 지급액 총액 및 운용수입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지급시기 : 가입기간에 따라 공제금 차등 지급
  - 폐업공제 : 가입자의 폐업 또는 해산시
  - 사망공제 : 가입자의 사망시
  - 퇴임공제 : 법인대표 가입자의 질병·부상에 의해 퇴임시

**<참고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과세체계 (조특법 §86의3)**

- ◎ 공제부금 납입시 소득공제하되, 공제금 수령시 과세
  - 납입시 : 소득공제
  - 수령시 : 원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과세

**1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2 공제금 수령시 과세**

- 법령상 정한 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로 인한 공제금 수령시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

\* 14%(주민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 ③ 중도 해지한 경우

- 기타소득\*(세율 20%, 주민세 포함시 22%)으로 과세
- \*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5년 이내 중도해지한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이 자료는 2007년 6월 2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에서 발표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가 경유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금년 7. 1일 수송용 유류세율 일부 조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예정

###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주요 내용

-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07. 7월까지 연차적으로 100 : 85 : 50으로 조정
  - 경유의 법정 교통세율을 '05.7월 46원/ℓ, '06.7월 39원/ℓ, '07.7월 50원/ℓ 인상

### 〈 수송용 유류간 상대가격비 조정 내역 〉

	'05.3*	'05.7	'06.7	'07.7
상대가격 목표 (휘발유 : 경유 : LPG)	100:70:53	100:75:50	100:80:50	100:85:50

\*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의 상대가격비

- 에너지세제 개편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 인상분만큼 버스(경유)·택시(LPG)·화물차(경유)에 유가보조금 지급

\* 보조금 재원은 주행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되, 유류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 휘발유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경유·LPG 세율은 최근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보다 소폭 조정하거나 인하

### 〈금번 유류세율 조정내용〉

	'05.3*	'05.7	'06.7	'07.7
휘발유	744원/ℓ	좌동	좌동	변동없음
경유	497원/ℓ	559원/ℓ	528원/ℓ	35원/ℓ 인상
LPG 부탄	352원/kg	좌동	316원/kg	39원/ℓ 인하

\* 휘발유, 경유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행세 + 교육세

\* LPG부탄 유류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소비자가격은 부가세 변동 효과까지 감안

- 금번 수송용 유류간 세율조정 의미는,
  - ① 당초 예정대로 경유세율 인상시 최근 6개월('06. 11~'07. 4) 평균가격 기준으로 상대가격비가 100 : 87 : 52가 되어 목표에 벗어나는 점을 고려,
    - 당초 목표(100 : 85 : 50)에 맞도록 경유세율 인상폭을 예정보다 줄이고, LPG(부탄) 세율은 소폭 인하
  - \* 최근 6개월 가격 기준 상대가격비(휘발유, 경유, LPG)는 100 : 83 : 52
  - ② 버스, 화물차에 대하여 7. 1일 경유세율 인상

분만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연간 약 1,800억원)하는 한편,

- '06년 정기국회시 합의된 대로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인상(연간 약 3,000억원 소요)

\* '01·'02년 인상분 75%+'03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 100%

⇒ '01년 이후 인상분 100% ('07. 7. 1일부터 적용)

- 유가보조금 재원은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하되, 이로 인해 유류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 ⇒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물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01·'02년도 세율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인상되어 운송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③ 금년도 에너지세제 개편 결과 세수는 현행보다 1,800억원 감소

\*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100:85로 맞추기 위한 경우 교통세율 인상 효과 + 유가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휘발유, 경유 교통세율 인하 효과 : 교통세수 △500억원

\* LPG 특별소비세율 인하 효과 : 특소세수 △1,300억원

- 정부는 동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7.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유류세율 조정 관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보조금 지급 관련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의 경우 주행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6월 국회에서 주행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7. 1일부터 이행 가능

〈참고 1〉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결과

- 유종간 상대가격비 휘발유 100 : 경유 85 : LPG 50

(1) 휘발유(유류세 744.3원/ℓ ⇒ 744.9원/ℓ)

\* 소비자가격 불변 : 1,434원/ℓ ('06. 11~'07. 4월 평균)

교통세	526원	교통세	505원(△21원)
교육세(15%)	78.90원	교육세(15%)	75.75원(△3.15원)
주행세(26.5%)	139.39원	주행세(32.5%)	164.125원(+24.735원)

(2) 경유(유류세 497원/ℓ ⇒ 528원/ℓ)

\* 소비자가격 1,184원/ℓ → 1,219원/ℓ ('06. 11~'07. 4월 평균)

교통세	351원	교통세	395원	교통세	358원
교육세(15%)	52.65원	교육세(15%)	59.25원	교육세(15%)	53.7원
주행세(26.5%)	93.02원	주행세(26.5%)	104.7원	주행세(32.5%)	116.35원

[현행]                      [당초 예정]                      [조정]

(3) LPG(유류세 352원/kg ⇒ 316원/kg)

\* 소비자가격 1,265원/kg → 1,226원/kg ('06. 11~'07. 4월 평균)

특별소비세	306원	특별소비세	275원 (△31원)
교육세(15%)	45.9원	교육세(15%)	41.25원(△4.65원)

- 유가보조금(버스·택시·화물차) : '01년 이후 유류세금 인상분 100% 보조

• 휘발유·경유 주행세 인상으로 조달(교통세 ×26.5% → 32.5%)

〈참고 2〉 OECD 국가들의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 ⇒ 100 : 88 : 47

Country	휘발유(A)	경유(B)	LPG(C)	단위	비율	
					(B/A)	(C/A)
Australia	1.34	1.429	0.589	AUD	106.6	44.0
Switzerland	1.687	1.747	-	SFranc	103.6	-
United Kingdom	0.952	0.979	-	Pound	102.8	-
Greece	0.918	0.913	-	EURO	99.5	-
Slovakia	41.09	40.81	22.32	Scrown	99.3	54.3
Ireland	1.125	1.105	-	EURO	98.2	-
Czech Republic	30.64	29.77	15.27	CCrown	97.2	49.8
Canada	1.058	1.013	-	CD	95.7	-
Sweden	12.055	11.456	-	SWcrown	95.0	-
Hungary	306.26	288.04	-	HFrint	94.1	-
Poland	4.143	3.881	1.933	Zloty	93.7	46.7
United States	0.818	0.751	-	USD	91.8	-
Austria	1.168	1.049	0.589	EURO	89.8	50.4
Spain	1.111	0.991	0.61	EURO	89.2	54.9
Norway	11.813	10.35	-	Ncrown	87.6	-
Italy	1.378	1.206	0.652	EURO	87.5	47.3
France	1.323	1.119	0.718	EURO	84.6	54.3
Germany	1.35	1.137	0.57	EURO	84.2	42.2
Denmark	10.089	8.419	-	Dcrown	83.4	-
Luxembourg	1.139	0.949	0.458	EURO	83.3	40.2
Japan	134.3	111.4	74.9	Yen	82.9	55.8
Korea	1531.61	1239.51	712.18	Won	80.9	46.5
Portugal	1.324	1.065	0.593	EURO	80.4	44.8
Turkey	2.834	2.244	-	Lira	79.2	-
Belgium	1.412	1.111	0.417	EURO	78.7	29.5
Finland	1.341	1.036	-	EURO	77.3	-
Netherlands	1.475	1.109	0.554	EURO	75.2	37.6
New Zealand	1.461	1.061	-	N\$	72.6	-
Mexico	7.7214	5.3782	-	Peso	69.7	-
평균					88.4	46.6

\*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2006 2Q~3Q)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 자료는 2007년 5월 31일 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시행됨

-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동 협정의 국내 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 등 5개 국임

\*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중이며, 국가별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

\* 태국은 국내 문제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한·태국간 양자협의를 개시하여 협상이 진행중임

-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키피(2%)·타이어(8%)·텔레비전(8%) 등 7,99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

- 참치(20%)·미역(20%)·필터담배(40%)·원유(5%)·인형(8%) 등 3,568개 품목은 2008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되고,
- 감자(27%)·과일주스(50%)·유아용의류(13%)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됨
- 한편,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의 경우 바나나(30%) 및 파인애플(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망고(30%)·두리안

(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됨(예: 30% → 24%)

\*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민어·조기·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

- 또한,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 물품도 6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군(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배치된 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품목의 약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

\*\* 한·아세안 FTA 발효로 실질 GDP 0.63%, 후생수준 24억 6천4백만달러, 對세계무역수지는 8천4백만달러 증가효과 추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그 밖에,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협정발효 후 아세안 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관세조치 근거 마련(관세인하 중지 또는 관세율 인상)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및 상공회의소) 및 발급절차 규정,
-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 조사절차(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규정
-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조사절차 규정,
- 한·아세안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 마련 등임

〈참고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아세안 회원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를 마련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철폐 및 인하비율 등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정함
  - 관세철폐·인하대상 품목 : 12,940개(총품목 수의 99.2%)
    - 관세철폐: 12,063개(92.5%)
      - 협정발효 즉시 철폐: 7,991개(61.2%)
      - 2008년 철폐: 3,568개(27.3%)
      - 2010년 철폐: 504개(3.9%)
    - 관세인하: 877개(6.7%)
      - 2012년 20% 감축: 571개(4.4%)
      - 2016년 관세율을 50% 이하로 인하: 6개(0.0%)
      - 2016년 20% 감축: 250개(1.9%)
      - 2016년 50% 감축: 36개(0.3%)
      - 저율관세물량(TRQ): 14개(0.1%)
  - 양허제외: 108개(쇠고기·돼지고기·쌀·바나나·파인애플 등)

〈표1〉 對아세안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표의 구조

(단위: 개, %)

구분	관세인하단계	품목 수(A)	비율(A/총품목 수)
일반 품목	발효즉시 철폐	7,991	61.5
	2008년 철폐	3,568	27.3
	2010년 철폐	504	3.9
	(소계)	(12,063)	(92.5)
민감 품목	2012년 20% 감축	571	4.4
	2016년 50% 이하로 인하	6	-
	2016년 20% 감축	250	1.9
	2016년 50% 감축	36	0.3
	저율관세물량(TRQ)	14	0.1
	(소계)	(877)	(6.7)
양허제외		108	0.8
총 계		13,048	100.0

〈표 2〉 양허유형별 관세철폐 및 관세인하 주요 품목

양허유형	주요 품목
일반 품목 군	<b>즉시 철폐 (7,991개)</b> <b>(농수산물)</b> 닭(9), 미꾸라지(10), 메기(10), 송어(10), 연어(10), 당근(27), <b>생커피(2)</b> , 아스파라거스(27), 딸기주스(50), 채소주스(30), 마요네즈(8), 도토리분(8), 소주(30) <b>(비농산물)</b> 모래(3), 화강암(8), 이산화질소(5.5), 립스틱(8), <b>타이어(8)</b> , 인조모피(8), 세탁기(8), 진공청소기(8), <b>텔레비전(8)</b> , 모터사이클(8), 안경렌즈(8), 손목시계(8)
	<b>2008년 철폐 (3,568개)</b> <b>(농수산물)</b> 오리(18), <b>참치(20)</b> , <b>미역(20)</b> , 마아가린(8), 비스킷(8), 청주(15), <b>필터담배(40)</b> <b>(비농산물)</b> 원유(3), 제초제(6.5), 승용차용 타이어(8), 밉크의류(16), 금(3), 라디오(8), 면도기(8), 승합차(10), 승용차(8), 화물차(10), 광학렌즈(8), 의료용기기(8), <b>인형(8)</b>
	<b>2010년 철폐 (504개)</b> <b>(농수산물)</b> 젓소(40), 돼지(18), 낙지(20), 어육(10), <b>감자(27)</b> , <b>레몬주스(50)</b> , 인삼음료(20), 로얄제리(8), 포도주(15), 곶감(30), 위스키(20) <b>(비농산물)</b> 스웨터(13), 남성바지(13), <b>유아용의류(13)</b>
일반 민감 품목	<b>2012년 20% 감축 (571개)</b> <b>(농수산물)</b> 가자미(20), 대구(20), 바지락(20), 유장분말(49.5) <b>(비농산물)</b> 자동차회발유(5), 염화에틸렌(5.5), 부탄올(5), 칼라사진현상제(6.5), 제재목(5), 여자코트(13), 남자양모슈트(13), 스카프(8)
	<b>2016년 50% 이하로 인하 (6개)</b> <b>(농수산물)</b> 새우(50), 신선한 치즈(36), <b>오렌지(50)</b> , 사과(45), 배(45)
	<b>2016년 20% 감축 (250개)</b> <b>(농수산물)</b> 오징어(10), 밀크크림(36), 녹각(20), <b>망고(30)</b> , <b>두리안(45)</b> , 마른김(20), 조제분유(36), 마늘(30), 양파(30), 발효주정(270), 보조사료(50.6) <b>(비농산물)</b> 마루판(8), 섬유판(8), 합판(8)
	<b>2016년 50% 감축 (36개)</b> <b>(농수산물)</b> 맥주맥(513), 팝콘(630), 보릿가루(260), 생강(30), 들기름(36), 맥주(30), 전분글루(201.2)
	<b>관세할당 (147개)</b> <b>(농수산물)</b> 냉동새우살(20), 종자용 강낭콩(27), 매니옥(887.4), 매니옥전분(455)
	<b>양허제외 (108개)</b> <b>(농수산물)</b> 쇠고기(40), 삼겹살(22.5), 닭고기(18), 복어(10), 송어(10), 민어(36), 조기(10), 넙치(20), 볼락(10), 고추류(270), <b>바나나(40)</b> , <b>파인애플(30)</b> , 쌀(5), 쌀가루(5), 밀크·크림·유장의 조제식료품(36) <b>(비농산물)</b> 목질재섬유판(8)

주: ( )는 일반실행세율(2007년 기준)

〈표 3〉 저율관세물량(TRQ) 대상품목과 적용세율

대상품목	TRQ	In-Quota세율*	Out-Quota세율**
강낭콩	2,000톤	0%	MFN세율
매니옥	25,000톤	20%	MFN세율
매니옥전분	9,600톤	9%	MFN세율
냉동새우살	5,000톤	0%	MFN세율
냉동갑오징어	2,000톤	0%	10% (2016이후 8%)
새우와 보리새우 (혼제 제외)	300톤	0%	20%(2016이후 16%)

\* In-quota 세율은 연간 할당물량 이내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 Out-quota 세율은 연간 할당물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 2. 아세안 회원국산 수입증가에 따른 긴급 관세조치 절차 마련

- 아세안 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심각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내산업의 피해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인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반세율(MFN세율) 수준으로 관세율 인상

-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재심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 가능(최대 4년간 조치가능)
- 긴급관세조치는 관세가 철폐된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까지만 발동 가능

〈표 4〉 FTA별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한·아세안
대상물품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물품	양허물품	양허물품
피해조사관련조항	조사규정 없음	WTO세이프가드 제3조, 제4조 제2항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 절차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 절차
조치내용	관세인하정지/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관세율 인상
적용기간	제한 없음	2년+2년(4년)	1년+ 2년(3년)	3년+1년(4년)
재발동제한기간	없음	없음	3년	없음
잠정조치기간	120일	200일	200일	200일
존속기간	없음	없음	없음	관세철폐 후 7년

###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지정 및 발급절차 보완

-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각 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지정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하되, 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에서만 발급토록 규정
  - 상공회의소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청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세관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증명서 발급시 현지확인대상\*\*을 명확히 하여 우회수출을 차단

\* 서면심사: 신청일부터 7일, 현지확인: 신청일부터 14일

\*\* 생산시설이 없는 자, 해당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자 또는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후 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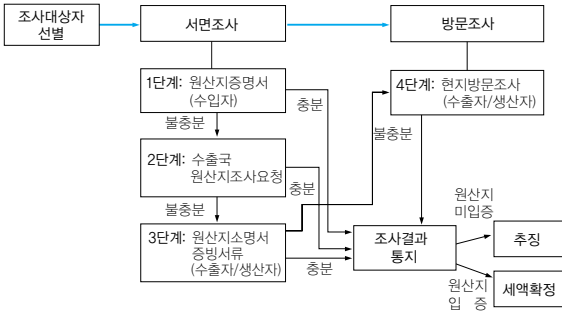
〈표 5〉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계약당사국	증명서 발급기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왕국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라오스 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연방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공화국	필리핀 세관
싱가포르공화국	싱가포르 세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베트남 통상부
대한민국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단,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에 한함

### 4. 아세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절차 마련

-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
  - 아세안 회원국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고
  - 그 조사결과가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아세안 회원국에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한 경우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와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하여,
  -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였음

[그림 1]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검증절차



## 5. 對아세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

- 관세청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증명서류 사본을 요청국의 관세당국에 통보
- \*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

〈표 6〉 조사결과 통보서의 주요 기재사항

- ①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자
-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 ③ 조사대상 수출물품
- ④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이유 및 적용법조)
- ⑤ 조사의 법적 근거
- ⑥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 ⑦ 그 밖에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 6.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규정

-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및 우회수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을 시행규칙(별표 3)에 규정

-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전부 생산(예: 농산물, 광물 등)되거나 생산과정에서 4단위의 세번변경\*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

\* 가공과정에서 수입원료와 제품의 稅番(품목번호)이 4단위 이상 달라질 경우 원산지 인정  
(예: 원유(2709)를 수입하여 가솔린(2710)을 생산하면 4단위의 세번이 변경)

\*\* 제품가격(FOB기준) 중에서 비원산지재료비(수입재료비)를 제외한 가액의 비율을 기초로 부가가치 계산

• 부가가치율=[제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제품가격

- 그러나 기초 농수산물, 섬유, 자동차 등 2,400여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

\* 예: 김치의 경우 60% 이상, 자동차의 경우 4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인정

- 개성공단 생산제품 등 역외가공품의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인정기준\* 및 대상품목\*\*을 규정

\* 해당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의 가격이 60%를 초과할 것

\*\* 역외가공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특례가 인정되는 품목은 아세안 각 회원국별로 의류·신발·시계 및 전자부품 등 100여개(HS 6단위 기준)이며, 국가별로 그 대상품목이 상이

〈표 7〉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예시)

품목번호	품명	원산지인정요건
제2류	쇠고기	완전생산요건
제3류	수산물	완전생산요건
1212.20	김	완전생산요건
1904.90	찜쌀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 이상
2005.99	김치	부가가치 60% 이상
2103.90	된장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 이상
2106.90	인삼차	부가가치 40% 이상(다만, 역내산 인삼을 사용한 것에 한함)
2208.90	소주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2402.20	필터담배	4단위세번변경(다만, 제2403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원산지재료가격이 제품가격의 60% 이하이어야 할 것)
4202.21	가족핸드백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6203.42	청바지	2단위+재단+봉제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6401.10	신발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8418.10	냉장고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8450.11	세탁기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8517.12	휴대폰	6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8529.90	칼라 TV	6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8542.32	반도체메모리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8603.10	철도객차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8703.22	승용차	부가가치 45% 이상
9004.90	안경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9006.51	카메라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 주) 2007 HS 코드 기준

〈표 8〉 역외가공 원산지특례인정 대상품목(개성공단)

국가	대상 품목
브루나이	혁제가방(42류), 의류(61~63류)
캄보디아	폴리아세탈수지, 플라스틱병, 의류, 신발, 연료펌프, 안경유리
인도네시아	폴리아세탈수지, 실리콘수지, 혁제가방, 혁제의류, 린넨, 커튼, 안경유리, 귀석·반귀석제품, 연료펌프, 공기여과기, 유류여과기, 정수기, 시계, 완구
라오스	폴리아세탈수지, 실리콘수지, 혁제가방, 혁제의류, 양말, 스키부츠,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연료펌프, 유류여과기, 정수기, 전자부품, 시계, 완구
말레이시아	혁제가방, 양말, 편물제의류, 신발, 안경유리, 정수기, 전자부품, 자동차부품(머플러, 에어백 등), 시계
미얀마	폴리아세탈수지, 실리콘수지, 플라스틱병, 혁제가방, 스키슈트, 장갑, 신발, 안경유리, 연료펌프, 정수기, 유류여과기, 공기여과기, 전자부품, 자동차부품(머플러, 에어백 등), 시계
필리핀	혁제의류, 의류(61~63류), 스키부츠,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스키드체인, 음료여과기, 시계
싱가포르	혁제의류, 의류(61~63류), 신발,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스키드체인, 음료여과기, 시계, 완구
베트남	혁제가방, 의류일부, 린넨, 커튼, 신발,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시계, 완구

〈참고 2〉 한·아세안 FTA의 발효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의 거대 시장
  - 중국, EU, 미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이며,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총교역의 10% 이상 차지
  - 그간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아세안 시장은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
-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군(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배치된 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품목의 약 90%에 해당

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

-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
- 특히, 섬유·직물,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기타 수송기기, 철강·금속제품 등의 수출 증가 전망

- 아세안과의 FTA 체결로 실질 GDP 0.63%, 후생수준 24억 6천4백만달러, 對세계무역수지는 8천4백만달러 증가효과 추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한-EFTA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전망

〈표 9〉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10대 수출입 품목(2005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5,242	19.1	반도체	5,921	22.7
2	석유제품	3,473	12.7	천연가스	4,080	15.7
3	무선통신기기	1,647	6.0	원유	3,460	13.3
4	철강판	1,391	5.1	컴퓨터	1,421	5.5
5	자동차	1,226	4.5	석탄	743	2.9
6	합성수지	983	3.6	석유제품	646	2.5
7	컴퓨터	972	3.5	유선통신기기	306	1.2
8	선박해양구조물	794	2.9	동광	506	1.9
9	편직물	552	2.0	정밀화학원료	228	0.9
10	영상기기	339	1.2	제지원료	334	1.3

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MTI 3단위 기준.

〈표 10〉 아세안 회원국별 수출입 현황(2006년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수입		수출		수출입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세안 전체	26,415	100.0	27,819	100.0	54,234	100.0
싱가포르	5,887	22.3	9,489	34.1	15,376	28.4
인도네시아	8,849	33.5	4,874	17.5	13,723	25.3
말레이시아	7,242	27.4	5,227	18.8	12,469	23.0
필리핀	2,187	8.3	3,931	14.1	6,118	11.3
베트남	925	3.5	3,927	14.1	4,852	8.9
브루나이	1,206	4.6	22	0.1	1,228	2.3
미얀마	96	0.4	121	0.4	217	0.4
캄보디아	5	0.02	205	0.7	210	0.4
라오스	18	0.1	23	0.1	41	0.1

주: 아세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참고 3〉 문답자료

#### ① 6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국가?

- 아세안 회원국 중 6월 1일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국내 절차 완료료를 통보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2007년 5월 29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국내 절차 완료료를 통보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임
  -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아직 국내 이행 절차가 진행중이며, 자국의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발효될 예정임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물품도 우리나라에 국내 절차 완료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서만 6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② 태국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태국은 국내의 정치적인 사정을 이유로 작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태국과 상품무역에 관한 양자협상을 개시하였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태국과의 상품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③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

- 한·싱가포르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비교하여 수입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예컨대, 필터담배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40%의 고관세가 적용되지만, 한·아세안 협정세율의 경우 2007년에는 13%, 2008년 이후에는 0%가 각각 적용됨

### 〈한·싱 FTA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비교〉

품명	품목번호	한·싱 FTA	한·아세안 FTA
필터담배	2402.20.1000	양허제외 40% 기본관세 적용	2007 13% 2008 이후 0%
항공기용 기관오일	2710.19.7110	2007 4.7% 2008 3.5% 2009 2.9% 2010 1.2% 2011 이후 0%	2007 이후 0%
전기오븐	8516.60.1000	2007 5.3% 2008 4.0% 2009 2.7% 2010 1.3% 2011 이후 0%	2007 이후 0%
전기다리미	8516.40.0000	2007 5.3% 2008 4.0% 2009 2.7% 2010 1.3% 2011 후 0%	2007 5% 2008 이후 0%

## ④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

-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가 필요
  -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선적 완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산지 확인을 거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 부터 1년 이내에 사후발급 신청이 가능함

# OECD, 경제전망 발표

이 자료는 2007년 5월 24일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OECD, 경제전망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OECD가 5.24(목) 11:00(서울시간 18:00)에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81)」을 발표

\* OECD는 매년 2회(5월, 11월)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를 발간

## 1. OECD 경제전망

- 1 OECD 경제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가의 높은 성장세와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 등으로 인해 성장전망을 상향조정(07년<sup>e</sup> : 2.5%→ 2.7%)

OECD 국가 전체의 경제전망

(전년 대비, %)

	05년	06년	07년 <sup>a)</sup>		08년 <sup>a)</sup>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GDP 증가율	2.6	3.2	2.7	2.5	2.7	2.7
실업률	6.5	5.9	5.6	5.8	5.5	5.7
물가상승률 <sup>1)</sup>	2.2	2.2	2.1	2.2	2.0	2.1
재정수지	△2.9	△1.6	△1.6	-	△1.6	-

1) GDP 디플레이터

- 신흥개발국 경제는 세계 교역량 증가를 주도하며, 세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 (단,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08년에는 둔화 전망)

<07년 전망>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GDP 증가율(%)	10.4	8.5	6.5	4.4
수출/수입 증가율(%)	21.1/18.1	13.5/13.5	5.8/18.5	3.5/14.0

- 세계 금융시장은 美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심화 가능성이 있으나  
- 금융시장의 펀더멘털(fundamental)이 양호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예상

- 2 다만, 실업률이 구조적인 수준까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65(Brent油 기준)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

- 또한,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global imbalances) 지속 및 美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와 금융시장 파급효과 등 불안요인 잠재

## 2. 주요국 경제전망

- 1 (미국) 주택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7년 성장은 다소 둔화되나, 주택경기 조정 마무리 및 세계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출증대로 08년에는 잠재수준에 근접한 성장을 회복 전망(07년<sup>e</sup> 2.1%→08년<sup>e</sup> 2.5%)

-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증대에 힘입어 감소 (GDP 대비  $\Delta 6\%$  수준)

\* 경상수지 적자(對 GDP, %) : (05) $\Delta 6.4 \rightarrow$ (06) $\Delta 6.5 \rightarrow$ (07e) $\Delta 6.1 \rightarrow$ (08e) $\Delta 6.2$

- 근원 인플레이션은 상승압력이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의 영향으로 2% 초반의 안정세 유지 전망

**② (유로지역) 고용여건 개선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07년<sup>e</sup> 2.7%→08년<sup>e</sup> 2.3%)**

- 실업률은 지난 15년 이래 최저수준(7.1%)이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ECB(유럽중앙은행)의 목표 범위(2%) 내로 전망되나 추가 상승압력 존재

\* 실업률(%) : (05) 8.5→(06) 7.8→(07<sup>e</sup>) 7.1→(08<sup>e</sup>) 6.7

-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08년에는 성장세(2.3%)가 다소 둔화될 전망

**③ (일본) 활발한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 이어갈 전망(07년<sup>e</sup> 2.4%→08년<sup>e</sup> 2.1%)**

- 수출의 소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성장세 지속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은 08년 (+)로 전환 예상

\* 근원 인플레이션(%) : (05) $\Delta 0.4 \rightarrow$ (06) $\Delta 0.4 \rightarrow$ (07e) $\Delta 0.1 \rightarrow$ (08e)0.3

**3.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

**① (전망) 07년 4.3%(06.11월 전망대비 0.1%p 하향조정), 08년 4.8% 성장률 달성**

- 최근 유가 및 환율 안정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임금상승에 의해 민간소비가 증대되면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확산

- 소비자 물가는 상승압력이 있으나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 내에서 안정, 실업률은 06년보다 하락전망

-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악화 지속으로 07년에 소폭 적자( $\Delta 0.0\%$ )전환 가능성

-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富力의 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증가 및 저축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등의 하방 위험요인(downside risk)이 존재

- ICT 투자증대, 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및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등은 긍정적 요인(upside risk)으로 작용

**② (정책권고)**

-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집중하고,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특히, 민간부문 공급)에 의해 대응할 필요

- 재정정책은 중기 균형재정 달성에 목표를 두고, 변동환율 정책을 지속 유지할 필요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전년대비, %)

	05년	06년	07년 <sup>a)</sup>		08년 <sup>a)</sup>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OECD 전체	2.6	3.2	2.7	2.5	2.7	2.7
- 미국	3.2	3.3	2.1	2.4	2.5	2.7
- 일본	1.9	2.2	2.4	2.0	2.1	2.0
- 유로	1.5	2.8	2.7	2.2	2.3	2.3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

(전년 대비, %)

	05년	06년	07년 <sup>o)</sup>		08년 <sup>o)</sup>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06.11월 전망
• GDP	4.2	5.0	4.3	4.4	4.8	4.6
- 민간소비	3.6	4.2	4.4	3.8	3.6	4.0
- 총고정투자	2.4	3.2	4.2	3.2	3.0	2.8
- 수출 (순수출)	8.5 1.3	12.4 1.6	10.0 0.9	11.0 1.3	12.2 1.6	12.1 1.5
• 실업률	3.7	3.5	3.4	3.4	3.4	3.4
• 소비자물가	2.8	2.2	2.5	2.9	3.0	3.0
• 경상수지(對 GDP)	1.9	0.7	△0.0	0.0	△0.4	△0.4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 | 재정통계 |



-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단위: 백만원)

	세입규모	1. 조세	내국세	관세	방위세	교통세	교육세
1968	242,299	194,288	156,407	37,881			
1969	352,140	262,823	218,099	44,724			
1970	422,158	334,723	283,799	50,924			
1971	530,502	407,683	355,496	52,187			
1972	695,184	433,446	374,340	59,106			
1973	697,585	521,492	439,121	82,371	-		
1974	1,046,386	844,673	717,976	126,697	-		
1975	1,630,242	1,255,479	1,012,291	181,004	62,184		
1976	2,378,185	1,914,747	1,370,532	275,512	268,703		
1977	2,990,844	2,402,682	1,675,179	385,871	341,632		
1978	4,040,546	3,372,262	2,252,546	646,425	473,291		-
1979	5,507,334	4,401,708	3,037,510	732,294	631,904		-
1980	6,635,181	5,297,700	3,675,795	766,063	855,842		-
1981	8,174,449	6,577,938	4,595,782	890,616	1,091,540		-
1982	9,525,922	7,636,435	5,250,666	1,012,564	1,175,335		197,870
1983	10,753,349	9,220,719	6,188,425	1,463,202	1,306,032		263,060
1984	11,828,884	10,053,724	6,697,373	1,593,959	1,477,565		284,827
1985	13,008,894	11,047,427	7,496,925	,566,125	1,663,233		321,144
1986	14,699,339	12,622,319	8,463,984	1,942,560	1,843,368		372,407
1987	17,883,898	15,439,376	10,011,971	2,696,464	2,319,603		411,338
1988	22,040,762	18,537,147	12,540,239	2,573,562	2,911,063		512,283
1989	25,590,915	21,232,564	15,208,394	2,117,581	3,483,157		423,432
1990	31,304,595	26,847,430	19,130,226	2,765,371	4,430,570		521,263
1991	32,928,665	28,209,444	23,510,896	3,435,502	1,263,046		
1992	34,534,059	32,172,078	28,856,011	3,153,190	162,877		
1993	38,583,715	35,866,071	32,858,931	2,885,860	121,280		
1994	44,935,820	42,707,950	36,725,200	3,448,887	76,696	2,457,167	
1995	52,927,958	50,431,491	42,363,391	4,633,211	63,137	3,371,752	
1996	60,275,805	57,058,091	46,910,363	5,309,471	14,288	4,823,969	
1997	65,959,066	60,909,218	49,572,943	5,797,617	-8,464	5,547,122	
1998	74,641,290	58,837,569	48,496,191	3,835,992	1,423	6,503,963	
1999	84,280,642	65,067,034	53,122,432	4,687,298	1,646	7,255,658	
2000	92,602,205	81,984,556	67,784,162	5,799,720	-2,939	8,403,613	
2001	102,008,392	86,418,773	70,210,255	5,923,381	-930	10,286,066	
2002	113,380,045	94,285,819	79,550,499	,601,292	807	8,133,221	
2003	119,675,515	104,925,725	89,495,724	6,847,339	2,256	8,580,405	
2004	119,646,006	108,170,446	92,680,966	6,796,491	57,119	8,635,870	
2005	136,459,192	122,391,630	101,826,807	6,317,690	-8,551	10,287,765	3,526,592

##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계속)

(단위: 백만원)

	종합부동산세	2. 전매납부금	3. 관재수익	4. 국공채및차입금	5. 세외수입	6. 예탁금및이자수입	7. 재정차관예탁금
1968		16,400	156,407	-	18,678	7,933	5,000
1969		24,250	218,099	-	20,265	12,275	32,527
1970		30,100	283,799	-	21,739	6,996	28,600
1971		45,372	355,496	-	26,391	7,366	43,690
1972		42,900	374,340	95,000	23,658	11,440	88,740
1973		57,000	439,121	5,000	55,842		
1974		69,000	717,976	45,702	52,647		
1975		135,500	1,012,291	20,773	92,800		
1976		178,000	1,370,532	6,000	151,980		
1977		220,000	1,675,179	-	270,398		
1978		280,000	2,252,546	-	298,568		
1979		360,000	3,037,510	-	646,763		
1980		510,000	3,675,795	100,000	638,334		
1981		680,000	4,595,782	411,400	427,423		
1982		760,000	5,250,666	350,000	660,652		
1983		830,000	6,188,425	30,000	604,246		
1984		846,000	6,697,373	-	886,676		
1985		829,000	7,496,925	-	1,076,496		
1986		984,000	8,463,984	-	1,020,125		
1987		904,333	10,011,971	-	1,456,975		
1988		947,045	12,540,239	3	2,504,895		
1989		1,536	15,208,394	1	4,331,462		
1990			19,130,226	-	4,384,309		
1991			23,510,896	-	4,635,297		
1992			28,856,011	-	2,285,302		
1993			32,858,931	-	2,651,162		
1994			36,725,200	-	2,183,376		
1995			42,363,391	-	2,447,876		
1996			46,910,363	-	3,128,971		
1997			49,572,943	560,720	4,420,594		
1998			48,496,191	264,680	15,456,267		
1999			53,122,432	3,300,920	15,868,958		
2000			67,784,162	39,846	10,563,831		
2001			70,210,255	3,712,903	11,875,396		
2002			79,550,499	6,740,258	12,353,396		
2003			89,495,724	1,349,420	13,399,828		
2004			92,680,966	586,278	10,889,282		
2005	441,328		101,826,807	120,270	13,947,292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계속)

(단위: 백만원)

	8. 예탁금	9. 차관수입	10. 파월지수수입	11. 대총자금	12. 파월경비지수	세출규모	1. 일반행정비	2. 국방비
1968				30,655	2,763	261,414		64,708
1969				21,868	2,033	369,881		84,382
1970				17,696	6,002	440,699		102,335
1971				12,189	8,760	545,688		134,738
1972				4,399	7,300	700,643		173,909
1973	53,300	2,083	2,868			653,350	83,583	183,469
1974	30,081	4,283	-			1,009,632	110,836	296,846
1975	112,680	13,010	-			1,528,277	173,288	442,437
1976	81,460	45,998	-			2,127,043	221,881	703,752
1977	23,126	74,638	-			2,739,935	301,537	949,623
1978	7,500	82,216				3,538,675	359,218	
1979	8,299	90,564				5,053,242	471,858	
1980	3	89,144				6,486,054	629,173	
1981	2	77,686				7,907,837	903,019	
1982	25,600	93,235				9,178,908	1,004,862	
1983	11,578	56,806				10,180,764	1,101,599	
1984	-	42,484				11,072,062	1,118,875	
1985	-	55,971				12,409,393	1,254,097	
1986	-	72,895				13,796,462	1,388,175	
1987	-	83,214				15,794,454	1,569,959	
1988		51,672				18,025,000	1,791,789	
1989		25,352				21,653,120	2,231,265	
1990		72,856				27,436,744	2,801,828	
1991		83,924				31,283,510	3,499,605	
1992		76,679				33,362,459	4,174,186	
1993		66,482				37,268,004	4,454,420	
1994		44,494				42,794,678	4,760,737	
1995		48,591				51,498,089	5,452,950	
1996		88,743				58,480,817	6,282,409	
1997		68,534				63,962,100	6,821,830	
1998		82,774				73,225,982	7,304,761	
1999		43,731				80,509,887	7,811,532	
2000		13,971				87,464,491	8,164,431	
2001		1,320				98,668,535	9,190,210	
2002		572				108,918,281	10,138,789	
2003		542				117,222,909	12,693,413	
2004		0				118,236,238	11,908,856	
2005		0				134,207,676	14,742,782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계속)

(단위: 백만원)

	3. 지방재정교부금	4. 채무상환및기타	5. 일반경비 <sup>1)</sup>	6. 투융자	7. 사회개발	8. 경제개발	9. 교육비	10. 방위비
1968			116,404	80,302				
1969			153,843	131,656				
1970			189,798	148,566				
1971			233,600	177,350				
1972			286,543	240,191				
1973	71,920	21,571			149,327	143,480		
1974	81,400	109,503			203,389	207,658		
1975	117,670	95,099			297,478	402,305		
1976	151,448	79,895			438,641	531,426		
1977	183,411	101,431			580,550	623,383		
1978	246,907	108,347			791,540	725,067	-	1,307,596
1979	336,310	138,439			1,145,054	1,405,352	-	1,556,229
1980	410,000	176,462			1,564,542	1,397,440	-	2,308,437
1981	520,000	381,505			1,934,070	1,493,743	-	2,675,500
1982	700,905	215,194			569,828	1,607,817	1,909,067	3,171,235
1983	858,787	296,585			663,669	1,752,640	2,150,011	3,357,473
1984	1,019,950	369,715			706,202	2,081,828	2,265,393	3,510,099
1985	1,008,494	505,358			843,305	2,499,542	2,496,140	3,802,457
1986	1,295,903	311,147			1,087,285	2,620,136	2,766,011	4,327,805
1987	1,609,639	319,419			1,298,060	3,070,716	3,125,648	4,801,013
1988	1,720,822	1,240,147			1,410,348	2,628,991	3,692,875	5,540,028
1989	2,186,915	1,567,188			1,937,422	3,228,897	4,336,102	6,165,331
1990	2,764,654	3,110,034			2,450,283	3,867,732	5,586,021	6,856,192
1991	3,452,403	2,505,595			3,179,234	5,136,284	5,549,376	7,961,013
1992	3,927,749	726,323			3,234,967	6,211,539	6,462,736	8,624,959
1993	4,367,529	778,043			3,416,558	7,696,036	7,397,248	9,158,170
1994	4,770,125	1,159,762			3,859,541	9,875,261	8,241,342	10,127,910
1995	5,484,226	3,785,148			4,163,156	11,506,945	9,738,027	11,367,637
1996	6,377,734	3,701,914			5,021,080	13,122,903	11,029,826	12,944,951
1997	6,798,732	2,439,808			5,899,254	16,281,404	12,067,851	13,653,221
1998	7,039,226	3,194,155			7,204,020	22,190,889	12,130,975	14,161,956
1999	6,710,770	7,954,872			9,200,348	23,498,961	11,417,942	13,915,462
2000	8,266,546	8,371,053			10,599,647	23,879,288	12,704,309	15,479,216
2001	12,288,991	4,050,414			13,606,055	25,493,010	17,868,588	16,171,267
2002	12,259,425	4,551,507			13,846,376	31,995,767	18,726,285	17,400,132
2003	14,802,209	2,655,190			15,331,704	32,499,345	20,749,658	18,491,391
2004	14,389,254	2,497,420			16,579,986	30,752,853	22,112,749	19,995,120
2005	20,017,486	3,858,521			17,897,232	28,248,832	27,466,891	21,975,932

- 주 : 1. 1968~76년도 일반재정, 1977년도부터 일반회계.  
 2. 1973~76년도 세출규모에는 현물, 용역차관금액이 제외되어 있어 경제기획원 예산개요(1977~78)와는 차이가 있음.  
 3. 1980년 이전까지 국방비로 분류되었던 기타 방위비(전경 및 해경)와 경제개발로 분류되었던 재정용자지수(자금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이 1981년도에  
 는 각각 일반행정과 채무상환 및 기타로 분류됨.  
 4. '97년도부터 '국공채' 와 '차입금' 항목이 '국공채 및 차입금' 항목으로 통합됨.  
 5. '97년도부터 '기타' 항목이 '채무상환 및 기타' 항목으로 바뀜.  
 1) 일반경비 내에 봉급 및 연금, 교부금이 포함.

자료 :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감사원	감재원	감재위원회	감찰위원회	건설부	건설교통부	경제과학심의회	경제기획원	경찰청
1948			<162>						
1949			<323>						
1950			<404>						
1951			<727>						
1952			3						
1953			17						
1954		20							
1955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19	-			231	
1962	-			30	1,782			4,874	
1963	56			8	427			9,607	
1964	81			-	369			6,957	
1965	103			-	694			12,191	
1966	147				791		23	28,020	
1967	165				503		24	38,204	
1968	213				789		44	73,557	
1969	271				1,421		56	104,856	
1970	383				1,251		52	124,821	
1971	440				1,505		81	138,723	
1972	511				2,946		102	160,346	
1973	841				1,790		82	114,077	
1974	975				4,972		141	257,420	
1975	1,203				4,641		165	419,933	
1976	1,589				5,351		185	580,081	
1977	22,358				191,839		244	117,780	
1978	2,738				247,758		299	57,143	
1979	3,406				317,589		496	67,688	
1980	4,265				389,620		476	108,373	
1981	5,535				428,895		455	164,306	
1982	6,752				564,754			126,489	
1983	7,065				681,620			127,547	
1984	7,365				599,000			134,694	
1985	7,916				830,530			142,580	
1986	8,868				1,030,889			154,418	
1987	9,886				1,179,574			195,027	
1988	11,234				1,038,032			210,921	
1989	12,662				1,457,462			245,819	
1990	15,404				1,627,054			340,491	
1991	18,737				2,453,688			302,041	
1992	21,410				2,600,682			350,197	1,930,857
1993	23,283				3,017,435			390,109	2,145,230
1994	25,667				3,705,049	122,788		391,007	2,434,330
1995	30,398					5,517,421			2,756,140
1996	36,219					6,617,959			3,103,149
1997	38,441					7,831,286			3,263,861
1998	37,821					11,209,209			3,213,157
1999	39,936					12,342,598			3,238,769
2000	48,206					13,298,202			3,480,949
2001	57,523					13,962,457			4,020,799
2002	61,794					15,081,250			4,352,250
2003	64,025					16,392,956			4,675,087
2004	71,662					15,121,638			4,938,410
2005	75,738					15,337,425			5,282,577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고시원	고시원사무국	고시위원회	공동경제위원회	공보부	공보실	공보처	공업 지관리청	공업진흥청
1948			<64>	-			<768>		
1949			<122>	-			4		
1950			<114>	-			5		
1951			<371>	-			7		
1952			2	-			48		
1953			5	7			169		
1954	7	1,985				464			
1955	-	423				1,547			
1957	-	288				1,509			
1958	-	400				1,672			
1959	-	605				1,934			
1960	-	6,256				-			
1961					406				
1962					727				
1963					533				
1964					546				
1965					640				
1966					1,137				
1967					1,315				
1968					1,864				
1969					2,170				
1970					2,757				
1971								-	-
1972								-	-
1973								155	371
1974								234	672
1975								443	779
1976								566	877
1977								164	4,993
1978								-	4,860
1979								-	7,006
1980								-	12,357
1981								-	17,023
1982									12,331
1983									11,808
1984									11,051
1985									10,112
1986									11,613
1987									15,951
1988									20,012
1989									28,321
1990							22,941		23,087
1991							27,682		23,382
1992							32,159		31,389
1993							36,203		40,329
1994							41,859		46,127
1995							50,304		44,430
1996							53,724		51,602
1997							53,557		
1998							6,383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sup>가)</sup>	관세청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sup>나)</sup>	교통부	국가보훈처	국가안전기획부 <sup>다)</sup>
1948					17		56		
1949					75		-		
1950					121		-		
1951					159		-		
1952					435		-		
1953					1,249		-		
1954					6,029				
1955					24,916				
1957					30,613				
1958					39,611				
1959					58,148				
1960					61,868				
1961							37		
1962							284		
1963							250		
1964							275		
1965							343		
1966		-		-			520		
1967		177		-			519		
1968		378		-			830		
1969		503		-			1,040		
1970		572		1,475			1,228		
1971			671	1,452			1,477		
1972			980	1,904			1,626		
1973			1,469	2,026			2,113		
1974			1,186	3,009			3,011		
1975			1,438	3,615			4,342		
1976			1,991	4,609			3,142		
1977			16,755	6,291			19,660		
1978			,446	8,227			29,803		
1979			31,444	12,143			67,102		
1980			45,800	16,487			67,503		
1981			76,815	20,749			44,661		
1982			87,952	24,995			72,417	93,244	8,340
1983			105,437	24,543			78,990	105,833	8,462
1984			108,592	25,216			81,648	106,839	8,603
1985			172,853	29,441			84,200	113,699	9,297
1986			214,057	33,487			97,917	124,091	9,995
1987			246,492	38,063			91,905	136,818	11,094
1988			248,746	46,917			100,271	160,485	12,425
1989			266,389	53,753			100,358	255,434	13,917
1990			392,008	64,099	5,586,021		189,404	366,712	16,224
1991			355,816	76,379	5,549,377		285,606	527,428	96,923
1992			391,804	90,104	6,462,736		414,160	590,242	198,763
1993			395,325	99,720	7,397,249		842,446	624,447	198,631
1994	3		557,092	109,558	8,241,342		1,156,024	719,127	166,699
1995	10,307		666,191	124,771	9,738,027			793,261	186,279
1996	13,983		803,401	144,765	11,029,825			883,485	193,486
1997	17,144		915,880	158,609	12,067,851			1,011,831	229,196
1998	15,999		946,876	160,473	12,130,975			1,072,282	189,793
1999	17,603		807,537	160,268	11,417,942			1,092,545	
2000	19,317		850,844	182,665	12,704,309			1,257,628	
2001	22,010		985,927	218,695		17,868,588		1,408,741	
2002	24,615		1,137,861	241,200		18,726,285		1,618,712	
2003	26,425		1,268,155	269,543		20,749,658		1,964,025	
2004	28,779		1,414,374	294,310		22,112,749		2,121,461	
2005	33,288		1,833,409	315,531		27,466,891		2,246,996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인권위원회 <sup>㉑</sup>	국가정보원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청렴위원회 <sup>㉒</sup>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sup>㉓</sup>
1948							<39>		
1949							<411>		
1950							<137>		
1951							<397>		
1952							<664>		
1953							2		
1954							3		
1955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57		
1965							68		
1966		21					101		
1967		34					121		
1968		72					145		
1969		83					188		
1970		101					291		
1971		131					415		
1972		133					443		
1973		190					616		
1974		216					937		
1975		305					1,920		
1976		409					1,509		
1977		486					2,050		
1978		559					2,514		
1979		666					3,891		
1980		855					4,712		
1981		1,114					7,018		
1982		1,206					9,399		
1983		1,116					8,000		
1984		1,056					8,350		
1985		1,136					9,698		
1986		519					11,252		
1987		59					12,624		
1988		66			403		14,220		
1989		73			79		13,411		
1990		80					15,033		
1991		86					20,294		
1992		105					18,883		
1993		114					18,556		
1994		132					12,379		
1995		150					15,745		
1996		181					17,632		
1997		186					19,108		
1998		411					36,965		
1999		525		204,090			312,892	96	
2000		665		227,680			556,729	1410	
2001		721	388	244,199			616,108	1,076	
2002		786	14,776	264,147			723,749	1,209	
2003		4,997	17,068	287,984			786,982	1,257	
2004		4,629	18,729	389,299			824,176	1,431	
2005		4,444	20,406	396,026		19,073	294,835	2,074	3,012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국방부	국세청	국정홍보처	국토통일원	국회	민의원	참여원	군사원호청	기상청
1948	55				<786>				
1949	239				3				
1950	1,324				7				
1951	924				17				
1952	2,257				42				
1953	-				138				
1954	-					359	-		
1955	-					1,158	-		
1957	-					1,197	-		
1958	127,323					1,674	-		
1959	139,198					2,533	-		
1960	147,067					2,911	446		
1961	16,599				181	129	52	1,458	
1962	20,474				-	-	-	-	
1963	20,479				17	-	-	-	
1964	24,926				444	-	-	-	
1965	29,874				550	-	-	-	
1966	40,542	1,500		-	941				
1967	49,553	2,109		-	1,046				
1968	64,708	2,921		-	1,474				
1969	84,382	,742		93	1,592				
1970	102,335	4,317		194	1,930				
1971	134,738	4,834		264	2,555				
1972	173,909	5,284		413	3,519				
1973	183,469	5,659		461	3,160				
1974	293,923	8,444		563	4,154				
1975	438,574	12,239		561	5,665				
1976	698,564	17,679		707	7,254				
1977	941,979	25,453		1,059	10,135				
1978	1,279,660	33,076		1,345	12,057				
1979	1,513,365	44,172		1,748	14,173				
1980	2,240,707	52,327		2,454	15,348				
1981	2,654,405	65,953		7,038	18,932				
1982	3,053,996	79,350		4,938	24,505				
1983	3,221,854	88,364		4,888	27,042				
1984	3,361,263	92,747		5,224	28,191				
1985	3,665,604	102,081		5,734	32,557				
1986	4,182,149	113,807		7,042	36,466				
1987	4,626,848	126,324		8,061	40,436				
1988	5,334,756	146,685		10,618	60,982				
1989	5,950,938	174,117		16,119	71,803				
1990	6,607,589	211,263		17,226	80,231				
1991	7,679,216	257,065		24,608	89,682				17,887
1992	8,309,050	313,866		27,468	97,120				23,313
1993	8,811,638	347,860		21,946	107,608				26,675
1994	9,743,525	393,808		23,371	121,709				31,598
1995	10,935,809	471,945		28,331	130,302				36,698
1996	12,459,081	551,158		32,638	151,549				42,802
1997	13,101,615	582,151		92,367	169,697				49,389
1998	13,594,109	581,021		56,205	152,397				50,515
1999	13,337,003	595,132	29,152		153,883				55,721
2000	14,879,520	691,228	43,927		177,262				67,232
2001	15,496,841	755,329	43,054		194,996				82,284
2002	16,671,633	817,385	48,309		218,932				88,387
2003	17,706,771	879,652	50,802		250,563				99,086
2004	19,153,796	949,235	55,952		293,582				113,564
2005	21,049,440	976,479	61,697		335,286				129,702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기획예산위원회 <sup>※</sup>	기획예산처	기획처	내각	내각사무처	내무부	노동부	노동청	농림부
1948			<300>			40			16
1949			136			188			60
1950			81			408			60
1951			2,267			536			459
1952			8,658			1,335			101
1953			16,576			1,968			2,447
1954			23,832			4,767			5,617
1955			-			29,147			6,094
1957			-			31,446			4,564
1958			-			36,548			5,045
1959			-			50,035			7,153
1960			-			50,556			11,880
1961				-	283	5,002		-	2,843
1962				-	596	5,139		-	3,724
1963				47	827	5,891		17	1,266
1964				-	-	6,263		32	1,288
1965				-	-	8,169		41	1,243
1966						15,875		114	777
1967						28,490		116	878
1968						40,076		199	1,997
1969						57,955		331	1,444
1970						76,357		411	2,359
1971						94,348		576	2,768
1972						108,022		609	2,953
1973						105,430		566	1,926
1974						127,760		980	4,237
1975						185,470		981	4,880
1976						250,122		1,355	
1977						329,417		10,918	
1978						435,382		15,722	
1979						599,463		25,246	
1980						808,404		34,450	
1981						1,001,755		35,369	
1982						1,283,364	46,145		
1983						1,544,490	52,893		
1984						1,715,397	65,188		
1985						1,744,499	66,146		
1986						2,108,609	60,188		
1987						2,551,545	76,071		
1988						2,796,194	94,865		
1989						3,414,677	120,549		
1990						4,414,441	131,279		
1991						5,394,445	126,703		
1992						4,250,377	147,229		
1993						4,754,036	166,964		
1994						5,368,085	191,506		
1995						6,035,396	222,406		
1996						6,950,646	265,529		2,880,210
1997						7,121,092	298,610		2,849,360
1998	6,561					717,183	527,018		3,278,715
1999	5,026	237,107					696,358		3,643,228
2000		420,712					621,149		3,414,988
2001		420,369					608,385		3,849,883
2002		419,446					564,960		5,898,172
2003		431,247					579,428		5,670,896
2004		403,098					744,322		5,566,230
2005		1,536,499					698,071		5,108,258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실	동력자원부	무임소장관실	문교부	문화부
1948			1		1		-		
1949			6		<342>		-		
1950			8		<649>		-		
1951			17		<275>		-		
1952			60		2		-		
1953			219		5		<506>		
1954			482		10		<371>		
1955			1,183		28		-		
1957			1,092		28		-		
1958			1,487		40		-		
1959			1,984		49		-		
1960			2,405		74		-		
1961		-	299		19			7,291	
1962		-	278		15			8,603	
1963		-	328		26			10,005	
1964		229	359		152			11,391	
1965		213	575		269			13,938	
1966		284	849		133			19,292	
1967		296	991		144		-	24,557	
1968		377	1,067		204			35,332	
1969		474	1,377		637			45,269	
1970		470	1,815		399			58,205	
1971		400	2,134		358			74,460	
1972		488	2,741		502			94,475	
1973		513	2,981		490			99,485	
1974		805	3,785		831			134,338	
1975		1,075	5,564		763			195,042	
1976	6,856	1,430	8,229		2,719	-		317,249	
1977	107,922	7,055	12,050		1,597	-		469,662	
1978	117,681	8,181	17,425		2,943	92,507		613,968	
1979	452,416	10,470	23,336		2,756	148,458		861,920	
1980	265,017	12,407	30,807		3,086	196,438		1,125,720	
1981	406,821	15,385	41,068		5,268	282,759		1,461,578	
1982	359,993	20,527	50,821	6,645	7,286	185,280		1,909,167	
1983	377,581	22,532	58,524	8,200	8,403	166,212		2,150,011	
1984	774,558	23,197	62,466	7,486	8,588	152,147		2,265,393	
1985	900,745	26,434	68,435	8,393	9,069	150,640		2,493,140	
1986	829,983	29,983	75,831	9,286	10,333	127,151		2,766,011	
1987	1,061,716	33,303	84,760	10,213	11,177	104,713		3,125,648	
1988	730,512	37,450	103,471	11,462	11,927	86,596		3,692,875	
1989	885,472	43,718	125,226	12,843	22,571	91,456		4,336,101	
1990	1,230,825	49,822	145,423	14,556	33,816	90,371			85,924
1991	1,361,275	67,225	181,243	17,434	23,487	98,073			119,755
1992	1,900,591	93,380	218,175	21,026	21,988	112,116			134,008
1993	2,226,501	113,708	249,073	22,021	21,600	4,249			15,697
1994	2,742,235	136,450	193,279	22,837	24,015				
1995	3,841,955	173,643	228,872	28,495	26,508				
1996		201,597	268,861	37,549	30,474				
1997		227,885	301,416	43,325	32,262				
1998		219,162	306,960	35,216	32,601				
1999		219,875	321,451	36,153	34,100				
2000		245,828	372,633	42,824	36,533				
2001		270,587	437,900	46,178	42,085				
2002		303,404	499,041	49,674	42,576				
2003		330,963	566,598	55,266	50,415				
2004		353,944	621,290	54,261	54,896				
2005		366,352	666,242	57,129	57,586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sup>9)</sup>	문화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방송위원회	법무부	법제실	법제처
1948					<351>		6		<170>
1949					<690>		29		<291>
1950					-		42		<284>
1951					-		84		<357>
1952					-		207		2
1953					-		687		5
1954							1,620	15	
1955							4,433	-	
1957							4,402	-	
1958							4,865	-	
1959							5,602	-	
1960							6,127	-	
1961							692		3
1962							825		20
1963							1,019		22
1964							1,050		20
1965							1,836		18
1966							1,791		27
1967							4,136		36
1968							3,126		42
1969							3,932		62
1970							4,722		78
1971	2,973						5,522		86
1972	4,149						9,348		80
1973	4,234						8,134		105
1974	4,880						11,119		165
1975	6,894						15,135		176
1976	7,223						22,076		220
1977	17,736						29,209		285
1978	23,307						41,949		360
1979	25,222						54,412		471
1980	631,492						70,458		795
1981	31,721						100,343		752
1982	36,802						137,672		848
1983	36,072						132,444		915
1984	43,581						135,582		970
1985	57,011						150,138		1,052
1986	76,410						165,167		1,237
1987	69,823						184,230		1,288
1988	69,772			4,735			214,381		1,492
1989	91,260			5,311			258,623		2,448
1990				5,517			312,306		2,211
1991				6,508			384,031		3,354
1992				7,355			467,536		3,995
1993		191,099		7,765			522,436		4,463
1994		257,130		7,902			525,744		5,237
1995		328,684		8,652			607,845		6,054
1996		434,639		9,350			721,990		8,910
1997		602,557		9,910			807,136		8,734
1998		760,080		1,086			826,752		8,849
1999		786,835	85,413	5,554			838,305		7,432
2000		851,184	276,552	8,130		7,684	932,216		8,299
2001		968,855	314,577	9,255		274	1,089,971		9,521
2002		1,059,863	299,852	9,540		3,314	1,217,281		10,699
2003		1,130,741	345,255	9,940		5,411	1,344,102		12,416
2004		1,169,026	360,188	11,298		468	1,449,568		13,445
2005		858,182	290,265	12,748		479	1,564,974		15,635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병무청	보건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	보위부	부통령실	부패방지위원회 <sup>※</sup>	부흥부	사정위원회
1948					-	-			
1949					8	-			
1950					27	-			
1951					73	<184>			
1952					197	<649>			
1953					377	3			
1954		405		1,005		11		12	-
1955		-		10,208		20		80	50
1957		-		9,348		16		76	55
1958		-		11,176		22		124	58
1959		-		12,030		28		138	86
1960		-		17,962		23		183	59
1961				1,153		436			
1962				1,896		183			
1963				2,886		219			
1964				2,470		-			
1965				2,784		-			
1966				2,546		103			
1967				3,084		139			
1968				4,452		182			
1969				4,281		216			
1970				4,292		229			
1971	-			4,789		280			
1972	-			5,993		352			
1973	-			6,685		405			
1974	2,923			22,611		475			
1975	3,864			10,728		601			
1976	5,188			14,034		872			
1977	7,643			52,149		2,415			
1978	9,761			61,138		1,845			
1979	12,946			128,934		2,319			
1980	16,971			161,238		2,647			
1981	21,095			174,711		3,298			
1982	27,110			221,636					
1983	28,431			274,960					
1984	28,597			290,047					
1985	32,511			337,035					
1986	36,286			398,719					
1987	41,156			521,763					
1988	47,519			705,303					
1989	56,985			923,531					
1990	66,505			1,149,501					
1991	79,860			1,457,553					
1992	91,059			1,528,217					
1993	96,979			1,653,591					
1994	108,712		1,765,709						
1995	115,891		1,981,867						
1996	137,422		2,354,139						
1997	158,417		2,829,394						
1998	157,696		3,302,424						
1999	136,626		4,124,892						
2000	124,873		5,357,108						
2001	131,831		7,582,070						
2002	124,512		7,815,388				12,369		
2003	112,541		8,646,805				15,852		
2004	124,491		9,120,526				15,231		
2005	130,976		8,901,656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사회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상공부	상공자원부	소방방재청 <sup>*)</sup>	수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sup>*)</sup>	심계원
1948	11			14					<146>
1949	18			73					<318>
1950	139			3					<410>
1951	122			8					1
1952	447			69					6
1953	334			326					18
1954	454			649					44
1955	-			3,581					170
1957	-			3,818					165
1958	-			7,680					199
1959	-			9,639					265
1960	-			10,348					266
1961				1,314					27
1962				1,045					43
1963				661					10
1964				261					-
1965				328					-
1966		-		460			519		
1967		194		438			701		
1968		281		644			902		
1969		400		893			859		
1970		681		1,003			959		
1971		724		969			961		
1972		713		1,083			841		
1973		663		676			807		
1974		748		834			1,208		
1975		949		3,238			1,642		
1976		1,538		1,407			2,302		
1977		21,108		129,987			11,541		
1978		22,355		48,141			15,819		
1979		27,007		40,594			24,187		
1980		34,354		80,503			32,112		
1981		39,903		57,060			38,729		
1982		46,874		61,022			44,499		
1983		42,664		58,266			43,217		
1984		43,164		61,129			49,246		
1985		45,279		86,192			54,394		
1986		46,632		103,152			83,397		
1987		51,269		89,647			119,335		
1988		57,757		66,079			97,707		
1989		68,572		83,588			127,868		
1990		75,874		135,890			154,666		
1991		94,595		191,340			177,717		
1992		102,808		242,716			191,103		
1993		121,011		48,705	308,806		192,014		
1994		136,792					230,775		
1995		155,302					253,336		
1996		180,588					413,518		
1997		227,785							
1998		302,037						33,634	
1999		461,951	1,033,582					51,111	
2000		419,748	1,190,228					58,033	
2001		469,337	1,468,646					65,612	
2002		462,210	1,542,965					89,818	
2003		605,885	1,866,955					100,105	
2004		554,725	1,992,571			373,616		108,086	
2005		532,626	1,662,671			377,800		130,807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여성부(여성가족부 05-*)	여성특별위원회 <sup>(1)</sup>	예산청 <sup>(3)</sup>	외교통상부 <sup>(4)</sup>	울산개발계획본부	원자력원	원자력청	원호처	재건국민운동본부
1948				<802>					
1949				4					
1950				11					
1951				12					
1952				23					
1953				141					
1954				333			-		
1955				1,053			-		
1957				988			-		
1958				1,227			-		
1959				1,550			533		
1960				1,731			" 1,271		
1961				537	-		153		-
1962				590	18		121		386
1963				666	6		95		383
1964				999	-		95		228
1965				1,353	-		94		-
1966				1,919				159	-
1967				2,006				188	-
1968				2,704				279	-
1969				3,316				375	-
1970				3,910				393	45
1971				4,848				472	13
1972				7,411				526	15
1973				9,156				53	-
1974				11,078				-	-
1975				17,228				-	-
1976				21,994				-	-
1977				25,890				-	-
1978				36,038				" 39,864	
1979				45,193				" 48,952	
1980				61,008				" 62,455	
1981				80,373				" 79,285	
1982				91,486					
1983				97,448					
1984				99,422					
1985				118,063					
1986				136,454					
1987				136,120					
1988				143,593					
1989				162,898					
1990				236,050					
1991				394,685					
1992				347,862					
1993				314,918					
1994				356,494					
1995				379,828					
1996				415,568					
1997				477,041					
1998			12,508	336,797	611,053				
1999			11,011	200,710	529,201				
2000			10,354		542,769				
2001	31,250	220		610,576					
2002	42,309			676,256					
2003	42,917			787,190					
2004	278,087			890,879					
2005	684,035			923,920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재정경제부 <sup>3)</sup>	정무장관(제1)실	정무장관(제2)실	정보통신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sup>3)</su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정보부 <sup>4)</sup>
1948	64								
1949	49								
1950	185								
1951	568								
1952	5,057								
1953	3,461								
1954	13,888						-		
1955	54,505						-		
1957	52,317						-		
1958	38,846						15		
1959	17,893						36		
1960	28,409						1,752		
1961	11,750						30		-
1962	21,470						-		107
1963	3,882						251		75
1964	3,804						76		67
1965	5,625						87		216
1966	5,675						107		198
1967	4,998						861		188
1968	24,978						256		348
1969	3,344						690		603
1970	2,408						284		908
1971	1,080						1,742		1,639
1972	1,161						1,833		1,767
1973	3,901						993		1,391
1974	11,713						545		2,039
1975	12,079						2,515		1,915
1976	12,249				-		1,011		2,620
1977	102,543				-		1,518		3,399
1978	129,742				-		6,755		4,325
1979	156,833				101,848		2,582		4,670
1980	306,423				2,000		10,495		5,730
1981	285,626				2,000		16,954		6,560
1982	165,238						6,507		
1983	251,518						6,912		
1984	329,435						7,877		
1985	490,790						18,264		
1986	296,003						9,092		
1987	314,607						31,310		
1988	1,105,818						25,767		
1989	1,410,130						17,961		
1990	2,889,660						29,786		
1991	2,362,588						42,316		
1992	538,136						130,604		
1993	565,281						59,057		
1994	943,684	2,286	7,237	16,600			71,567		
1995	3,231,410	2,307	8,904	17,376			143,338		
1996	3,858,608	2,636	7,919	21,200		73,505	169,095		
1997	2,721,720	2,822	13,605	208,316		871,104	179,052		
1998	4,213,924	408	1,200	299,126		1,783,385	182,894		
1999	8,272,552			495,893		2,050,024	92,145	3,174	
2000	8,391,783			442,083		1,431,229	207,328	4,559	
2001	4,060,421			394,770		1,596,659	107,548	6,246	
2002	4,569,083			242,443		1,664,981	302,814	6,644	
2003	4,859,459			280,169		1,842,440	166,347	7,894	
2004	2,917,135			141,914		2,091,478	345,142	65,075	
2005	4,744,248			180,652		1,431,704	171,792	84,212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sup>20)</sup>	철도청 <sup>20)</sup>	체신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90~)	총무처	진일반민족행위진상규 명위원회 <sup>20)</sup>	탄핵재판소	통계청	통상산업부
1948			13		1		-		
1949			-		17		-		
1950			-		6		-		
1951			-		509		<66>		
1952			-		2,689		<114>		
1953			-		1,768		<48>		
1954					1,609				
1955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468				
1965					524				
1966					635				
1967					974				
1968					860				
1969					1,372				
1970					2,353				
1971		-			3,476				
1972		694			4,183				
1973		-			4,475				
1974		-			5,531				
1975		-			6,646				
1976		-	-		9,484				
1977		-	-		14,185				
1978		21,381	-		19,640				
1979		69,756	-		26,103				
1980		27,213	11,945		31,924				
1981		25,093	12,560		57,267				
1982		52,750	6,678	12,310	62,126				
1983		62,900	6,832	22,445	78,520				
1984		55,500	-	32,251	82,286				
1985		47,000	2,340	44,031	72,150				
1986		52,000	2,588	38,961	83,671				
1987		52,018	2,721	39,846	95,831				
1988		60,800	4,200	38,847	114,949				
1989		137,662	9,300	46,655	226,193				
1990		69,417	7,000	44,061	147,309				
1991		123,778	10,940	47,897	192,700		23,527		
1992		104,107	10,500	58,883	226,127		27,600		
1993		172,702	13,000	5,409	351,695		30,103		
1994		383,041			344,575		34,185	388,102	
1995		635,677			421,102		88,717	467,787	
1996		907,669			567,125		45,942	616,431	
1997		1,204,566			638,044		53,717	898,165	
1998		417,760			148,605		57,471	1,032,071	
1999		368,530					62,808		
2000		801,962					140,381		
2001		794,025					96,907		
2002		904,424					96,154		
2003		1,065,774					94,351		
2004		1,073,202					105,885		
2005	2,217					3,860	234,513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부	특별검찰부	특별재관부	특허청 <sup>*)</sup>	평화통일	합동경제위원회	해양경찰청 <sup>*)</sup>	해양수산부 <sup>*)</sup>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30		
1955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59	41					
1962			-	-					
1963			-	-					
1964			-	-					
1965			-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								
1972	83								
1973	403								
1974	758								
1975	1,120								
1976	1,419				-				
1977	1,381				966				
1978	2,480				1,405				
1979	3,032				1,968				
1980	3,420				2,534				
1981	-				3,183				
1982					3,822	3,475			
1983					4,683	4,404			
1984					4,767	4,413			
1985					5,131	4,998			
1986					6,262	4,810			
1987					8,313	5,657			
1988					6,423				
1989					1,044				
1990					4,346				
1991					4,462				
1992					2,812				
1993					2,300				
1994					2,600				
1995					4,796				
1996					10,495		81,934	375,463	
1997					5,821		248,765	1,074,021	
1998							266,467	1,333,590	
1999		41,755					289,658	1,235,995	
2000		140,849					316,722	1,215,258	
2001		554,986					371,644	1,400,996	
2002		552,106					421,067	1,713,524	
2003		394,537					489,585	2,444,548	
2004		274,018					506,862	2,264,937	
2005		588,246			2,455		576,919	2,300,184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결산액 (계속)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연도	해운항만청	해무청	해사위원회	행정자치부 <sup>12)</sup>	원법위원회 (헌법재판소 89)	혁명경찰부	혁명재판소	환경부	합계
1948					-				300
1949					-				910
1950					-				2,429
1951					<69>				5,800
1952					<31>				21,640
1953					<74>				29,923
1954		391	4		-				64,045
1955		-	-		<300>				138,596
1957		-	-		-				141,921
1958		-	-		-				278,013
1959		-	-		-				309,439
1960		-	-		1				351,596
1961						21	18		50,902
1962						12	14		73,256
1963						-	-		59,959
1964						-	-		62,907
1965						-	-		81,778
1966									125,209
1967									167,184
1968									242,820
1969									328,226
1970									403,985
1971					-				491,904
1972					-				602,137
1973					45				569,992
1974					45				929,267
1975					50				1,374,376
1976	3,056				61				2,019,230
1977	38,140				96				2,739,935
1978	48,959				117				3,538,675
1979	67,069				190				5,053,242
1980	92,522				202				6,486,054
1981	108,166				256				7,907,837
1982	138,893				285		19,079		9,178,908
1983	117,691				307		18,720		10,180,764
1984	120,149				372		29,015		11,072,062
1985	118,208				328		36,539		12,406,393
1986	157,240				345		47,091		13,796,462
1987	167,818				355		63,039		15,794,454
1988	224,066				1,216		52,451		1,634,537
1989	242,111				4,430		63,282		2,158,768
1990	245,347				8,481		81,493		3,526,900
1991	303,416				11,337		175,369		3,298,330
1992	404,224				19,759		53,858		1,576,610
1993	402,693				16,001		69,323		1,687,564
1994	341,889				8,412		134,193		42,794,678
1995	346,284				6,789		192,359		5,566,846
1996	306,319				8,118		249,633		58,480,817
1997					8,506		236,183		63,962,100
1998				8,153,201	8,158		396,799		73,225,982
1999				9,942,375	8,225		375,140		23,238,274
2000				10,480,015	9,527		453,175		87,464,491
2001				14,390,413	10,132		476,672		98,668,535
2002				16,767,823	12,095		428,194		108,918,281
2003				16,816,191	13,519		542,133		117,222,909
2004				15,900,997	15,777		365,799		118,236,238
2005				21,844,573	15,339		1,546,800		33,727,714

주: 1) 〈 〉는 천환 단위.

- 2) 1954, 1954년 국회는 국회 민의원
- 3) '95년 재무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바뀜, 그리고 '98년부터는 재정경제부로 바뀜
- 4) '98년부터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뀜
- 5) '9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바뀜
- 6) '96년에 해양수산부 신설
- 7) '98년에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바뀜
- 8) '96년에 해양경찰청 신설
- 9) '96년에 중소기업청 신설
- 10) '98년 신설
- 11) '98년 신설
- 12) '98년 신설
- 13) '98년 신설
- 14) '98년 신설
- 15) 1999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 바뀜
- 16) 2001년부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뀜
- 17)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 18) 2005년부터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로 변경
- 19) 2005년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
- 20) 2002년에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 21)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
- 22) 2001년 여성부 신설, 2005년 여성가족부로 변경
- 23) 2005년 신설
- 24) 민영화
- 25) 2005년 신설
- 26) 2005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자부 소속에서 특허청 소속으로 환원

자료: 재무부, 『대한민국정부부결산관련통계자료』,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1961~2000.

##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16대에 이어 17대 국회마저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할 것인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선과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과 내년에 시행될 국민연금 재정 재추계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상당한 기간 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가입기간 20년'의 조건을 충족시킨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가 6월 임시국회를 연금개혁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다. 더구나 개혁을 미루는 동안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누적된다. 모두 우리의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다.

정치권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결하는 대신 생색을 내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켰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뒤늦게 정부와 국민연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 등 정쟁을 빌미로 국민에게 약속한 합의를 깨고 다시 합의안 처리를 미루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존재를 핑계대기도 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을 파탄으로 몰고가선 안 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범죄다. 미래세대로부터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로스쿨과 교원평가 관련법 등도 사법 선진화와 교육 풍토 쇄신을 위해 더이상 미뤄선 안 될 핵심법안들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임기 말 대통령이 진정 해야 할 일은 전선의 확대재생산이 아니라 국가현안의 빈틈없는 마무리인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서울신문 2007년 6월 11일자 '사설')

### 건설적인 감세논쟁은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후 첫 총선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가 대규모 감세안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신임 프랑스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총선 직전 발표하고 국민에게 찬반 여부를 물었다. 시간외 근로소득 비과세, 주택저당대출 이자 소득공제, 상속세 대부분 폐지, 개인 합산 과세율 하향 조정 등 대선 당시 들고 나온 공약 그대로다.

대선 직후 치르는 첫 총선인 만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우파 집권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도 의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가 프랑스 감세안 논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세금논쟁 때문이다.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은 원광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

에서 "이명박 씨가 말하는 감세론에 절대 속지 말라"고 말했다. "이명박 씨가 말하는 감세론은 6조8000억원 세수 감세를 가져오는데 이 돈이면 교육 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 있다" "감세론을 말하는 인사가 보육과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흥부의 박씨가 날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등이 노 대통령의 비판 요지다.

사실 감세논쟁은 모든 선거에서 단골 쟁점이다. 그만큼 세금은 정치적 산물이고 논란 여지가 많은 대상이다. 감세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거나 반대로 감세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식의 논란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국민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 마당에 감세를 한다는 것은 자칫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옳은 구석이 있다.

감세논쟁을 처음부터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감세논쟁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프랑스 감세 논란이 대단히 세부적인 것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최종 결정은 국민이 투표로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주장이 참여정부 조세정책과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노 대통령도 건설적 논쟁에 책임이 있다. 또 한나라당 후보간 정책 토론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건설적

인 논쟁을 촉구한다.

〈매일경제 2007년 6월 11일자 '사설'〉

### 근로소득세와 두뇌유치의 함수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봉급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란다. 아울러 세금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봉급근로자 대부분에게 지난 10년은 기대와는 반대로 별로 즐겁지 않은 세월이었다. 봉급은 이전에 비해 느리게 올라가는데 반해 세금은 왜 그리 빠르게 상승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1996년에 당시 1인당 국민소득 982만원만큼의 과세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86만 4000원의 소득세를 냈다. 10년이 지난 2006년 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다시 그해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1756만원이었다면 소득세는 230만원을 냈을 것이다. 10년 새 봉급은 79% 오른 데 반해 세금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반면 내는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만 해도 세금을 내는 과세자 비율은 54%였으나 작년에는 이 비율이 51%까지 떨어졌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는 말이

다. 미국 영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과세자 비율이 8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세원이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들어 각종 공제를 넓혔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국제추세와 동떨어지게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세원은 넓히고 공제는 줄이려는 국제추세와는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세금 내는 근로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세율로 따지자면 우리의 주민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38.5%가 일부 유럽국가보다는 낮지만 홍콩 20%, 싱가포르 22%에 비하면 월등히 높으며 미국의 최고세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렇게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율로는 고급인재가 포함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한국의 근로소득세율 인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과세표준구간이 1996년 만들어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인플레이션과 함께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상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밀어올렸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0년 전에 3000만원 소득은 418만원의 세금을 냈다. 이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39.4%만큼만 명목소득이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소득은 상위의 세율을 적용받아 55%가 인상된 717만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실효세율이 올랐고 실질

소득은 깎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세금제도를 짜겠다는 야당 후보의 공약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첫째, 세수감소가 염려되며 둘째, 세금감소는 고소득계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 첫째,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세금은 증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소비 위축과 성장 저하,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 걱정이다. 둘째, 고급인재의 국가 간 쟁탈전이 치열한 21세기에는 고소득 계층을 우대해야지 이들을 세금확보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분배주의 사고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최고 세율을 닦아주어 인하여 인하여 고급인재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가?

1894년부터 3년간 네 번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쓴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그녀의 책에서 고을 규모가 크고 경제사정이 좋다고 알려진 곳일수록 실제 가보면 작은 고을보다 더 피폐해 있더라고 적고 있다. 이유는 고을 수령이 통치는 뒷전이고 현직(現職)을 매수한 본전을 뽑기 위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한말(舊韓末) 과도한 세금의 폐해로 나라경제가 결딴난 적나라한 현장 고발이다.

세금제도는 단순해야 하고 공정해

야 하며,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불공정하고 성장의지를 꺾는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100여 년 전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지도 모른다.

남성일(서강대 경제대학원장)  
(한국경제 2007년 6월 8일자 '다산칼럼')

### 손자병법과 세금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손자병법을 선물했다. 책은 저장성(浙江省) 산 최고급 비단에 영문과 중국어로 새겨져 홍목과 호두나무로 만든 고급 상자에 넣어져 전달됐다. 형식만 보면 극진한 예를 갖춘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힘 자랑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물리력을 앞세운 부시의 외교 안보전략을 은근히 비꼰 것이다. 손자병법은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싸움기술(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이라 했다. 이라크전쟁을 보자. 미국은 이기기는 했지만 3,400명이 넘는 미군 사망자를 냈으며 부시의 지지도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상처가 너무 큰 승리다. 그러니 손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 셈이다.

손자병법은 세금을 걷는 데도 통할 듯싶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프로젝트가 줄지어 쏟아졌다.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와 복지선진국가, 성장동력 확충, 자주국방 등... 강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며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호오(好惡)를 떠나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나라가 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돈이다. 그동안 나온 사업의 소요 재원을 살펴보면 입이 절로 벌어진다. 행정복합도시 43조 9,000억원, 저출산·고령화대책 32조 746억원, 농촌 개방대책 119조 3,000억원, 장기임대주택 116만 가구 88조원, 자주국방 전력 증강사업 628조원, '비전 2030' 1,100조원. 수천억~수조원의 사업도 즐비하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댈 것인가. 지출구조합리화 등을 통한 예산 절약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니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국채는 이미 위험 수위라 할 만큼 크게 늘어난데다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마음대로 동원하기 어렵다. 결국은 세수에 기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상식이다. 앞으로도 그들에게 손을 더 벌릴 것은 뻔하다. 하지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이 내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내기가 더욱 싫어진

다. 지금 우리가 딱 이 모양이다. 정부는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부아를 돈우고 맥 풀리게 만든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감정이, 심지어 적개심까지 실려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탓으로 몰아치는 등 국부 창출의 선봉장인 기업과 기업인들의 활동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 일쑤다. '2%의 투기꾼으로부터 98%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를 옥석 구분 없이 죄다 투기꾼 취급했다. 세 부담이 너무 과하니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통령은 '세금이라고는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공들였다는 프로젝트가 공허하게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 당장 살기도 힘든데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라는 것과 '무슨 돈이 있어서'로 요약된다. 이런 비아냥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대신 나라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게 해주는 공로자로 대하며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있는 사람은 계속 벌어들여 더 많이 세금을 내십시오.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어들여 앞으로는 잘살고 세금도 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막혔던 기업투자와 부자들의 소비가 풀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살림이 퍼져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며 세금도 더 걷히는 선순환을 부를 것이다.

참여정부에 손자병법을 선물하고 싶다. 남의 말을 듣기는커녕 온통 '전투 모드'로 무장된 사람들이라 소용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현우(서울경제 논설위원)  
(서울경제 2007년 6월 7일자 '목요일 아침에')

### 한·미 FTA 잘 마무리 하려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협상하자고 한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미국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가. 무엇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가. 이미 합의된 것을 다시 협상하는 재협상인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추가협상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의문을 해소하려면 FTA 협상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은 4월 2일 타결돼 6월 30일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정식 서명이 석 달 후에 이뤄지는 이유는 협정문을 다듬는 작업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면 그 협정문은 공식 최종본이 된다. 이를 양국 의회가 비준동의를 해야 FTA가 발효된다. 이런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협

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창출할 이익은 모두 잠재적인 가능성에 머문다.

그렇다면 조문 검토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하면 되는데, 왜 미국은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가. 이는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구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통상정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외통상교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회는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대신 행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협상목표를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기존의 협상 목표를 수정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해왔다. 미 행정부가 외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민주당이 통제하고 있는 의회의 비준을 받아 내지 못하면 그 협정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와 타협해야 한다. 그 결과 지난달 중순 노동·환경·지적재산권·항만안전·정부조달·투자 등 6개 분야의 새로운 통상협상 목표에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했다. '신통상정책'으로 불리는 이러한 정책노선을 이미 FTA를 체결한 파나마·콜롬비아·페루·한국과의 협정에 반영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 의약품 등의 특허 강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더욱 강력한 무역제재를 한다는 게 '신통상정책'의

내용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도 채택하지 않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노동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미국이 과연 상대국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냐는 국제적인 비난과 미국 내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협상 타결 직후 이를 협정에 반영하겠다는 발상은 미국 특유의 일방주의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미국이 한국에 재협상하자고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를 의식해 한국 정부가 협상을 다시 하면 국내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에 끌려가는 저자세 협상이라는 비난에서부터, 이 기회에 농산물·의약품 등 민감한 부분을 다시 협상하라는 주문까지 나올 것이다.

한·미 양국이 그간의 FTA 협상을 이끌어 왔던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이익의 균형과 민감한 분야의 존중이다. 4월 2일 타결된 FTA는 이 원칙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들고 나올지에 따라 재협상인지 추가협상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정해줄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의회로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를 이미 설정해 두고 있던 터라 미국의 협상 요구는 한국의 협상력을 높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접근방식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

지만 한·미 양국의 이익이 균형 속에 늘어난다면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 정식 서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중앙일보 2007년 6월 4일자 '시론'〉

### ‘한·미 FTA 재협상 없다’ 빈말이었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주역들은 지난달 초 협상이 종료된 뒤 미국측에서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자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의회와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뒤 한국에 대해서도 노동과 환경부문의 추가 요구를 반영할 방침을 천명하자 재협상 불가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이라는 등 말장난으로 재협상의 실체를 호도하려 하더니 “협상 균형을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어느새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다. 또 미국 의회로부터 한·미 FTA의 비준을 받아내려면 ‘신통상정책’의 요구조건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

사꾼의 논리’ ‘이익 균형’ 운운하며 자화자찬했던 정부로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엄청난 부담인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달도 안 돼 말꼬리를 내릴 것을 온갖 수식으로 재협상의 실체에 덧칠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미국측이 재협상 요구를 공식 통보하는 대로 국민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재협상이든 추가협이든 미국의 추가 요구에 맞대응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이익 균형’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서울신문 2007년 5월 30일자 '사설'〉

# 재정포럼

2007년 6월호 통권 제132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응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07년 6월 15일 발행 / 제12권 제6호(통권 제13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